

번역자료

90-03-008

SNA의 새로운 움직임(II)

1990

調査統計局 統計分析課

통계청자료실



B0012261

번역자료

90-03-008

SNA의 새로운 움직임(II)

1990

調査統計局 統計分析課

038927



머 리 말

現在 國民計定體系(SNA)의 改訂은 IMF, OECD等 國際機關의 協조하여 國際聯合 統計局이 중심이 되어 作業을 進行中인데 1991年 第26次 國際聯合 統計委員會에서 改訂案 採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SNA 改訂作業의 進行方向과 今後の 作業計劃에 대하여 유용한 情報가 될 수 있는 “改訂 SNA 第1次 草案”과 1988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OECD 國民經濟專門家會議에서 論議되었던 “SNA 改訂에 관한 議題” 및 1989年 2월 6일부터 1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第25次 國際聯合 統計委員會의 議題였던 SNA 改訂事業 進전상황에 대한 事務總長 提出報告資料인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國民經濟計定 및 實物生產體系: 國民經濟計定體系)”를 번역 발간한 것입니다.

아무췌 이 資料가 地域經濟計定 관련 實務者 및 SNA에 關心이 있는 모든 分들에게 SNA 改訂에 관한 유용한 情報가 되기 바랍니다.

1990. 9.

統計分析課長

— 차 례 —

I. 國民計定의 改訂體系 (改訂 SNA 草案)	3
第1章 去來斗 歸屬	5
第2章 經濟單位斗 部門分割	30
第3章 生産計定	87
II. SNA (國民經濟計定體系) 改訂에 관한 國際機構 會議資料	159
第1章 OECD 國際計定專門家會議 資料	161
第2章 SNA 改訂事業의 進展에 관한 UN 統計局 會議資料	182

I. 國民計定の改訂体系(改訂SNA草案)

第1章 去來와 歸屬

第2章 經濟單位와 部門分割

第3章 生産計定

I. 國民計定の 改訂體系(改訂 SNA 草案)

註:

「國民計定體系(SNA)」의 改訂 進級狀況에 關한 事務總長報告(E/CN.3/1989/4)의 第50~52段落에 나타나 있듯이 改訂 SNA 第1草稿에 關한 作業이 進行中이다. 이미 몇 章이 國際聯合事務局 統計局 자문 團에 의해 作成되고 있다.

文書에서는 改訂 SNA가 提示할 方向과 方法을 統計委員會에 提示하기 爲해 이들 章 가운데 3개의 章(去來 및 歸屬, 經濟單位와 部門分類, 生產計定)이 暫定版으로서 提出되었다. 또한, E/CN.3/1989/4의 文書 第52段落에 나타나 있듯이 國際聯合事務局은 第25回 統計委員會에서 이러한 章의 本質적인 內容에 對한 意見을 求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統計委員會가 이러한 章과 E/CN.3/1989/4의 文書에 包含되어 있는 素材를 使用해서 SNA 調整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Expert Group Meeting on SNA Co-ordination)의 指針을 提供하리라고 期待되고 있다. 특히 同 專門家그룹會合은 改訂 SNA의 第1草稿가 完成되었을 때에 그에 關한 論議를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第26回 統計委員會에서는 改訂 SNA의 最終草稿 完成을 報告하여 統計委員會에서 草稿에 對한 見解를 表明함과 同時에 最終草稿을 다시 改訂할 것 없이 公刊하도록 勸告할 것인가를 고칠 수 있는 狀況에 있으리라고 期待되어지고 있다.

第1章 去來와 歸屬

序 言

1. 「體系의 去來者는 經濟單位이다. 다음에서 說明되듯이 經濟單位로서는 個人, 家計 또는 法人, 非營利機關이나 政府單位等 在의 또는 社會的 實體이다. 經濟單位中 하나의 主要한 特徵은 그것이 그 固有의 權利로서 財貨나 資產을 所有하는 것이 可能하고, 따라서 다른 經濟單位와의 去來를 行하는 것에 의해 財貨나 資產의 所有權을 交換하는 것이 可能하고 할 것이다. 또한 經濟單位는 다른 經濟單位와의 關係를 가질 義務를 가지고 있거나 債務委任을 가질 수 있다.

2. 去來는 「體系」의 플로우 計定이 構成되는 出發點이 되는 基本單位이다. 그러나 經濟計定은 直接 經濟活動을 測定할 것을 意圖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經濟諸計定은 各種 經濟活動과 關係를 갖는 諸去來를 體系의 으로 또는 秩序를 가지고 豐富한 情報을 傳하는 方法으로 나타낼 것을 意圖한 것이다. 여기서 活動 그 自體와 그러한 活動과 關係를 갖는 去來를 區別하는 것이 重要하다. 두가지의 活動이란 「體系」에 있어서 또는 一般의 經濟諸計定에 있어서 顯著한 役割을 하는, 다시말해 生産과 消費이다. 生産은 本源的 生産要素의 協同에 依해 財貨·서비스投入의 財貨·서비스產出으로 變換되는 物理的 過程이며 消費는 個人이나 家計가 財貨·서비스를 使用해서 그러한 必要나 欲求를 채워주는 物理的 過程이다. 그러나 經濟諸計定은 그러한 過程을 物理的인 面으로 記錄하거나 測定하려고 意圖하는 것이 아니고 計定の 目的은 약간 다른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經濟單位가 그러한 過程에 關係하는 結果로서 발생하는 經濟單位間的 各種 去來를 記錄하는 것이다.

3. 原則의 으로 生産計定은 生産過程에서 投入되는 市場價值나 產出되는 市場價值를 投入 消費되고 產出이 生産되는 時點에서 記錄하려고 있다. 그러나 實際상의 記錄은 去來에, 다시말해 投入 購入이나 產出의 販賣에 根據해서 必要하다면 在庫變化에 關한 調整을 行한 것이다. 특히 消費計定은 消費目的의 財貨·서비스의 實際 使用, 즉 食料品을 먹거나, 衣服을 着用하거나, 自動車를 運轉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을 記錄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體系」에 있어서 消費의 測定은 物理的 單位에서 消費를 意圖한 것과 推定된 財貨·서비스의 購入 내지 기타 方法으로의 獲得에 限定되고 있다.

4. 따라서 經濟諸計定은 經濟單位間的 去來記錄으로 構成되는 것이
 다. 그리고 그러한 去來가 現實 世界의 어떤 種類의 經濟活動을 基
 礎로해서 定義되고 分類되며 集計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去來는 「體系」
 에 있어서 第一義의인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諸計定을 正確하게 理解하기
 爲해서는 그것이 갖는 特質을 充分 상세하게 檢討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그 前에 去來가 갖는 性質에 對해 자주 發生할 수 있는 誤解를 解消하
 기 爲해 3個의 豫想的 考察을 行하여 弄을 必要가 있다.

5. 첫째로 財産·貨物 또는 다른 資源의 所有權 交換은 去來概念의 不
 可缺한 部分은 아니다. 특히 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去來가 그리하지만 所
 有權의 交換이 一切 일어나지 않는 去來가 多數 存在한다. 爲해서 어떠한
 去來에 있어서는 두 當事者가 存在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반드시 兩當事者
 가 經濟單位일 必要는 없다. 「體系」는 하나의 經濟單位가 2가지 經濟的
 으로 다른 貨物 - 顧客인 케이스로서는 生産者와 消費者 - 으로 行動
 할 때 따라 自己自身과의 去來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假設的 去來의
 可能性을 明示의으로 承認하고 있다. 셋째로 去來를 計定으로 記錄하는 것
 을 可能하게 하기 爲해서는 그것이 貨幣價値와 結付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많은 去來는 貨幣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實態 이미 記述하였듯이 貨幣
 의 交換은 去來概念의 不可缺한 部分은 아니다.

6. 以上の 考察에 依하면, 一般의으로 말해서 去來란 두經濟單位에서 兩
 者의 合意를 根據로 行하여지는 相互作用으로 그것에 依해 한쪽의 經濟單
 位 또는 雙方의 經濟單位가 財貨·서비스 또는 資產을 다른쪽의 經濟單位
 에 提供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財貨·서비스 및 資產의 概
 念에 對해서는 後에 詳細하게 說明될 것이다. 分明하게 去來概念과 市場概

소 間에는 密接한 關係이 存在한다. 實際 市場은 去來의 實行을 容易하게 하기 爲의 多數의 經濟單位를 이어주는 것을 目的으로 한 制度的 契約으로서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7. 去來는 1 方向的去來와 雙方向的去來가 있다. 1 方向的去來란 一方의 經濟單位 A가 單位 B에 財貨·서비스 또는 資產을 提供이 對應하는 相互補充的인 行動없이 提供하는 去來를 가리키고 있다.

例를 들면 A는 財貨나 貨物을 단순히 B에게 주고 B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雙方向的去來는 A에 의해 取해진 行動이 B에서 어떤 相互補充的 行動과 對照를 이루는 去來이다. 이 경우 B에 의해 取해진 相互補充的인 行動은 A의 行動에 대한 答復이라고 한다.

8. 現實 世界에서 일어나고 「體系」의 綜合會計에 記錄되는 여러가지 種類의 去來에 대한 體系的인 分類을 爲하는 爲는, 去來의 한 쪽 當事者에 의해 取해질 수 있는 各種의 1 方向的(1 方向的으로 考察되었거나 한쪽 當事者側에서만 본 경우) 行動을 檢討하고 分類하는 것으로 부터 始作하는 것이 不可缺하다. 그 爲에 다뤄질 수 있는 多樣的인 1 方向的 行動을 크로스分類에 의해, 즉 1 方向的의 行動의 모든 可能的인 조합을 檢討하는 것에 의해 一般적인 도식을 도출할 수 있다.

9. 제 1 表에 거래의 한쪽 당사자에 의해 取해질 수 있는 여러가지 種類의 行動에 대한 要約 리스트가 提示되고 있다. 表에 提示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특히 한 카테고리를 考察하는 것도 可能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必要로 되는 一般적인 圖式을 開發하기 爲해서는 第 1 表에 據在되고 있는

것 이상의 詳細함이 要求되는 것은 아니다. 表中의 各種 카테고리지는 自體
 한 것으로 여기서 詳細하게 說明할 必要는 없지만 第8項B는 單位A가 單
 位B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대한 것도 있고 一般的인
 公式가운데에 移轉을 집어 넣는 것을 可能모욕 하기 爲에 完全性を 期하
 는데에 必要한 것이다.

〈第1表〉 經濟單位A가 經濟單位B와의 去來에서 取할 수 있는
 1方向的 行動의 諸類型

1. A가 B에게 財貨의 所有權을 移轉한다.
2. A가 B에게 서비스를 提供한다.
3. A가 B에게 土地의 所有權이나 無形資產의 所有權을 移轉한다.
4. A가 B에게 所有權의 一時的 移轉을 行한다. 즉 財貨, 土地 또는
 無形資產의 리-스 내지 賃貸를 한다.
5. A가 B의 被擔保者로서 일한다. 즉 B에게 勞動서비스를 提供한다.
6. A가 B에게 金融資產의 所有權을 移轉한다(貨幣을 除한다).
7. A가 B에게 貨幣의 所有權을 移轉한다. 즉 B에게 貨幣을 支拂한다.
8. A가 B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0. 第2表는 第1表에 擧載된 1方向行動의 諸類型에 基因한 簡易去來
 行判을 나타낸 것이다. 各行은 單位A에 依해 取해지는 行動을 나타내고 各
 列은 B에 依해 取해지는 答보로서의 行動을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면 第
 2行과 第1列과의 交點에 있는 칸(cell)은 A가 B를 爲해 서비스를 生
 產하고 그 댓가로 B로부터 財貨를 獲得한다고 하는 형태의 去來로서 充
 分한 것이다. 第8行의 各 記入 項目은 A가 財貨나 서비스 其他 便益을

어떠한 담보를 提供하지 않고 B로부터 受取한다고 하는 去來, 換算하면 A가 B로부터 여러가지 移轉을 받아들이는 去來를 나타내고 있다.

(第2表) 隨 易 去 來 行 列

單位A에 對해 受取된 行動	單位B에 對해 受取된 行動							
	1	2	3	4	5	6	7	8
1	物的交換							
2								
3								
4								
5	現物報償							
6	金融資産을 受取하는 去來							
7	財貨·서비스 및 資産購入 자 取償	貸貸科 貸金		貸金 金融 支 拂 資産		購入		
8	現物移轉			勞働 資産 移轉		無償 金融 現金 移轉		

注意: 各行·各列의 內容은 第1表에 對應하는 行番號로 주어지고 있다.

II. 第2表는 30 以上의 다른 種類의 去來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몇 個는 있지도 않고 또 理解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될 지도 모르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고 歷史上의 어느 時點에서 實際로 어떠한 經濟에서는 당연히 發見되어지는 것들 뿐이다. 去來의 主要 內譯은 다음과 같다.

物物交換去來

12. 物物交換 去來는 第2表에서 最初의 4行과 4列의 交點에 있는 몇 개의 칸(cell)에 位置해 있다. 物物交換 去來에는 3개의 主要類型이 있다.

(a) 財貨와 財貨의 直接 交換(第1行, 第1列)은 어찌면, 가장 普遍的인 形態의 物物交換 去來이다. 經濟發展의 初期 段階에 있는 國家 내지 經濟에 있어서 市場은 各種 財貨의 直接 交換을 容易하게 行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 있다.

(b) 財貨와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의 交換(第2行, 第1列 및 第2列)은 모든 經濟에서 發見되어 질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租稅 回避나 脫稅의 圖策이 發生할지도 모른다. 例를 들면 醫師가 포도주로 支拂을 받거나 專門의 職業의 사람들 間에 貨幣를 介在시키지 않고 相互間에 서비스를 提供한다고 하는 것이 交換되는 서비스의 總額이 긴 項目으로 보아 대체로 收支均衡을 이룬다고 하는 前提로 合意될 可能性이 있다.

(c) 財貨나 서비스가 土地나 其他 資產의 一時的 提供과의 交換이라고 하는 形態로 提供되는 경우가 있다(第4行, 第1列 및 第2列). 例컨대, 農業에서는 小作農이 地代를 貨幣로 支拂하는 대신에 地主에게 作物의 一部分을 提供함에 따라 支拂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取扱에 決定은 當然히 普遍的으로 알려진 것으로 一般으로 分益契約으로서 알려져 있다.

貨物報酬

13. 第2表의 第5行과 最初의 4列과의 交點에 있는 要素는 各種 貨物 報酬로 拉働者가 貨價가 아니고 財貨나 서비스나 住居라고 하는 形態로 支

를 받기 위한 케이스이다. 이러한 價行은 經濟發展의 全段階에 있다. 모든 나라에서 극히 廣闊하게 存在한다.

(a) 被僱者는 自身の 報酬의 적어도 一部分을 그를 雇傭하는 主體(雇傭主)가 生産한 財貨나 서비스 形態로 受取하도록 說得시키거나 어쩌면 強迫되거나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鑛山勞動者가 石炭으로 部分的 支拂을 받거나 航空會社의 被僱者가 旅行하는 形態로 部分的 支拂을 받거나 한다. 그와같은 것이 행해지는 하나의 理由는 雇傭主의 自社製品에 對한 固定市場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所望일 것이고 또 한가지의 理由는 被僱者側에 賃金에 對한 課稅를 回避하려고 또는 脫稅하려고 하는 欲望이 있을 것이다. 被僱者側에서도 이러한 所望이 있기 때문에 雇傭主의 生産物이 아닌 財貨·서비스를 現物報酬로 受取하도록 被僱者側에 바라는 일도 있을 수 있다.

(b) 現物報酬는 被僱者에로의 資本財의 一時的 移轉의 形態를 取하는 것도 있다. 즉, 第5行과 第4列의 交點이다. 雇傭主가 被僱者에게 無料 住宅을 提供하는 例는 많다. 例를 들면 典型的인 경우 軍隊는 그 人員에 宿舍을 提供하고 때때로 農協主는, 雇傭되어 들어가 있는 勞動者에게 「農協附屬의 小住宅("tied cottage")」을 提供한다. 또한 企業에서는 幹部任員이 아니라도 常1個 또는 休日用의 別荘을 提供할 수 있고 幹部任員이 아닐지라도 自動車를 營業用 以外에 자신이나 家族의 私用으로 自由롭게 使用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特히 封建社會에서는 農奴는 勞動의 提供과 交換으로써 自身이 使用할 수 있는 土地를 割當받았다.

1 方向的 去來

14. 1 方向的 去來란 하나의 經濟單位가 다른 하나의 經濟單位에게 財

貨·서비스나 資產(貨物包含)을 後者の 單位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고 提供하는 去來인 것이다. 第2表의 第8行이다.

(a) 담보가 없는 財貨·서비스의 提供은 普通, 現物移轉이라 불린다. 이와 같은 去來의 例도 많다. 例를 들면 通常の 個人間的 贈與가 그러하다. 또한 이런 外의에, 去來의 또 하나의 매우 重要な 카테고리는 非市場生産者가 家計내지 個人에게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이 카테고리에 있어 該當하는 서비스의 大部分은 教育과 保健서비스이다.

(b) 報酬없는 勞動의 提供(第8行, 第5列)도 적지 않다. 慈善내지 社會的 目的에 의한 自發的인 일이 그러하고 사소한 例이지만 奴隸制度가 어떠한 形으로 아직 殘存하는 社會에서는 奴隸勞動이 이에 包含된다.

(c) 金融資產내지 有形資產의 贈與가 家計間이나 個人間에서 行하여 該可能性이 있고 그러한 贈與는 一般적으로는 資本移轉으로 取된다.

(d) 앞으로 直接的 反對給付 없는 貨幣의 移轉(第8行, 第7列)은 政府과 家計나 個人과의 사이에 널리 行하여진다. 한편 家計나 個人은 租稅나 強制的인 社會保障 據出金을 支拂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家計나 個人도 社會保障制度에 따라 一般政府로부터 各種 貨幣移轉을 受取하고 있다.

實在去來

15. 第1表과 第2表는 「體系」의 諸要求에 있어 보다 系統이 세워진 去來의 分類을 위한 基礎를 準備하는 것으로 意圖되고 있다. 第2表로부터 얻을 수 있는 主要한 結論은 아래와 같은 것일 것이다.

(a) 다른 經濟單位가 相互作用하는 것으로서의 實在去來는 매우 多樣的 形態를 取한다. 第1表과 第2表에 나타난 것과 같은 單純作表原素를 換

據로 考察한 경우에 조사 30 以上의 다른 種類의 實在去來가 識別될 수 있다. 따라서 去來의 概念은 財貨나 貨幣의 交換이라고 하는 좁은 意味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는 않고 計定에 받아들여져야 할 事件이나 事實의 全體로서 解釋에 なる 편이 危險이 적을 것이다.

(b) 「體系」에서 使用되는 分類 모두에 차이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하나의 基本的인 區別은 1 方向의 去來와 雙方向의 去來와의 區別이다. 1 方向의 去來는 經濟單位가 담보없이 다른 經濟單位에 財貨나 서비스나 勞動 서비스나 金融資產을 提供하는 去來를 가리킨다. 1 方向의 去來는 財貨나 貨幣의 모든 反對給付 없는 移轉을 包括할 뿐만 아니라 支拂되지 않는 서비스의 提供이나 無給의 自發的 勞動까지 包括한다.

(c) 計定目的의 去來分類로 다루어져야 할 必要가 있는 第2의 基本的인 區別은 貨幣의 去來와 非貨幣의 去來와의 區別이다. 貨幣의 去來는 經濟單位가 他經濟單位로부터 提供되는 財貨·서비스·資產의 담보로서 貨幣을 支拂하는 雙方向의 去來이든가 아니면 反對給付가 없는 現金移轉 形體의 1 方向의 去來인 것이다.

18. 따라서 雙方向의, 1 方向의 이라고 하는 區別과 貨幣的, 非貨幣的이라고 하는 區別과를 크로스分類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暫定的인 去來分類는 以下와 같은 單純化된 圖式과 같이 될 것이다.

貨幣的 去來		非貨幣的 去來	
雙方向的	1 方向的	雙方向的	1 方向的
財貨·서비스의 購入과 販賣	反對給付없는 貨幣의 移轉	財貨·서비스의 物物交換	無料 서비스 提供

貨 物 的 去 來		非 貨 幣 的 去 來	
雙 方 向 的	1 方 向 的	雙 方 向 的	1 方 向 的
被 儲 者 에 對 한 現 金 에 依 한 報 酬		被 儲 者 에 對 한 現 物 에 依 한 報 酬 (無 料 貨 貨 品 包 含)	資 產 으 로 시 의 財 貨 의 贈 與
地 代 나 貨 貨 料 의 支 拂			無 給 勞 動
資 產 的 購 入 과 販 賣		資 產 物 物 交 換	

「體系」에 있어서의 實在 非貨幣的 去來의 取扱

17. 計定이 구성되는 基本要素는 去來의 價値額이다. 貨物의 去來의 經
 常 計定은 各 種의 去來 當事者間 經濟單位間에 實際로 交換되는 貨物額을
 記錄한다. 非貨幣的 去來에 대해서도 같은 形態의 貨物의 去來가 「體系」에 包含
 되어 있는 경우 歸屬된 價値額을 記錄하는 것이 「體系」에 採用된 原則
 이다. 例를 들면 生産者의 產出에는 生産者가 販賣한 財貨·서비스만이 아니
 고 生産者가 物物交換 去來에 있어 使用하거나 被儲者에게 現物報酬로서
 提供하거나 또는 他經濟單位에 無料로 提供한 財貨·서비스도 包含된다. 他
 經濟單位가 그 財貨·서비스를 需要하고 取得하는 것이 라면 他經濟單位가 그
 것 과 比對는 提供할 擔保의 性質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이 있든지 없
 든지 그 財貨·서비스는 產出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 觀點에서는
 生産된 財貨·서비스와 交換으로 生産者가 受取할 擔保가 가장 貨物的 形

態를 취하는가 하는 것에 產出의 定義를 決定的으로 依存모록 할 수는 없다.

18. 이와 같이 「體系」에 있어서는 一般적으로 實在 非貨幣의 去來에 대해 貨幣的인 同種의 去來가 「體系」에 包含되어 있는 限 價額額을 歸屬하는 外에 計定에 記入한다.

19. 여기에서 去來自體는 實在하는 것으로 歸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注意해 부자. 去來를 計定記入하는데 대하여 必要하게 된다. 去來의 價額額에 對해서 歸屬이 必要로 되고있기 때문이다. 이 點에서 現在 考察 중인 歸屬은, 다음 節에서 考察되듯이 價額額 뿐만 아니라, 去來自體가 歸屬된다고 하는 事實의 歸屬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다. 여기서 考察되고 있는 歸屬은 市場環境 가운데서 行하여지는 實在하는 去來와 歸屬되워지는 것이므로 對象으로 되어야 할 去來의 集合으로 定義되는데 대한 예외를 容許 않고 「體系」에 包含되어야 할 去來의 範圍에 關한 論議의 餘地는 거의 없다. 이미 언급 하였듯이 一般原則으로서의 그것이 眞正한 市場去來라고 하는 理由로부터 그와 같은 去來는 모두 包含되어야 할 것으로 貨幣의 所有主가 바뀌는가 아닌가 하는 ことは 無關하다.

20. 實在 非貨幣의 去來에 歸屬하는 價額額은 可能한 等價인 貨幣的 去來의 價額額으로부터 導出된다. 使用되는 評價方法의 詳細한 內容은 뒤의 諸章에서 說明되지만 利用 可能한 適切한 市場價格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 賣買가 行하여지지 않는 株式의 產出價額額은 그 生産費로부터 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21. 歸屬이 行하여지면 歸屬支拂되지 歸屬 費用의 작은 價額額가 생

진다. 예컨대 物物交換 去來를 考察하여 보자. 經濟單位 A가 經濟單位 B와 生産物의 物物交換을 할 때 두가지 貨物支拂을 歸屬할 必要가 있다. A가 B에게 價것에 대한 貨物支拂과 B가 A에게 價것에 대한 貨物支拂이다. A에 대해 歸屬된 販賣는 A의 附加價値가 所得을 增加시키고 그것이 B의 產出을 購入하는데 支出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며 B에 대해서는 그 逆으로 된다. 그러나 歸屬에 의해 發生한 分派는 所得, 支出計定을 消滅해서 넘어지지는 않으므로 各經濟單位의 貯蓄水準은 不變으로 維持된다(貯蓄率에는 影響이 있다). 現物所得에 關해서도 狀況은 비슷하다. 單位A가 單位B에게 現物로 支拂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歸屬된 一連의 貨幣金流이 發生한다. 우선 A는 B에게 財貨를 팔았다고 看做되고 또한 그것에 의해 A의 附加價値가 增加한다. 이 時候에 支拂된 被債者報酬도 同額만큼 增加하기 때문에 A의 營業剩餘는 不變이다. 끝으로 B는 그의 歸屬所得 全體를 A로부터 財貨를 購入하는데 使用하였다고 假定되므로 B의 貯蓄은 不變이다.

22. 實在 雙方向 非貨幣的 去來를 計定에 들어넣기 爲기 必要로 하는 歸屬된 支拂 혹은 金流은 一連의 金流을 爲하거나 平行이 取해진 歸屬을 發生시키기 때문에 상당의 스프레이드인 것이지만 政府에 의한 家計의 無料 教育서비스 또는 保健서비스의 提供과 같은 1方向的 非貨幣的 去來의 경우 狀況이 반드시 그 만큼 明確한 것은 아니다. 經濟單位 A가 生産한 財貨나 서비스를 無料로 B에게 提供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計定에 이것을 記錄하는 하나의 方法은 A가 自身の 產出을 購入한 것과 같이 取扱하는 것이다. 그 경우 A가 A自身에게 支拂을 行하였다고 하는(次節에서 考察되듯이) 假設的 去來가 行하여진다고 간주된다. 이 方法에 의한 경우 A의 產出價額은 A에 의한 A자신의 產出에 對한 同額의 支出과

對應한 形態로 計定에 記錄되게 된다. 이 取扱은 A에 의해 負擔되고 있는 費用이나 支出을 正確하게 反映하고 있는 한편 A와 B와의 사이에 實在 非貨幣的 去來의 存在을 無視하고 問題의 財貨나 서비스가 A에는 있고 B에 의해 消費되고 있다고 하는 事實을 記錄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하나의 取扱은 B가 A로부터의 解屬購入을 行한 것으로 記錄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A에 의해 負擔지어지는 經費는 支出로 하지 않고 移轉으로서 表示된다. 어떠한 取扱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대이다가 必要로 하는 目的에 依存하여야 할 것이지만 事實上 「體系」에서는 兩方의 方面이 使用되고 있다. 第1方法, 다시 말해 生産者가 自身の 產出을 實際로 消費하는 것 없이 購入하려고 하는 支出을 行하였다고 보는 方法은 「自己生産에 對한 支出(expenditure on own produc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을 「自己生産의 消費(consumption of own production)」와 明確하게 區別하여 두는 것이 必要하다. 두가지의 事象 間의 차이에 對해서는 以下の 章에서 다시 說明된다.

假說的 去來

23. 「體系」의 淸算計定은 淸코 貨幣的 去來의 價値額과 實在 非貨幣的 去來에 關聯한 範圍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다. 「體系」에서는 그러한 去來에 對해 假說的 去來의 存在도 想定되고 있다. 假說的 去來의 現實世界에서는 推定되고 있지 않지만 會計目的으로는 일어나고 있다고 推定되는 去來인 것이다. 물론 그 存在을 想定하였기 때문에 假說的 去來을 計定內에 記錄하는 것을 可能하도록 하는 爲에 그 價値額을 歸屬할 必要도 생긴다.

24. 假說的 去來을 導入하는 主要한 理由는 그렇게 하는 편이 特異한 目的의 내지 特定 種類의 分析에 對해 計定의 有效性을 높인다고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同路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의 時間的인 比較 可能性이나 國際的인 比較可能性을 改善할지도 모른다. 「體系」에 假設的 去來를 導入하는 것의 長點과 短點에 對해 보다 詳細하게 考査하기 前에 假設的 去來의 擴大과 種類에 對해 記述적 論 必要가 있을 것이다.

25. 두가지의 別個 種類의 假設的 去來가 存在한다. 다시말해 單位內 去來와 리우루팅(rerouting)이다. 單位內 去來란 單一의 經濟單位 內部에서 일어날 것이 想定되고 있는 假設的 去來이고 리우루팅이란 서로 다른 經濟單位 사이에 일어날 것이 想定되고 있는 假設的 去來인 것이다. 單位內 去來의 권이 보다 重要하지만 兩者 모두 「體系」가운데 重要한 位置를 占한다.

單位內去來

26. 單一 經濟單位 內部的 去來를 想定하는 것이 適切하게 될 수 있는 狀況은 그 單位가 두개의 서로 다른 經濟活動에 屬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家計, 個人, 非營利機關 및 一般政府는 生産과 最終消費 모두에 屬하는 것이 가능하다. 法人 및 準法人은 最終消費者로는 될 수 없지만 家計, 非營利機關 및 政府가 實態로 그리라듯이 生産과 資本形成 雙方에 屬하는 것은 可能하다.

27. 生産者 單位의 所有者가 生産物의 一部分 또는 全體를 自己消費 내지 自己資本形成의 目的으로 管理하는 것을 一般적으로 自己計定生産이라 부른다. 「體系」의 總計定에 그의 같은 產出을 記錄하기 爲어서는 同一의 經濟單位가 生産者와 利用者라고 하는 2개의 서로 다른 經濟的 資格으로 行動하고 있는 것을 認知하여 兩者 同의 販賣를 歸屬할 必要가 있다.

「體系」의 主要한 課題의 하나는 그와 같은 單位內 去來가 어디까지 認知되고 「體系」로 잘 들어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8. 企業이나 其他 生産單位가 그 產出의 大部分을 販賣하여 其他의 方法으로 他 經濟單位에 對해 處分하고 自己使用分으로 이용하는 產出의 比率이 적은 경우 一般적으로 自己計定 生産分을 包含한 產出 全體가 計定에 記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기지고 있다. 그러나 市場에서 販賣되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經濟單位에 提供되는 產出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生産이 必然적으로 또는 自動적으로 計定에 包含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分별하지 않다. 全面的으로 自己計定の 生産에 從事하는 生産者는 完全히 市場과 市場의 權力으로 부터 斷絶되어 있을 可能性이 있고 그와 같은 生産者의 產出을 記錄하고 市場에 對한 生産者의 產出에 追加로 덧붙이는 것에 의해 어떠한 有用한 目的에 도움이 되는지를 分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29. 實態로는 自己計定の 生産에만 屬하는 生産者는 大部分의 경우 소규모 個人企業일 것이다. 물론 自動農業에 從事하는 農家を 包含한다. 이러한 自己計定에 關한 取扱은 特히 個人部門에 있어서 重要하다. 따라서 個人部門의 產出測定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所得과 消費에도 影響을 미친다. 「體系」의 立軸은 家計의 모든 財貨의 自己計定 生産을 包含하여 家計內部的 個人的 서비스 내지 家事서비스의 自己計定生産을 排除한 다고 하는 것이다. 이 立軸은 傳統的으로 國民計定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見解에 關한 說明과 正當化는 뒤에 生産의 現황에 對해 약간 詳細하게 論議할 때에 記述되어 질 것이다. 특히 「體系」의 部門計定에 있어서 家計는 單一 經濟單位로서 取扱되어 家計의 構成員에 依한 同一家

計의 他 構成員의 使用 내지 消費에 關한 財貨·서비스의 生産은 自己計
定의 生産인 것에도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30. 따라서 「體系」에서 自己計定生産의 取扱은 아래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A) 生産者에 對해 自己消費 내지 自己資本形成의 目的으로 留保된 모
든 財貨는 產出에 包含될 수 있다.

(B) 自己消費을 爲해 生産된 모든 서비스도 또한 產出에 包含되지만 同
一家計 内部에서 最終消費을 爲해 生産된 個人 서비스 내지 家事서비스
는 例外로 한다.

31. 이와 같이 生産者가 自己自身の 產出의 利用者로서의 生産者 自身
과의 사이에 行하는 單位內 假設的 未來는 「體系」를 通過 廣範圍하게
重要한 役割을 맡아서 나타내고 있다. 可能的 限 生産된 產出은 市場에서
 팔리고 있는 同一 生産物의 基礎價格으로 評價되지만 때로는 生産費用을 根
據로 한 價值額이 歸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있다. 특히 自己計定 建
設의 경우가 그러하다. 總的으로 自己計定生産에 屬하는 生産者의 生産計
定은 附加價值가 歸屬販賣額 마이너스(만약 있다면) 中間購入額의 價值額
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單純化된 形態를 取한다. 다시말해 資金은 歸屬되지
않고 所得이 營業剩餘의 形態로 發生하여 그것이 生産된 財貨·서비스의 購
入에 使用되었다고 看做되어진다. 發生한 營業剩餘의 價值額은 歸屬販賣額 내
지 歸屬購入額보다 작게 되는 傾向이 있어 그 結果 負의 貯蓄이 記錄될
수 있다. 家計 生産의 경우, 負의 貯蓄은 原材料의 中間投入額이나 資本消
費에 關해 負擔되고 있는 支出 내지 費用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32. 自己消費 내지 自己資本形成을 위한 生産에 관한 單位內 去來는 「體系」에 있어서 單位內 去來 가운데서 가장 重要的 카테고리이지만 「體系」에는 다른 種類의 單位內 去來도 존재하며 같은 目的으로 貢獻하고 있다. 例컨대 財貨·서비스가 하나의 事業體에서 生産되고 中間消費 내지 資本形成의 目的으로 料金を 들이는 일 없이 同一 企業에 또 하나의 事業體에 運送되는 경우, 그와 같은 財貨·서비스의 價値額은 그것을 產出한 事業體와 企業 全體의 產出에 包含되어 진다. 그 產出은 그것을 產出한 事業體의 內部에서 使用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企業의 觀點에서는 이 活動은 自己計정의 生産으로 看做될 수 있다. 그와 같은 產出의 價値額은 生産側의 事業體로부터 使用側 내지 消費側 事業體로의 販賣를 歸屬하는 것에 의해 計定에 包含되어 지지만 事業體는 單一의 보다 커다란 經濟單位 即, 企業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販賣는 單位內 假設의 去來로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

33. 財貨가 生産者에 의해 保有되고 있는 財貨의 在庫에 追加되거나 그것으로부터 引出되거나 할 때에 生産者의 生産計定에 記錄되는 數字는 在庫로의 歸屬販賣 내지 在庫로부터의 歸屬購入이라고 하는 形態의 單位內 去來로 볼 수 있다. 財貨를 在庫로 轉입시키는 것이 在庫로의 假設的 販賣로 取扱되어질 경우 財貨는 實際로 팔리거나 사거나 할 때와 正確히 同一하게 取扱된다. 歸屬價格은 在庫의 累積이나 引出이 이루어진 時期의 市場이 實際價格이다.

34. 資本消耗도 또한 資本財의 使用者가 資本財의 所有者에 對해 當該 計定期間에 있어서 價値 下落을 補償할 目的으로 行하여진 單位內 假設的 去來로 看做된다. 資本財의 使用者와 所有者가 하나의 同一 經濟單位일 때

에 實際去來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경우 資本消費에 관한 計定記入은 一種의 單位內 去來로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 實際로는 滿足할 만한 資本消費의 推計를 行하는 것은 특히 困難하지만 그것은 「體系」에 있어서의 主要한 歸屬의 하나이다. 특히 資本消費의 概念과 測定에 關해서는 後에 詳細히 說明될 것이다.

리루우팅 (Rerouting)

35. 리루우팅은 서로 다른 經濟單位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豫想할 수 있는 假說的去來이다. 어떤 一定한 分析上의 目的에 의해 보다 有益하다고 여겨지는 方法으로 實際의 흐름을 서로 다른 經路로 引導하는 것 혹은 리루우팅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그와 같은 리루우팅의 主要한 事例는 以下の 몇개의 段階에서 考여지고 있다.

商業 - 輸送마 - 진

36. 生産者價格 내지 基礎價格으로 作成되는 「體系」의 投入・產出表에 있어서는 財貨의 購入者가 實際로는 部・小賣業者로부터 購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그 原生産者로부터 購入한 것으로 提示하고 있다. 이 리루우팅의 目的은 投入・產出表의 各行에 있어서 財貨의 評價를 可能な 限 均質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購入者와 部・小賣業者와 의 사이에 實際去來는 實際로 일어나지 않은 두개의 假說的去來에 의해 置換되어진다. 即,

- (a) 原生産者로부터의 直接購入
- (b) 商業마인으로 測定된 流通業者로부터의 商業서비스 購入

37. 특히(投入・產出表에 限定하게 읽고) 「體系」全體에서 部・小賣

業者의 生産計定은 流通媒介를 通過하는 財貨의 購入과 販賣를 記錄하지 않는다. 流通業者의 產出은 財貨 그 自體와는 別개로 市場에 의해 測定된다. 그러나 實際로는 流通業者는 市場을 팔고 있음과는 없으므로 그 去來는 假說的인 것이다.

社會保障 및 年金으로의 屬業主 分擔金

39. 屬業主의 社會保障分擔金은 屬業主에 의해 適當한 社會保障基金 내지 年金基金으로 直接 納入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被擔者報酬의 一部分으로서 記錄하는 것을 可能하도록 하기 爲에 計定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선 被擔者에 對해 支拂된 것으로 取扱하고 그 다음에 被擔者가 社會保障基金 내지 年金基金으로 納入한 것으로 取扱한다. 이 경우 하나의 實際主來를 두 가지의 假說的去來를 導入하는 것에 의해 置換되기 때문이다.

生命保險基金의 保險計算上의 準備金에 對한 利子

39. 生命保險基金의 保險計算上의 準備金에 對한 利子, 卽 生命保險會社의 準備金에 對한 保險證券 保有者의 持分에 對한 利子は 實際로는 保險會社가 原來 留保한 것이다. 卽도 保險證券所有者가 인출한 후 그들에 對해 再投資된 것으로 看做된다. 이 리우우밍의 目的은 利子가 保險會社의 貯蓄이 아니고 家計의 貯蓄에 貢獻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이 取扱하는 것이다.

海外 直接投資企業의 留保獲得

40. 海外 直接 投資企業의 留保獲得은 母會社에 送金된 後 母會社에 依리 다시 海外의 子會社에 再投資된 것으로서 取扱된다. 이 方法으로는 「體

系」의 海外計定 및 國際收支表에 實數로는 일어나지 않는 2개의 帳目이 記錄된다.

去來와 歸屬

41. 「體系」에 記錄된 各가지 種類의 去來에 關한 單純化된 圖式的 表現이 第3表에 주어져 있다. 表中의 別個 記入項目은 各各의 牽引項目으로 나타낸 主要한 種類의 去來를 例示하기 爲한 것만으로 「體系」의 모든 去來類의 完全한 또는 包攝的인 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42. 貨幣의 去來 對 非貨幣의 去來, 雙方向의 去來 對 1方向의 去來라고 하는 크로스分類에 의해 實際去來의 4가지 主要 類型이 構成되는 前의 前에서 說明된 것과 같은 2가지 假設의 去來가 包含되고 있다. 第3表에서는 實際去來와 假設的去來의 區別이 實在 現金帳目과 歸屬現金帳目 사이의 區別과는 完全히 別個의 것이다. 事實 歸屬의 目的은 去來를 考案하는 것은 아니고 「體系」 가운데서 認知되고 있는 非貨幣的의 去來 — 實在 非貨幣的의 去來와 假設的의 去來 — 에 現金帳目을 附하는 데 있다. 嚴密히 말하자면 歸屬이 必要한 것은 去來 그 自體가 아니고 現金帳目에 對한 것이다. 따라서 歸屬은 2가지의 서로 다른 經濟單位 사이에 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經濟的 資格으로 行動하는 同一單位 內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看做되어 現實의 現金帳目과 나란히 그것도 함께 計定에 記錄될 수 있는 假設的 現金帳目으로서 定義될 것이다.

43. 「體系」에는 그 經濟的 性格이 相互 完全히 다른 3가지의 別個 다양한 歸屬이 存在한다.

(a) 第1 歸屬

第3表의 第3列과 第4列에 記載된 實在 非貨幣的의 去來와 歸屬한 歸屬現

(第3表) 「體系」에 있어 去來의 諸類型

實 在 去 來				假 說 的 去 來	
貨 幣 的 去 來		非 貨 幣 的 去 來		單 位 內	리우우당
雙 方 向	1 方 向	雙 方 向	1 方 向		
財貨·서비스의 購入과 販賣	反對給付의 是 貨幣 移轉	財貨·서비스의 物物 交換	無料서비스의 提 供	自己消費· 資本形成을 위한 財貨·서비스의 生産	流通 마인
現金의 被 償者報酬		現物의 被 償者報酬	財貨나 貨 産의 贈與		儲蓄· 分擔金
貨貸料의 支拂		貨産의 物物 交換	無給勞動	在庫變化	保險計算上의 準備金에 대한 利子
貨産의 購 入과 販賣				資本消費	直接投資企 業에 대한 再投資
現貨의 現金 出고				歸屬金	現金 出고

金貨로우이다. 貨幣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去來는 觀察될 수 있는 것으로 記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歸屬을 歸屬去來라고 부르는 것은 不適切하다.

(b) 하일 II 歸屬

예를 들면 生産者와 消費者, 財貨의 所有者와 利用者라고 하듯이 2개의 서로 다른 實體로서 行動하는 單一의 經濟單位 內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推測되는 假設의 去來에 關聯한 歸屬된 現金금로우이다.

(c) 하일 III 歸屬

서로 다른 經濟單位 間에 實際로는 일어나지 않는 去來를 想定하는 데에서 關聯하는 歸屬된 現金금로우이다. 하일 III의 歸屬은 眞正한 貨幣의 去來를 代替수트된 品로우로 바꾸는 것에 의해 計定에서 眞正한 貨幣的 品로우를 排除한다.

「體系」에 있어서 貨幣의 去來와 歸屬 間의 均衡

44. 이 章의 主要 目的의 하나는 「體系」에 包含되어 있는 去來의 多樣性을 나타내는 것과 同시에 歸屬이 權히 重要한 役割을 맡고 있는 것을 強調하는 데에 있다. 많은 計定利用者가 「體系」의 歸屬에 對해 充分한 知識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는 疑心스럽다. 특히 國民計定の 歴史는 「體系」에 包含된 歸屬의 數가 特定 利用者나 壓力團體가 갖는 必要性이나 實情에 應해서 增加해 가는 傾向을 갖는 것을 分列하게 하고 있다. 現在 一層 많은 歸屬을 附加하려고 하는 壓力이 繼續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體系」에 있어서 現實의 現金금로우와 歸屬된 現金금로우의 間에 最適切의 어떤지의 여부를 判定할 경우에 考慮해 두어야 할 諸要因에 對해 再檢討하여 놓는 것이 適切하다.

(a) 첫째로 다일 I의 歸屬을 다일 II 및 다일 III의 歸屬과區別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非貨幣的 去來하는 區別로서 貨幣的 去來를 나타내려고 하는 意圖라면 모든 歸屬을 排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되지만 假設的 去來하는 달리 分離해서 實 在 去來를 나타낸다고 하는 데에 意圖가 있기 때문이라면 다일 II와 다일 III의 歸屬만을 排除한다면 옳은 것이라고 하는게 된다. 다일 I의 歸屬에는 經濟單位 相互間的 物物交換去來나 現物報酬 非市場生產者에 의한 家計의 無利서비스 提供과 같이 目的에 따라서는 假設的 去來보다 貨幣的 去來에 보다 가깝고 重要的 去來가 包含되어 있다.

(b) 經濟的 觀點에서는 現實의 貨幣증로우와 歸屬된 貨幣증로우 사이의 가장 重要的 差異點은 歸屬된 증로우의 경우 특정 用途나 支出에 結什되어 있고 다른 目的에 對한 處分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歸屬所得은 그 使用方法에 選擇의 餘地가 없는 對하여 그 受領者에 對해 貨幣所得 만큼의 價値가 있을지는 없다. 歸屬증로우와 貨幣증로우를 無差別하게 混在시키는 것은 一般的인 經濟分析에 對해 集計量의 有用性을 크게 줄이는 結果가 되는 傾向이 있다.

(c) 一般적으로 特定歸屬을 行하는 것에 依해 하나의 특정 目的 내지는 特殊한 다일의 分析에 對해서 얻을 수 있는 利益과 그밖에 一般的 目的에 對해서 發生하는 不利益과의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存在한다. 특히 編組目的을 爲해 導入된 각가지 歸屬은 市場과 市場의 움직임을 分析하는 外에 데이터의 有用性을 減少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失業에서도 그러하지만 政策立案者가 直면하는 主要한 經濟問題의 多數는 現實 市場의 不均衡과 關聯한 것이고 따라서 政策上의 目的에 依해 市場의 分析은 編組目的의 GDP 尺度를 考慮하는 것보다도 훨씬 重要性이 높은 것이다. 그 때문에 「體系」에 相當量의 歸屬증로우를

포함시키는 것은 市廳의 運營을 分離하게 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理解하기 어렵게 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理由에서 歸屬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基本的인 또는 核心을 이루는 計정의 集合에 對한 需要가 發生한다.

(4) 타임표의 歸屬은 그것이 實際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方法으로 記錄하는 것이므로 마이크로·레이다와 매크로·레이다 間에 差이를 들어하는 것과 같은 傾向이 있다. 마이크로·레이다에서는 去來가 「體系」에서 取除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方法으로 個體 經濟單位에 의해 認識되어 報告되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種類의 分析上의 必要를 調和시키는 것이 困難하게 되는 것이다.

45. 一般적으로 現在 以上の 歸屬을 「體系」에 導入하는 것은 그렇게 할 必要性가 極히 높은 경우에 限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結論에 이를 것이다. 現在 以上の 歸屬을 받아들여하는 것은 모든 歸屬을 主要한 「體系」로 부터는 排除하여 歸屬을 必要로 하는 利用者에 依해서만 判別되는 補充的 項目으로서 그러한 것을 取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要求를 必然적으로 強하게 한다고 하는 點에서 逆作用을 招來할 可能性이 높다. 특히 例를 들자면 產出에 있어서도, 그리하지만 貨幣去來와 歸屬과의 混合物인 項目이 많이 存在하기 때문이므로 「體系」의 모든 計定 및 附表에 關해서 一貫해서 貨幣的 去來와 歸屬과를 分離하는 것은 實際的이 아니다. 또한 計定の 各種 收支項目에 對한 歸屬의 影響을 分析하는 것도 不可能할 것이다.

第 2 章 經濟單位와 部門分割

序 言

1. 이 장에서는 經濟單位의 定義, 分類 및 그들간의 문제를 다룬다. 經濟全體로 확대된 經濟單位의 한 그룹은 「制度部門」, 또는 單純히 「部門」이라고 불리운다.

2. 經濟單位는 他 經濟單位와의 去來에 從事하는 것이 可能한 單位이다. 이로부터 經濟單位는 그 固有의 權利로서 財貨나 資產을 所有할 것, 負債를 질 것, 他 經濟單位와의 關係가 結付되지 않으면 안된다.

3. 만약, 財貨나 資產을 그 固有의 權利로서 所有할 수 없다면 그 單位는 他 經濟單位와의 去來에 있어서 所有權을 交換하는 것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所有한다고 하는 能力은 經濟單位의 必要不可缺한 屬性이다. 그 역쪽에 적어도 原理의으로는 經濟單位는 貸借對照表을 作成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4. 實態로는 2 種類의 經濟單位 밖에 存在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個人과 法人이나 團體에 依해 그것을 所有하는, 또는 支配하는 個人 또는 他 實體로부터 獨立한 것으로서 그 存在를 認定할 수 있는 法的·社會的 實體이다. 많은 法的·社會的 實體는, 財貨나 서비스를 生産한다고 하는 目的으로 設立되어 있는 法人, 其他·機關이다. 그러나 이 層級에서는 政府도 重要한 法的 實體로서 認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個人과 政府 單位는 모든 種類의 經濟活動에 屬하는 것이 可能하지만 法人이 最終消費에 屬할 수는 없다.

5. 原則的으로는 各各의 個人 내지 法的·社會的 實體는 別個의 經濟單位로 構成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같이 獨立된 經濟行動을 取할 수 없는 個人도 存在한다. 또한 自身の 所得이나 資産을 갖고 있지 않은 個人도 存在할 수 있고 他 經濟單位와 主來를 行하는 것이 不可能한 個人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個人은 經濟的으로 興味가 있는 計定에 記號할 價値가 있는 活動을 一切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經濟的으로 從屬하고 있는 個人과 同一한 그룹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體系」의 目的에 따라 計定の 基本單位로서는 個人보다 家計가 優先된다. 이 點에 關해서는 以下에서 一層 詳細하게 說明될 것이다.

6. 이와 같이 「體系」에 있어서는 計定の 基本單位는 個個의 經濟單位나 지는 經濟單位의 작은 그룹이다. 몇개인가의 經濟單位가 共有하는 資源에 依存하여 그러한 資源의 配分이나 處分에 關하여 集團的 意思決定에 從屬하는 경우 그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綜合된다. 따라서 行動이나 意思決定에 自主性이 없는 個人은 그들이 從屬되는 個人과 同一 그룹에 屬하게 된다.

7. 夫過의 所有 내지 支配下에 있는 法的 社會的 實體를 하나씩 그룹에 屬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例를 들면 會社集團이나 結集團體가 그러하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體系」에서는 個個의 法的·社會的 實體를 別個의 經濟單位로서 取扱하는 것을 優先한다. 以下에서는 우선 經濟單位로서의 個人의 役割과 行動을 考察하는 것부터 始作하는 것이 適切하다. 生産이 아니고 片當의 消費가 모든 經濟活動이 最終目的이므로 個人이 모든 計定體系의 本源的인 單位라고 하는 때에는 意味가 있다. 最終消費는 個別的으로 하거나 集團的으로 하거나 個人에 의해 行하여지는 것으로 모든 經濟活動의 最終的 收益者는 個人이다. 社會나 經濟가운데 法的·社會

的 實體가 어느정도 생성되고, 그러한 실체는 實體로는 個人에 의해 그들 自身 또는 다른 個人의 利益을 위해 支配하고 操作된다. 특히 法的·社會的 實體의 附屬構造의 創設에 의해 財貨 및 資產의 所有權이 個人에 의해 間接적으로 밖에 行使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모든 財貨 및 資產의 窮極的 所有權도 또한 個人에게 歸屬하는 것이다.

經濟單位로서의 個人

9. 法的·社會的 實體의 行動領域이 그와 같은 實體가 設立된 特定の 目的에 限定되고 있는 것과는 對照적으로 個人은 모든 種類의 經濟活動에 屬할 수 있다. 이러한 理由에 의해 個人은 여러가지 다른 方法으로 分類되고 그중으로 나뉘는게 된다. 모든 目的에 適切한 方法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以下에 나타나 있듯이 個人이 屬하고 그들을 分類하거나 그중으로 나누거나 하는 경우의 關係가 있는 세가지 主要한 經濟活動 類型이 있다.

(a) 個人은 事業을 스스로 所有하거나 支配하는 企業家로서 또는 다른 個人이 所有하는 事業에 從事하는 被屬者로서 生産過程에 參加하는 것이 可能하다.

(b) 모든 個人은 財貨 서비스의 最終消費에 參加한다.

(c) 各種 資產-有形·無形·金融을 獲得 내지 處分함에 의해 個人은 資產이나 負債의 保有狀態를 變更할 수 있다.

10. 生産에 對한 貢獻을 分析하기 爲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이 意味를 갖는 單位이지만 個人의 消費者로서의 行動이나 金融的인 行動을 分析하려고 하는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은 가장 適切한 單位

리고는 말할 수 없다. 後者の 目的을 위해서는 個人을 家計에 一括하는 外에 家計를 計定的 基本單位로서 取扱하는 법이 當다. 經濟的 觀點에서는 모은 社會에서 個人의 작은 그룹이 함께 生活하고 그들의 所得이나 富의 一部分 내지 全體를 모아서 어느 種類의 消費—특히 住宅과 食料—를 集團으로 하는 것이 通例이라는 것이 個人을 家計에 적용하는 根據가 된다. 勿論 家計의 存在는 家族關係를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특히 아이들이나 老人과 같이 自己自身の 資源을 지니지 않고 주로 다른 家族構成員에 依存하는 어느 特定の 個人이 存在하는 것의 反映이기도 하다.

11. 分類的 家計의 形成은 社會的·宗教的·文化的 影響과 같은 非經濟的 要因의 影響도 받는 것이지만 現在의 脈絡으로부터 意味가 있는 것은 어느 一定의 經濟活動, 특히 消費를 集團으로 하는 것이 보다 効率的이라는 것이 事實이라고 할지라도 生産에 貢獻하고 個人的 消費나 金融的 意思決定을 行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이지 家計는 아니라고 하는 事實을 아는 것도 重要하다. 또한, 家計의 分類과 적용을 어떻게 하는 또 하나의 原因은 同一家計에서도 서로 다른 構成員의 社會 經濟的 屬性이 通常 同一하지 않다고 하는 事實이다. 例컨대 家族의 한 사람은 企業家이고 또 한 사람은 教養者이며 나머지는 經濟적으로 非活動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家計內部에서의 多樣性은 그것이 分類라고 하는 目的에 있어서는 理想的인 單位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意味한다.

12. 部門分類이라고 하는 目的을 위한 計定的 基本單位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이 아니고 家計를 優先하는 決定的인 要因은 이미 앞에서 論及하였듯이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經濟的 問題에 있어서 行動이나

意思決定의 自主性을 갖고있지 않다고 하는 事實이다. 따라서 家計는 예
 이라 蒐集에 있어서도 統計單位로서 자주 利用된다. 大部分의 人口 센서
 스나 個人에 關한 經濟調査는 家計를 그 統計單位로서 使用되며 많은 경
 우 消費과 貯蓄에 대해 얻어진 情報을 個人 레이스로 分解하는 것은 不可
 能하기 조차하다. 이러한 理由에 의해 「個人部門」 全體中 內譯部門을
 定義한다고 하는 目的에서는 「體系」에 있어서 計定の 基本單位로서 家計
 가 採用된다.

13. 한 사람만의 家計로부터 많은 個人으로 構成된 家計에 이르기까
 지 家計에는 各種規模가 存在한다. 또한 여러 社會나 나라들은 文化·傳
 統, 教育, 宗教, 人種, 歷史, 地理, 氣候 등과 같은 要因에 依存하여 극히 多様な
 形態를 갖는 家計가 存在한다. 따라서 普遍的으로 適用 가능한 家計의 定
 義를 提供하는 것은 어렵다. 經濟的 觀點으로는 家計의 各 構成員이 家
 計의 集團의 資源에 對해 어떠한 特定分配에 對한 形式的인 權利까지는
 갖지않을 지라도 階級的 利害 또는 請求權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重
 要하다. 따라서 적어도 貯蓄과 서비스의 消費는 家計全體에 影響을 미치
 는 集團의 意思決定에 의해 行하여질 것이다. 實際問題로서는 特定 國家
 나 地域社會-經濟의 條件으로 通하고 있는 統計調査의 專門家가 採用하고
 있는 家計의 定義는 國民經濟計定の 目的에 따라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大多數일 것이다.

14. 두가지 特殊한 경우에 對하여 살펴보자. 첫번째로 雇傭主와 同一
 한 住居에 살고있는 傭부를하는 사람이다. 그밖에 家事使用人의 問題가
 있다. 이와 같은 使用人은 서비스의 提供과 交換으로 現金과 함께 宿舍나
 食事提供을 받는다고 하는 形態로의 現物에 對한 支拂을 받아 들이고 있

다. 그러나 그와 같은 財實, 서비스의 消費는 그들을 雇傭하는 側 家計의 共同消費의 一部分으로서 取扱되어서는 안된다. 家事使用人은 雇傭主側 家計의 費用에 對한 利害도 請求權도 갖지않기 때문이므로 家計使用人을 雇傭主側 家計의 一部分으로서 取扱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家族으로서 親族關係에도 어느 때도 異途로 해서 家事使用人은 別個의 家計를 構成 하는 것으로서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15. 두번째의 特殊한 경우는 恒久的으로 施設에 살고 있거나 적어도 1年以上의 期間 施設에 居住하게 되는 個人에 對한 것이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現在 居住하고 있는 施設밖의 사람들과 거의, 또는 전혀 접촉을 갖지 않는 경우 經濟問題에 있어서 行動이나 意思決定의 自主성을 갖지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個人은 單一の 施設家計에 屬하는 것으로 取扱하는 것이 當연하다. 施設家計에 屬하는 個人의 請願은 아래와 같다. 修道院이나 修女院에 恒久的으로 살고 있는 教團成員, 長期入院中인 患者, 特別 精神病院의 경우 長期服役中인 囚人 其他 同一한 境遇에 있는 事實 등이다. 다른 한편 短期入院中인 患者, 病院의 療養이나 宗教上의 靜修를 위하여 施設等に 들어가있는 사람들 특히 短期服役中인 囚人은 그들이 通常居住하고 있는 家計에 屬하는 것으로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16. 다음으로 生産에 있어서 個人의 役割을 檢討하여 「個人部門」에서 實際로 行하여진 生産의 種類에 對해서 記述한다.

個人部門 內部的 生産

17. 法人企業이나 政府와 같은 法的實體의 被導者로서 個人이 일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貢獻하고 있는 生産은 「個人部門」 그것은 아니고

그 外側에서 行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個人部門」 內部の 生産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에 의해 直接所有되고 支配되고 있는 單位가 2人 以上の 個人에 의한 파르너십이다. 그러한 生産單位는 「個人企業」이라고 불리어진다.

18. 個人企業을 「個人部門」에 포함시키는 理由는 法的 또는 經濟的 觀點에서 그것을 한 사람 내지 複數의 個人으로서의 所有者로부터 分離할 수 없기 때문이다. 事實 個人企業에서 使用되고 있는 資產은 事業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事業의 所有者가 個人的 資格으로 所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事業은 事業 그 自體로서는 他經濟 單位와의 未來에 屬하는 것일 수는 없다. 負債를 지는 일도 있을 수 없고 他經濟 單位와 關係를 맺는 것도 可能하지가 않고 또한 證券을 發行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그 경우 企業은 한 사람 내지 複數의 企業所有者에 의해 實行되고 있는 特定範圍의 活動을 나타내는 便宜의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個人企業의 所有者는 事業의 全活動에 對해서 個人的으로 責任을 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有限責任의 경우에 있어서도 企業이 法律에 의해 別個의 實體로서의 承認을 받아 그것이 自動적으로 企業을 別個의 經濟單位로 하고 「個人部門」으로부터 그것을 離脫시키는 것이다.

19. 個人企業에서 典型的으로 營爲되는 生産의 種類는 아래와 같다.

- (a) 農業, 自給農業 包含
- (b) 小賣業, 店舖營業에 依한것 市場業者 路上營業 其他
- (c) 小規模 建設 및 住宅建設 住宅의 修理, 제인트 裝飾
- (d) 醫師, 辯護士, 會計士 등의 사람들에 의해 提供되는 專門的 서비스
- (e) 輸送, 清掃, 洗滌 等 各種 雜多한 서비스의 提供

20. 이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는 個人企業은 製造業이 아니고 農業, 建設業 서비스業으로 集中하는 傾向이 있다.

21. 以下에서 個人企業에 대한 記述의 單純化를 위해 企業은 한사람에 의해서 所有되고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 이 假定은 說明의 便宜를 위해 設定된 것으로 一般的 論議에 影響은 없다. 파르너섬(舍名會社)에 대해서는 뒤에 考證하기로 한다.

22. 個人企業의 所有者에는 2重의 役割이 있다. 우선 所有者는 事業의 創設과 全體的 管理에 對해서 責任있는 企業家이다. 둘째로, 所有者 자신이 通常 그 事業에서 勞動을 하고있다. 즉 그 사람은 有給被僱者에 對해 提供되는 것과 同一한 種類의 勞動投入을 貢獻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役割의 各各은 다른 種類의 要素所得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兩者를 區別하는 것이 重要하다.

23. 個人企業을 創設·經營하려고 하는 意思決定은 어떠한 善類도, 明確한 認許書式도 必要치 않다고 하는 意味로 純粹하게 形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個人은 市場에 있어서 販賣나 自己消費을 위한 財貨나 서비스의 生産을 開始한다고 하는 意思決定 조차 한다면 充分 理由이며 따라서 個人企業의 創設은 거의 資本을 必要로 하지않는 單純한 관계일 수 있다. 그 일은 작은 面積의 土地에 野菜를 栽培한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길에서 通行人의 구두를 닦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企業의 開業과 管理는 相當한 創業者 進取의인 精神 그리고 資本設備을 必要로 하는 相當의 複雜한 活動이라 할 수 있다. 事業의 所有者는 企業家로서의 資格이 있어서 必要한 資金을 그 自身の 個

人的擔保源으로서 調達하지 않으면 안되고 事業을 運營함에 있어서 適當한 場所를 찾거나 生産에 從事하기 위해 必要한 資本設備나 材料를 모두 購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事業에 다른 사람들을 雇傭하는 決定을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경우 適切한 사람들은 찾아내어 選擇하고 그들을 監督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機能을 할 경우 事業의 所有者는 그 自身の 創意와 選取的인 精神에 의해 또는 그 自身の 資源을 使用하는 것에 의해 事業을 創設하고 支配하는 企業家로서 行動하고 있다. 그는 또한 市場에 대한 生産에 수반한 모든 種類의 危險을 負擔하고 있다. 所有者이고 또한 企業家인 점에 따라 그는 自動的으로 事業에 생긴 營業剩餘 全體의 專屬 受領자가 된다.

24. 그러나 個人企業의 所有者는 典型的으로는 事業에 있어서 勞動을 하고 있다. 그 점에서 그는 有給被傭者에 의해 提供되고 있는 것과 同種의 勞動投入을 行하고 있다. 예를 들면 農夫는 被傭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 自身 거의 例外없이 營農作業을 하고있다. 實際 그러나 被傭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感覺된다. 小規模인 農民이나 自給農民의 경우 生産過程으로서의 勞動投入 全體가 事業 所有者에 의해 提供되고 있다. 典型的인 店舖 所有者의 경우에도 被傭자의 助力有無에 關係없이 顧客에게 物品을 自己 自身이 直接 販賣하고 있다. 또한 醫師, 輪科醫師, 藥士, 會計士, 建築家 등의 專門的인 職業인들이 患者나 顧客에게 高度의 技能을 수반하는 서비스를 提供할 경우에도 主要한 勞動 投入은 事業所有者 自身에 의해 提供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5. 이와 같이 個人企業 所有者가 自身の 事業에 對해서 勞動 投入을 行할 때 本質的인 意味로 그는 自己 自身에 의해 雇傭되고 있다. 實際로는 그는

自身の 労働에 對해서 事業의 所有者로서 資金을 支拂하지 않으면 個人企
 業의 生産計定으로 記録되고 있는 純營業剩餘 가운데에는 두가지의 完全히
 다른 要素가 包含되어 있다. 첫 번째로 自身の 事業에 自己自身을 雇傭하
 는의 對해 支拂하여야 할 資金, 俸給을 나타내어야 할 部分이 있다. 이
 것은 自己雇傭으로부터의 所得이라고도 불리어질 수 있는 概念的인 要素
 이다. 두 번째로 自己雇傭으로부터의 所得을 扣除한 後에 남는 殘剩 要
 素가 있다. 이 部分은 그의 企業家로서의 機能에 關한 所有者에게의 報
 酬을 나타내는것 즉 企業所得이다.

26. 많은 分析 目的에 따라 이러한 두가지 要素를 分離하는 것이 예
 우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企業家가 그 自身の 勞動에 對해서
 適切한 資金을 支拂하는 것을 想定하고 自己雇傭으로부터의 所得에 關한
 單位內歸屬을 導入하는 것에 의해 可能케 된다. 그러나 實際로는 大多數
 의 個人企業에 對해 이와 같은 歸屬을 實行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體系」에서 이와 같은 歸屬이 働容되는 것은 아니다.

27. 自己雇傭으로부터의 所得과 企業家로서의 所得間의 收支는 個人企
 業의 種類에 따라서 상당한 差異가 있는것이 當을 것이다. 例컨대 專門
 職業에 있는 사람들이 醫師나 辯護士等으로서 그들의 技術을 實踐하고 있
 는 경우 發生한 純營業剩餘는 大部分 自己 雇傭으로부터의 所得이라고
 假定해도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 財貨를 市場에서 販賣하기 爲의 生産하
 고 있는 個人企業의 경우 純營業剩餘가운데 企業所得인 部分은 事業의 規
 模가 擴大하는데 따라서 커지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28. 「體系」에 있어서는 自己消費을 위해서만 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個
 人も 個人企業을 所有하고 있는 것 같이 取扱된다. 產出의 價額에 對

屬되고 原材料과 같이 生産過程에서 使用해 버리는 中間費用이 있거나 또 는 資本 消費가 있으면 그것을 產出 價値額으로부터 控除한 金額이 純營業剩餘로서 取扱된다. 그러나 自己計定生産에 従事하는 個人의 企業家的 役割은 取하기에 보자라는 것으로, 實際로는 單純히 그러한 個人을 自己自 身を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現實的인 것이다. 自己消 費를 위한 生産은 그 大部分이 自給農業이든가 先進國에 있어서의 DIY 活動이지만 그러한 活動에 従事하는 사람들은 責任을 지고 意思決定을 행 하며 危險을 負擔하는 企業家로서 行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有給의 被傭者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同等하게 提供될 수 있는 勞動投入을 提供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產出의 歸屬價値額과 實體消費를 포함한 其他 認定 可能な 費用과의 差額을 歸屬資金으로서 取扱하여 純營業剩餘를 "0"으로 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다. 어느것이나 所得 淸요우를 歸屬하 는 것은 必要하며 自己 自身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純營業 剩餘를 歸屬하기 보다는 被傭者 報酬를 歸屬하는 편이 問題가 적다. 이 일은 消費된 財貨의 價値額을 自己自身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對해서 支拂된 一種의 現物所得으로 取扱하는 것을 意味한다.

29. 「體系」에 있어서 自家 所有 住宅의 所有者는 自己自身이 消費하 는 住宅 서비스를 生産하는 個人 企業者. 所有하고 있는 것 같이 取扱된다. 이 경우 거의 어떠한 勞動投入도 없이 事業 所有者가 自己自身을 위해 勞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實際는 아니다. 그래서 歸屬된 產出이 勞動 以外の 費用을 上回하는 部分을 營業剩餘로서 取扱하는 것이 適當하다.

파트너쉽

30. 原則적으로 파트너쉽도 單一業主企業(Sole Proprietorships)과 같은 사람에게 의해 소유되고 있는 企業과 同一하게 取扱된다. 有限責任會社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파트너가 事業의 資產을 個人 資產으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 파트너쉽을 構成하는 個人 集團과 事業 그 自體와의 사이에 明確한 區別이 있을 리 없고 다른 한편 單一業主企業이 아닌 파트너쉽의 存在는 事業의 모든 活動 및 運營이 한사람의 業主에 의해 管理되는데 차이 같은 規模 이상으로 事業이 成長한 것을 反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事業에 의해 生じた 純營業剩餘가 自己 屬權所得이 아니고 企業所得이라고 여기지는 程度가 높아난다고 하는 것과 같이도 여겨진다. 그와 같은 경우 可能하다면 그 事業을 個人企業이 아니고 準法人企業으로 取扱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것이다. 準法人企業의 取扱에 대해서는 以下에서 記述한 것이다.

個人企業과 家計와의 關係

31. 個人 企業은 個人에 의해 行하여지는 一定 種類의 活動 및 去來를 包括한다. 數많은 個人企業 所有者는 극히 初步의 計定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와 같은 去來는 個人에 의해 行하여지는 다른 種類의 去來와는 別個의 것으로서 生産計定에 記錄하는 것이 可能한 것이다. 個人의 生産活動과 財貨 서비스의 最終 消費者로서의 活動을 明確하게 區別하는 것은 重要하므로 本節에서는 個人企業과 家計間的 連絡에 대해 一層 考고들어 보려고 한다.

32. 첫째로 家計內部에서 行하여진 生産이라고 하는 意味에서의 家計生

產은 通常 個人企業의 生産全體의 一部分을 占有하는에 지나지 않는다. 一般적으로 個人企業은 家計의 外圍에 所在한다. 보다 正確하게 말하면, 居住目的으로 家計에 依り 使用되고 있는 住宅의 外圍에 있다. 事實 個人企業이 運營되고 있는 範圍는 所有者가 居住하는 住宅과는 어느 程度의 距離를 둔 範圍에 있는 것도 있다.

33. 生産活動類型의 生産分析을 爲해 「體系」가 使用하고 있는 統計單位는 事業體이다. 그리고 뒤에 한층 詳細하게 說明될 것이지만 이 地點에서 事業體의 概念을 導入하여 놓는것이 便利하다. 事業體란 行하여지는 生産活動의 種類에 關해서 可能的 限 均質인 것을 意圖하는 生産單位이다. 따라서 事業體란 單一類의 生産活動이 單一地點에서 行하여지는 單位라고 定義된다. 事業體라고 하는 單位를 認定함에 따라서 大規模로 複雜한 事業을 生産이라고 하는 見地에서는 보다 均質인 듯한 한층 작은 單位로 分類하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大規模인 事業은 大部分의 경우 法人 경우가 많을터 이지만 個人企業 가운데에서만 몇개인가의 別個의 事業體로 分類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을것이다. 事業體가 統計單位로서 實行하기 爲해서는 적어도 以下와 같은 情報을 얻을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總生産의 價値額, 中間投入의 價値額, 被傭者數 및 資本形成이다.

34.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個人企業도 2個 以上の 事業體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例를 들면 倉庫의 所有者나 自動車 仲介人은 서로다른 範圍에 있는 2個 내지 그 以上の 倉庫나 서비스 스테이션을 그 營業對象으로 할지는 모른다. 辯護士나 會計士와 같은 專門的 職業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파트너십을 서로다른 地域내지 서로다른 地域에 있는 2

한 내지 그 이상의 事業體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大多數의 個人企業에 있어서는 事業體가 하나 밖에 存在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通常의 경우 當該 事業體는 所有者가 居住하고 있는 住宅과는 서로 다른 場所에 있겠지만 便宜上 兩者가 近接하여 있는 것은 일용지도 모른다. 그러나 農業者의 경우 同一한 場所가 때때로 事業과 事業所有者가 屬하는 家計에 의해 共同利用되고 있다. 原則적으로는 農業者의 경우에 있어서 事業體는 農業者의 사람들이 일하는 土地와 家畜을 收容하는데 使用하는 農業者의 建物이나 設備이다. 建物의 一部分이 農務目的으로 쓰여지고 同一 建物의 다른 一部分이 居住 空間으로 使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事業體와 住宅 사이가 物理적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 普通일 것이다. 따라서 以下에서 記述되어질 두 세계의 例外를 別處로 한다면 家計에 의해 占有되고 있는 空間에서는 一般적으로 生産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個人部門」 가운데서 行하여지는 生産을 家計生産이라 부르는 것은 誤解를 招來한다. 自給農業에서 조차 家計生産이라고 부르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

35. 특히 다음 事例에 나타나 있듯이 個人企業과 家計間에는 1對1 對應조차도 存在하지 않는다.

(4) 同一의 家計가, 個人企業을 各各 所有하는 한 사람보다 많은 個人을 包含할 可能性이 있다. 原則적으로는 同一 家計의 構成員에 의해 所有되는 서로다른 個人企業의 數에 制限은 없다.

(5) 同一 家計의 2人 내지 그 以上の 成員이 파트너쉽을 構成해서 同一 個人企業을 集團적으로 所有하는 것도 있다. 同一企業을 共同으로 所有하는 것은 同一家計의 成員인 경우에는 드물지 않다. 파트너쉽은 法的으로 適切하게 構成되는 것일지도 모르고 相互合夥와 協業에 高因한 非形式的인 結合일지도 모른다. 後者は 自給農業을 包含하여 主要 혹은 全面

의므로 自己消費에 對한 生産에 從事하는 個人企業의 경우로 거의 限定될 것이다. 實際로는 非形式的인 파트너십이 存在할 경우와 그 한사람이 名目的인 所有者이며 다른 사람들이 無給의 家族勞動者인 경우라고 하는 두가지 狀況을 區別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c) 3번째의 可能性으로 複數의 共同所有者가 서로다른 家計에 所屬하는 파트너십인 第一의 個人企業인 경우가 있다.

36. 따라서 (a) 및 (c)에 記述되고 있는 狀況을 考慮하여 보면 同一家計의 成員이 몇개인가 서로다른 個人企業을 所有하는 일도인고 반대로 同一企業이 몇개인가 서로다른 家計의 成員에 의해 共同으로 所有되고 있다고 할 可能性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트너십이 存在하지 않는다면 何어도 殊殊의 그룹이 同一家計의 成員에 의해 恒常 所有되고 있듯이 몇몇의 個人企業 그룹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可能할 것이지만 實際로는 이러한 限定된 對應일지라도 保證되고 임지는 않다.

家計內部的 生産

37. 이미 언급하였듯이 一定의 特殊한 경우에 있어서 家計가 居住하는 住宅은 또한 個人企業이 營爲하는 事業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例外的인 生産이 行하여지는 狀況은 3 個정도 뿐이라고 여겨진다. 아래에서 그러한 狀況의 各各을 論議하여 놓을 價値가 있다.

38. 첫번째의 경우는 家計에 의한 居住目的으로 使用되는 것과 同一한 領域에서 實行될 수 있다. 手工業製品, 例컨대 옷감, 衣服, 구두, 玩具, 土產品이나 其他 小消費計의 小規模生産이다. 그러나 事業體外 作業者(OUP Worker) 즉 雇傭主에 의해 提供된 材料를 賃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加工을 행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個人企業의 所有者는 아니다. 그들은 業務上의 材料를 所有하고 있을지는 없다. 그들은 材料를 提供하는 事業의 被業者일 뿐이다. 家計의 成員이 家庭 내에서 自己自身の 事業으로 手工業 製品의 生産을 運轉할 경우만 住宅이 事業體로서의 機能을 한다.

19. 住宅이 事業體를 兼하는 두번째의 경우는 家計의 成員-通常 그 家 體主가 한사람 내지 그 以上の 人들을 雇傭해서 家計 成員의 利益을 爲해 家事 서비스를 生産한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典型的인 例로서는 清掃, 정원손일, 食事의 調理과 給仕, 家庭教師, 着病人 등을 包含한다. 雇傭主는 家計內部에서 自己消費을 目的으로 서비스를 生産하고 있는 個人企業의 所有者로서 取扱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價行上 產出의 價額은 現金 또는 現物로 支拂된 被業者 報酬와 같은 것으로 看做되며 다른 生産費用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總營業剩餘는 "0"이다. 家事使用人은 그들의 雇傭主와 同一한 場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雇傭主와 同一한 家族에 屬하고 있는 것이 아닌-限 後者인 家計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것으로 取扱해서는 안된다. 親族關係가 없는 被業者는 家計의 範圍에 對해서 共通의 利害를 갖지 않으며 集團的 消費外의 意思決定에도 影響力을 發揮하지 못하므로 別個의 家計를 構成하는 것으로 取扱되어 안된다.

40. 住宅이 (形式的 意味이지만) 事業體로서의 機能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取扱되어 안되는 세번째의 경우는 住宅 所有에 의한 住宅미스 生産에 關한 것이다. 이 경우 自己消費을 爲해 生産된 產出의 價 值額은 市場에서 賣却되고 있는 同一한 居住施設의 賣却料을 基礎로 歸屬 된다.

個人企業과 準法人企業

41. 個人企業에는 혼자서 自給農業이나 路上營業에 従事하는 사람들로 부터 數百名이나 되는 被傭者를 갖고있는 大規模 製造業에 종사하는 것 까지 各種各色이다. 原則으로 個人企業이란 다른 사람의 助力이 있고 없 고에 關係없이 財貨·서비스의 生産에 従事하는 個人的 活動과 去來를 가 타하는 간략한 用語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事業이 커지게 되면 事業 은 그 獨自의 存在를 나타내기 始作하고, 法的으로는 그 個人的 資 格에 있어서 한사람 혹은 複數의 所有者로부터 區別할 수 없을 지라도 獨立의 存在로서 認識되기 始作한다. 특히 事業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所有者 自身에 依어 直接 貢獻되는 勞動投入은 漸次로 重要하지 않게 되 어 그의 役割은 壓制的으로 企業家의 役割로 되어간다. 따라서 純營業剩餘는 大部分 企業所得을 나타내게 되며, 自己雇傭 所得은 無視可能 한 程度가 된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는 이러한 事業을 小規模인 農園主, 店舖 營業者, 路上營業者, 醫師, 其他 自營業者인 사람들과 同一 그룹에 한대 묶 어 놓은것이 漸次로 不適切한 것으로 되어가게 된다. 實際 小規模인 農 園主 등의 所得은 自己自身에게 責任이 있는 生産過程에 自己自身이 直接貢 獻하는 熟練, 未熟練의 勞動量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42. 可憐한 限(小規模인 農園 등이 아니고 그 獨自의 存在를 나타내 는) 個人企業을 두개의 別個의 實體로 나눌것 즉 事業의 所有者와 그가 所有하고 있는 事業 그 自體를 나누는 것이 勸告되고 있다. 後者は 準 法人이라 불린다. 法人은 現在の 經濟單位인 所有者와는 區別된 것으로서 假設的인 法的 實體이다. 그러나 準法人을 그 所有者와 識別하는 것이 可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法人企業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實體인 것 인으로는 充分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所有者의 計定과 事業의 計定을 分離하는것이 可能하다는 것도 必要하다. 이것은 同時에 所有者와 事業 間에 行해지고 있다고 假定되는 어느 一定의 概念的인 去來가 마치 2個의 서로다른 經濟單位間的 去來인 것과같이 認定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以上으로 여기에는 學法人의 概念을 個人企業의 文獻으로 展開하여 왔지만 學法人 概念은 個人企業에 限定될 必然性은 없는점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實際 法人이나 政府에 의해 所有되는 學法人을 識別하는 것도 必要하다.

43. 學法人의 概念은 非法人企業이 充分히 自立性을 갖는 것일 때에 適用될 것을 意圖하고 있다. 즉 그 所有者의 直截的 또는 日常的인 干渉을 벗어나 그 管理가 法人企業의 管理와 類似的 것이되는 狀態 바꾸어 말한다면, 한사람 내지 複數의 所有者가 能動的인 所有者라고 하는것 보다는 株主와 같은 行動을 보이는 狀態라고 할때에 適用되도록 意圖되고 있다. 그때 學法人은 이 生産에 있어서 使用되고 있는 資產을 그것 自身의 權利로 所有하고 있는 것과같이 取扱할 수 있다.

44. 實際로는 學法人을 그 所有者(한사람 내지 複數)로부터 區別 하는 것이 可能性은 그 事業에 關해서 入手possible 會計 데이터의 實에 依存할 에 存함이다. 우선 當該事業의 生産活動을 包含하는 完全한 生産計定(또는 同等的 損益計定)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事業에 의해 使用되고 있는 모든 資產과 事業에 의해 負擔되고 있는 未決債務(예를 들면 材料에 關한 未總請求書나 事業目的으로 購入한 資產)을 가버리고 收支項目으로서 (한사람 내지 複數) 所有者의 持分이 나타난 貸借對照表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그 生産計定으로부터는 企業所得을 計算하는

것이 一純營業剩餘 카이네스 賃貸料・利子로서-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賃貸料는 事業目的에 쓰이고 있는 土地에 關한것, 利子는 事業으로 使用되는 賃産의 購入을 資金으로 하는데 쓰여진 貸付에 對한 것만을 가리키고 있다.

45. 以上으로 企業所得中에서 (한사람 내지 複數) 所有者에 의해 個人的 使用目的으로 引出되는 部分을 認定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企業所得을 두개의 部分으로 分類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事業에 關係되는 部分(한사람 내지 複數)所有者로 分配되는 部分이나 事業內부에 關係된 部分은 事業의 貯蓄이 되며 「個人部門」의 貯蓄에서는 排除된다. 企業所得을 識別하는 것이 可能하고 그것을 留保所得과 分配所得으로 分類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할 경우가 準法人을 識別할 수 있기 위한 必要 또는 充分條件이다. 個人企業의 運營方法이 그 企業所得 全體로부터 企業所得이 引出을 別個로 認定하고 測定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恒常 그 個人企業을 準法人으로 取扱하여야 할 것이다. 實際로는 大規模인 個人企業쪽이 小規模인 경우 보다 必要한 會計 데이터를 入手 할 수 있는 可能性이 훨씬 높다고 여겨지지만 規模 그 自體가 準法人을 識別하기 위한 適切한 基準이라는 없다.

46. 原則적으로 生産活動과 消費活動의 보다 有效한 分離를 計定內에서 實行하기 위해서는 可能的 限(한사람 내지 複數) 所有者와 準法人과를 區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必要한 會計 데이터를 獲得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아마 例外는 2~3개의 限定된 케이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法的條件, 會計慣行, 稅制상의 取扱, 其他 經濟的・制度的 要因에 依存해서 準法人을 識別한다고 하는 것에 對한 實

行 可能性에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差異가 있다.

47. 또한 企業의 規模와 같은 附加的 基準을 導入해서 準法人의 識別을 보다 容易하게 行하려고 하는 것은 無益하다고 하는 점에도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決定的인 것은 만약 企業所得中에서 事業內留에 留保되는 部分과 所有者에 의해 引出되는 部分과의 區別이 可能하지 않다면 準法人과 그 所有者와의 사이에 區別을 하는 것에 意味는 없다. 그와 같은 事情으로는 實際上的 問題로서 단이 아니고 原則的 問題로서도 事業과 所有者와의 區別이 不可能하다. 事實 事業所得과 個人所得이 概念的으로 分離 可能하지 않으므로 事業貯蓄과 個人貯蓄을 區別하도록 하는것 自體도 無意味 無益 無效 하다.

48. 파트너쉽의 경우가 單一業主 企業의 경우보다 準法人을 識別하기 容易할 것이다. 파트너쉽 企業은 單獨의 個人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企業보다 規模가 큰 것이 많고 企業의 所得總計가 個價의 共同 所有者間에 分配되는 方法을 決定하는 規則이나 指針도 있음이 顯明하다. 그러한 規則은 또한 所得總計의 어느만큼의 部分이 共同所有者에 支拂되고 어느만큼이 事業內留에 留保되어 留保된가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인 경우도 많다.

49. 「體系」에 있어서는 個人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準法人을 「個人部門」에서 除外하고 法人企業과 同一 部門에 移動시킬 것이 勸告되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의 國際的인 比較可能性을 改善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이다. 實際 稅法上, 商法上의 차이의 結果로서 企業이 法人化하는 것을 選擇 하는 정도에는 나라에 따라 어느정도 恣意的인 差異가 있다. 다른 한편 準法人을 法人과 同一한 部門에 놓는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로다른 稅制나 法的인 條件下에 있기 때문일지언정 결정도 있다. 經濟計定上的 目的

으로 學法人에 대해 그것을 所有하는 (원사알 내지 複數) 個人과 區別하는 것은 有益하겠지만 그것이 法體系上, 稅制上의 區別은 아니라는 점에서 注意를 할 필요가 있다.

法的·社會的 實體

50. 法的·社會的 實體는 法律이나 慣習에 의해 存在가 그것을 所有 혹은 支配하는 個人이나 他實體로부터 獨立이 認知되고 있는 實體이다. 經濟計劃의 目的에 適切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實體는 經濟單位라도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그 實體는 財貨나 資產을 所有하고 負債나 다른 責任을 지는것이 그 自身の 權利로서 法的으로 認定되고 있던가 社會的으로 承認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換言하면 法的·社會的 實體는 他經濟單位와의 去來에 從事할 수 있다.

51. 各種 國家나 社會의 法律과 慣習에 따라 法的·社會的 實體의 形態에도 多樣性이 있다. 그 때문에 實體로 存在하는 經濟實體의 모든 種類의 完全한 리스트를 作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가장 普遍的인 種類에 대해 簡明하게 言明해 놓는 것이 有益하다.

52. 우선 分別하게 政府 그 自體가 經濟的 實體이다. 主된 問題는 이 點만큼 많은 別個의 經濟實體가 政府를 構成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以下에서 一層 詳細히 檢討될 것이다. 政府는 別途로 하고 主要한 經濟實體의 諸類型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A) 財貨, 서비스의 生産에 從事하는 法人企業 簡略化를 위한 「法人」 내지 「會社」라고 불리는 수도 있을겠지만 「法人」이라고 부르는 편을 좋아한다. 法人은 항상 法律上의 手續에 따라 設立되며 有限責任이다. 株

式과 그 밖의 資本參加權의 形態로 發行되고 있는 法人의 持分은 他經濟單位—個人이나 他經濟實體—에 의해 所有된다.

(b) 法律上の 手続에 따라 設立된 協同組合 有限責任의 파트너쉽 法人과 類似하지만 그와 같은 實體의 持分을 取得할 可能性을 갖는 것은 通常 特別하게 姓名된 經濟單位에 限定되고 있다.

(c) 公的法人 特別한 法令에 의해 設立되고 그 持分을 通常 政府에 의해 全面的으로 所有하고 있다.

(d) 財貨·서비스의 生産에 從事하는 其他 法的·社會的 實體 그 所有權이 株式과 其他 資本 參加權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政府에 의해 直接 所有되던가 定款에 따라 構成員으로된 他經濟單位에 의해 直接 所有된다. 그 主要한 目的은 市場에서 財貨·서비스를 販賣하지 않고 構成員에게 또는 때때로 第三者에게 無料 내지 거의 無料로 財貨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다. 또한 그 主要한 所得 源泉은 構成員과 政府로부터의 寄附과 其他 移轉이다. 「體系」에서는 그러한 것을 「非營利機關」이라고 부른다.

(e) 非居住者인 經濟單位의 子會社 내지 支店 非居住者인 經濟單位로부터 經濟적으로 獨立되지 않은 경우도 包含된다. 形式的인 地位에 관계없이 他居住者 經濟單位의 觀點에서는 獨立한 經濟實體로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

53. 이러한 各種 經濟的 實體의 「體系」에 있어서의 取扱은 以下の 몇 개의 段階에서 —層 詳細하게 說明될 것이다.

法人企業·協同組合·有限責任의 퍼트너쉽

54. 市場에서 販賣되는 財貨·서비스를 生産할 目的으로 設立된 企業을 말한다. 收入은 主로 生産物의 販賣로부터 얻고, 賣附金이나 讓出金에 의하지는 않는다. 生産活動 및 그 自體는 個人企業과 다르지 않지만 그 것을 所有 내지 管理하는 個人 또는 他經濟單位와는 法的으로 區別된다. 이러한 것들을 總체 묶어서 「法人」이라고 부른다.

55. 이제까지 財貨나 資產을 所有하는 能力을 經濟單位의 基本的인 屬性이라고 하는 점을 強調해 왔다. 法人의 持分은 他經濟單位 - 個人 내지 經濟實體-에 의해 所有되기 때문에 法人持分の 所有에서 나타나는 一定 樣式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 어느 種類의 法人의 行動에 影響이 있기 때문이다. 嚴密하게는 어느 經濟單位가 他單位를 所有한다고 말하는 것은 正確하지 않다. 所有權은 財貨 또는 有形 無形 金融資產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金融資產에는 法人 持分도 包含 되고 經濟單位는 他經濟單位의 持分을 갖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어느 經濟單位가 法人 持分の 50% 以上을 保有하고 있다면 그 企業의 運營을 完全히 支配할 수 있다. 다시말해 任員을 獨自로 指名하고 그것에 따라 企業의 經營에 對한 支配權과 配當의 分配을 包含한 經營方針이나 企業活動의 全圖에 對한 支配權을 確實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 있는 經濟單位는 例컨대 他企業持分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法人企業의 「實質上의 所有者」라고 말할 수 있다.

56. 法人이 他法人의 實質上의 所有者가 된다면 法人企業의 系列(Families of corporations)이 形成된다. 하나의 法人이 同時에 몇개의

서로 다른 法人의 實質上의 所有者인 것을 水平的 所有方式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形態로의 所有를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을 「轉移會社」라고 부른다. 垂直的 所有方式이란 A가 法人B의 實質上의 所有者이고 法人B는 法人C의 實質上의 所有者로 法人C는 法人D의 實質上의 所有者인 경우를 가리킨다. 實質上의 所有權은 이러한 連鎖下에 있는 各企業에 對한 完全한 支配를 保證하는 것이므로 垂直的 所有에 外에 연결되어 있는 企業團體도 水平的 所有下에 있는 集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法人企業 系列로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 實際로는 하나의 企業系列中에 水平的 所有와 垂直的 所有가 共存하는 경우가 있다.

57. 同一 集團에 屬하는 法人間의 關係는 獨立 法人끼리의 關係와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자. 例를 들면 集團內의 어느 企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財貨 서비스가 供給될때 人工的인 「轉移價格」으로 販賣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價格을 集團全體에 有利하게 되도록 設定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節稅나 其他 目的으로 利潤을 人爲的으로 操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配當水準의 發表를 故意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다. 投資決定은 企業別이 아니고 集團全體로 集中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法人企業의 系列 내지 集團에 屬하는 企業이 取하는 經營方針이나 意思決定은 대에 따라서는 同一 環境에 있는 獨立企業과는 크게 다르다. 事實 他法人에 所有되고 있는 企業은 活動이나 意思決定의 自由가 實質上 갖지 않으므로 別個의 經濟單位로서 取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58. 法人企業의 系列을 計定의 基本的 單位로 하는 데에는 有利한 點도 몇개인가 있기 때문이지만 「體系」에서는 個別 法人企業을 基本單位

로 할 것을 警告한다. 첫째로 金融行動과 貸借對原表의 分析에 있어서는 企業의 系列이 바람직한 單位 일지도 모르지만 生産活動의 分析에는 個別 企業 間이 보다 좋은 單位이다. 둘째로 작은 國家에서 法人企業은 會計 情報의 公開을 法的으로 義務化하고 있으므로 個別企業에 關한 資料는 보다 簡便히 入手可能한데 對해 企業의 系列에 對한 資料를 특히 連結시킨 形態로 入手하는 것은 困難하던가 不可能하다. 어느 경우에는 企業의 系列에 關한 充分한 會計 情報는 커녕 系列內의 全企業을 識別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셋째로 一般的인 原則부터 말하자면 連結된 資料보다는 그렇지 않은것을 入手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그렇게하면 必要한 資料를 連結 시킬 수 있는데 反해 원래의 資料가 이미 連結된 것일 경우 그것을 다시 分解하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個別企業은 그 經營方針의 一般的인 方向이 따로 定해져 있는 경우 일지라도 活動 運營에 있어서의 行動, 意思決定에 대해서는 어느 程度의 自主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一定的의 目的에 따라 法人의 系列에 對한 連結된 資料가 有益하다고 하여도 「體系」의 課目的에 關해서는 個別의 企業이 基本的 經濟單位로서 取扱된다.

法人의 所有와 支配

59.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느 法人이 다른 어느 法人보다 많은 持分을 所有하는 것으로 實質上의 所有權을 갖는다면 後者인 法人의 經營方針이나 事業의 運轉에 對해 完全한 支配가 保證된다. 그러나 持分中에 半보다 훨씬 낮은 比率밖에 保有하지 않는 경우에도 他企業에 對해 有效 支配가 保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株主의 大多數가 株式를 純粹한 金融投資 對象으로 간주하여 任員의 指名이나 企業의 經營方針에 關한 權利를 實際로는 行使하지 않는 경우이다. 事實 小規模라도 잘 組織되었거나 既定의 方針을 갖는 株主集團이 持分과는 關係없이 企業經營에 影響력을 갖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少數 株主에 對한 支配를 保證하는 要因은 다른 株主의 構成, 株式의 分布, 株主가 企業의 經營에 對해 갖고있는 關心等이다. 따라서 支配를 自動적으로 保證하는 最小의 株式保有 량을 特別히 定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것은 法人企業別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驗이 나타내는 경우에는 적어도 10%의 持分 권이 있다면 企業經營에 有效한 發言權을 確保하는데 充分할 것이다.

60. 「直接投資」 企業의 概念은 「國際收支」의 關係 가운데서 展開되어 온 것이지만 海外 投資家가 企業의 經營이나 方針에 影響력을 行使할 意圖를 갖고 株式를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通常의 경우 持分의 10%를 保有하는 경우가 그 目的에 充分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10%未滿으로 充分한 경우도 있고 10%를 超過하는 株式 取得이 必要한 경우도 事實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 물론 個人, 法人을 不同하고 어느 投資家가 法人企業의 持分 가운데 큰 比率를 取得하려고 한 경우 投資家의 關心은 通常의 變動的인 金融投資家처럼 그것을 훨씬 높가에

서 部分的일자리라도 企業經營에 影響力을 行使하도록 하는 意志가 表現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時點에서 影響力이 實質的인 支配로 바뀌어 가는지는 決定되지 않고 企業別로 서로 다른 時點에 轉입된다. 그러나 어느程度 外部의 影響力下에 있는 法人企業을 認定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持分 가운데 적어도 10%를 他法人 혹은 投資家에게 所有되어 있는 것은 모두 包含하여야 할 것이다.

81. 企業活動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影響力 또는 支配는 可能한 限 다른 것과 區別하지 않으면 안되는 2가지의 類型이 있다. 하나는 政府에 의한 支配이고 또 하나는 非居住者인 法人 혹은 非居住者인 投資家에 의한 것이다. 政府나 海外로부터의 影響·支配下에 있는 法人은 類似的 經濟環境에 있어서도 例를 들면 價格이나 投資에 關해서 普通 居住者 企業과는 다른 方策을 採用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類似的 法人이 尙상의 地位가 重要な 경우 그러한 것들을 內譯部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分析上, 政策上的 見地에서 보면 所有權보다도 支配權쪽이 重要하다. 事實 所有權은 支配權을 確保하기 위한 한 手段에 지나지 않으며 持分保有比率이 支配에 必要한 比率을 넘는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比率은 이미 기존된 比率과 같이 持分의 50%를 實現, 下回하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政府에 의해 支配되는 法人企業을 公的企業(public enterprise)이라 부르며 海外로부터의 支配에 따르는 것을 外國企業이라 부르기도 한다. 通常的 理解로는 公的法人이란 特別 法律에 의해 設立된 100% 政府出資企業을 말한다. 따라서 以下에서 使用하는 公的企業의 概念은 보다 넓은 視野로 세워놓은 것으로 公的法人을 그 一部로서 다룬다.

83. 公的企業은 經營이나 그 方針이 政府의 直接的 影響 또는 支配下에 있는 企業으로 定義된다. 支配는 持分가운데 充分히 큰 比率를 取得하는 것으로 確保할 수 있지만 그 比率는 많은 경우에 持分の 10% 내지 그 以上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代替的으로 또는 附加的으로 特정한 法律이나 規制에 의해 支配가 確保되는 것도있다. 그러한 法律이나 規制는 政府에 任員の 指名權이나 罷否權을 부여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企業의 經營이나 그 方針에 對해 直接的인 支配를 可能케 하는 것이다.

84. 마찬가지로 外國企業은 經營이나 그 方針이 非居住者 單位의 直接的인 影響이나 支配下에 있는 法人企業으로 定義된다. 그러한 非居住者 單位에는 民間個人, 民籍法人, 公的企業, 外國政府 등이 包含된다. 海外 直接投資 企業에 關한 國際收支 統計上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持分の 10% 以上の 所有가 通常 適切한 支配를 위한 手段을 確保할 것도 假定된다.

85. 위에서 되풀이 해서 言及한 바와 같이 政府나 非居住者 單位의 支配나 影響下에 있는 企業을 認定할 경우 持分の 10% 以上이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가이드라인이거나 目標이지 嚴密한 基準은 아니다. 나라에 따라서 25%라고 하는 약간 높은 數字를 選擇하는 것이 適當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50% 또는 그 以上까지 基準이 되는 數字를 높여 갈 餘蘊도 있다. 말할것도 없이 實質上의 所有權은 언제나 法人企業의 完全한 支配를 保證하는 것이지만 政府나 非居住者 單位가 다른 理由로 法人의 實質上의 所有者로 視리라고 하는 것은 充分할 것이다.

金融法人과 非金融法人

66. 一般적으로 다음 두가지의 理由 때문에 金融法人을 非金融法人과 區別할 必要가 있다.

(가) 다른 市場을 목표로 한 財貨 서비스의 生産者와는 달리 金融機關의 收入은 主要 金融去來 中 負債의 發行과 金融資産의 取得에서 생긴 財產所得으로부터 얻으며 貯蓄·서비스의 販賣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金融機關은 金融仲介者로서의 役割上 특히 資本形成을 分析하는 경우 重要하여 「體系」의 資本調達 計劃에 있어서는 別個의 것으로 取扱할 必要가 있다.

67. 以上の 理由에 의해 「體系」에서는 金融法人은 其他 法人과는 區別되며 「體系」의 主要部門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金融機關은 所有權의 法的形態에 상관없이 그 所有者로부터 언제나 分離된 經濟的 實體라고 假定되고 있다. 따라서 個人이나 通常의(非法人) 파츠너쉽이 金融仲介者로서 行動하거나 또는 保險業을 하는 경우에도 規模나 其他의 屬性과 상관없이 항상 準法人으로서 取扱한다. 金融仲介業을 運營하는 企業은 모두 政府의 檢査·監督에 따르며 政府의 規則·規制를 遵守하도록 義務지워지고 있다. 따라서 그 運營이나 去來는 必然적으로(한사람 내지 複數 所有者의 그것과는 別個의 것이 된다. 따라서 通常의 경우 留保保得과 企業所得의 引出을 區別하기 위해서 必要한 計劃 데이터는 언제나 入手可能하다. 政府가 金融仲介者로서 行動하거나 保險業을 運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理由로 公的個人을 設立하는 것이 大部分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한 活動에 從事하는 政府單位를 모두 위에서와 같은 理由로 準法人으로

로 取扱한다.

88. 「體系」에서 識別되는 金融機關의 主要類型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中央銀行

中央貨幣當局을 말한다. 通貨나 硬貨를 發行하며 그 나라의 國際準備을 保有한다. 貨幣市場이나 外國換市場에 適當의 介入함으로써 通貨의 國內의 總體的 價值維持를 圖謀하기도 한다. 그밖의 銀行은, 中央銀行에 預金을 保有한다. 또한 中央銀行은 政府의 銀行으로서도 機能을 갖고있다. 中央銀行은 各種 公的規制에 따르므로 公的法人으로서 取扱되어야 한다.

(b) 其他 貨幣機關(中央銀行 以外の 銀行) 당과수표 내지 다른 手段으로 調度可能하고 支拂手段으로서 利用可能한 要求拂預金의 形態로 主要한 負債를 갖는 경우, 法人인 銀行은 公的으로 所有되는 경우도 있고 私的으로 所有되는 경우도 있다.

(c) 其他 信用機關

金融實業 다시말해 負債의 發行과 金融資産의 取得 雙方에 屬하는 경우로 (a)(b) 以外の 모든것을 가리킨다. 負債가운데 調度可能한 要求拂預金이 큰 比率를 占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機關이 包含된다. 貯蓄銀行 消費者金融機關, 抵當權付貸出金融機關, 農業金融機關, 投資會社等 公的 또는 私的으로 所有된다.

(d) 保險機關

生命保險, 事故保險, 醫療保險, 火災保險, 其他保險을 提供하는 것을 主要業務로 하는 企業이다. 主收入은 保險料로 그 大部分은 保險技術上的 準備을 위해 使用된다. 保險技術上的 準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保險의 對象이 되고있는 위험에 對한 保險計算上的 準備, 配當附保險에 對한

準備, 未拂請求權에 對한 準備, 保險料의 負擔 等이다. 友愛團體, 社交團體 等 銀行, 公的機關等이 任意에依서의 各種 保險을 提供할 目的으로 組織된 保險制度도 獨立基金으로서 一과 別個의 經濟的 實體로서 設立되어 있다면 保險機關에 包含된다. 保險機關은 公的 또는 私的으로 所有된다.

(四) 年金基金

年金基金은 特定の 被養者 그들의 退職後의 所得確保를 爲해 設立된 獨立된 制度이다. 年金基金은 그 設立者인 雇主와 區別되는 것을 必勿히 獨立된 經濟單位로서 取扱할 수 있다. 다시말해 年金基金은 스스로의 利益을 目的으로 資本市場에서 金融去來에 従事할 수 있으며 그 自身の 負債의 資源을 갖는 獨立實體로서 設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年金制度가 운데 獨立基金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該 準備가 雇主의 準備의 一部로 되거나 雇主의 自己債務으로 投資되고 있는 것과 같은 制度는 年金基金이라 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雇主와는 獨立한 經濟的 實體가 아니기 때 문이다. 政府에 對해 重要되고 支配되는 社會保障制度 一般의 一環인 年金基金도 여기서 말하는 年金基金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非營利 機關

89. 生産活動을 行하는 法的·社會的 實體로 그 所有者인 經濟單位와는 獨立된 存在로서 法的·實質的으로 認知되고 있는 非營利機關은 法人企業과 많은 共通點을 갖는다. 그러나 財貨·서비스의 生産을 主要機能으로 할 경우지 市場에서 販賣할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點에서 法人企業과는 다르다. 產出의 大部分은 特定 經濟單位 (대부분의 경우는 機關의 所有者, 支配者)에 無償 내지 名目的 價格으로 提供된다. 產出의 大部分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않으므로 非營利機關의 目標, 組織 資金調

達方法 등은 企業의 경우와는 다르다. 生産費用을 키마하기 위한 資金源은 主로 寄附金, 讓出金 또는 其他 同一한 目的을 갖는 各種移轉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產出의 價値額에 대해서는 附隨的 販賣部分을 除하고 剩餘을 行할 必要가 있다.

70. 非營利機關은 典型的으로는 政府에 의해 所有되거나 또는 特定の 目的의 下에 設立되었다. 公式·非公式의 個人이나 法人은 團體(associations)에 의해 所有되며 資金이 供給된다. 非營利機關의 所有와 支配는 株式 其他 資本參加者의 所有에 比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法人企業과 非營利機關은 크게 다르다. 正式 法的實體로서 設立된 非營利機關이라면 設立時의 定款에 의해 所有者와 그 權利는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다. 個人이나 法人인 團體에 의해 所有·支配되는 경우 團體의 各構成員은 通常 相互間에 平等한 權利를 갖는다. 따라서 理事의 指名은 構成員에 의한 單純多數決에 의한것이 普通이다. 政府에 의해 所有 支配된 경우 政府는 理事의 指名에 關해 絕對的인 權利를 가지며 그것을 통해 非營利機關의 一般의 目標과 方針을 컨트롤 할 수 있다.

71. 非營利機關의 大部分은 그것을 所有하고 支配하는 經濟單位의 特定使命을 위해 設立되지만 第三者에게 財貨·서비스를 無償 내지 名目的 價格으로 提供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大部分은 慈善團體로 財貨·서비스의 生産보다는 오히려 資源의 再分配을 主要機能으로 한다. 이는 所有者에 의한 定額的인 讓出金보다는 社會全體로부터의 寄附에 크게 依存한다. 以下에서는 이러한 非營利機關에 대해 例를 論討한다.

個人團體所有의 非營利機關

72. 個人團體에 의해 所有·支配되는 非營利機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 있다. 즉 勞動組合, 專門技能組合, 宗教團體·結社, 크라이머 組織과 같은 消費者團體, 學術團體等, 政黨, 政治團體, 社交團體, 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團體 等이다. 이러한 非營利機關이 生産한 서비스의 大部分은 構成員에게 無償 내지 大幅의인 割引價格으로 提供된다. 그러나 利潤配分을 包含한 全額料金を 부과하는 경우도 例外的으로 存在한다. 그러나 一般적으로는 이러한 種類的 非營利機關은 主로 定期的인 憵出金, 寄附金, 會費에 依存해서 그 生産費用을 카파한다. 一部分의 構成員은 現金以外的 憵出 특히 無報酬의 勞動을 提供하는 경우도 있다.

73. 先進諸國에 있어서 非營利機關에 의해 提供되는 경우가 많은 서비스의 主要한 것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他經濟單位와의 競爭에서 構成員을 代表해서 利益, 安全, 福祉를 保護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集團利用에 適合한 社會, 文化的 내지 레크레이션, 스포츠의 便宜나 施設을 提供하는 것이다. 分例의 이것은 政府가 提供하는 集團的 서비스와 그 性格이 類似하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서비스가 社會全體가 아니고 選別된 個人集團에 提供되는 點이다. 個人의 團體를 構成하고 非營利機關을 設立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를 달으려고 個別的으로 行動하기에는 困難하고 高價이기 때문이다.

74. 經濟學上에서는 別種의 非營利機關도 認定된다. 어떠한 理由로 政府가 供給할 수 없는 地域社會 資本을 生産하기 위해 集團이 形成된다. 例를 들면 建物, 道路, 교량, 下水道, 其他 共同利用 施設을 建設, 維持하기

위해 非公式團體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團體는 法的地位를 전혀 갖지 않지만 非營利機關의 特徵을 모두 갖춘 社會的 實體로 간주해도 좋다. 이러한 非營利機關은 典型的으로 現物에 의한 讓出 즉 勞動事仕에 의한다.

企業團體所有의 非營利機關

75. 會員의 利益을 促進하고 保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商工會議所, 同業者組合, 屋舖主團 組織등을 들 수 있다. 宣傳活動, 政治的 모예活動, 情報·助官의 提供, 研究所, 檢査施設의 設置등 構成員 相互間的 利益과 便宜에 관한 活動을 한다. 個人團體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提供할 서비스는 政府가 提供하는 各種 集團의 서비스(Collective Services)와 그 性質이 비슷하다. 말할것도 없이 그러한 非營利機關은 構成員의 讓出金에 의해 資金이 供給되고 生産된 서비스는 會員에게 無償으로 個別 또는 集團의 提供된다.

政府所有의 非營利機關

76. 政府나 社會全體에 財貨·서비스를 無償 혹은 大幅의 割引價 價格으로 提供한다. 말할것도 없이 政府로부터 獨立해서 存在하는 法的 實體로 스스로의 權利를 財貨·資產을 所有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同一한 業務를 行하는 中央·地方政府의 機關과는 다르다. 政府所有의 非營利機關은 管理上의 便宜로 設立되는 것도 있지만 通常 直接的인 政治權力으로부터 自由로운 主體인 것이 妥當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設立된다. 例컨대 그러한 非營利機關은 健康, 安全性, 環境, 技術, 廣告, 藝術 등의 分野에 있어서 公的基準의 設定, 監督에 관한 것이다.

77. 政府에 의해 設定 資金供給되는 것은 勿論 政府의 統制下에 있지만 中央·地方政府의 省廳·部局과 같은 直接的 方法에 依한것은 아니다. 또한 이 點에서는 公的法人의 狀況과 비슷하다. 通常 非營利機關에 對한 政府의 統制는 一般의인 目標나 目的의 設定과 理事나 上級管理職의 指名에 限한다.

慈善組織과 救濟團體

78. 慈善組織은 앞에서 든 세가지 즉 個人團體, 法人團體, 政府에 의해 所有되는 非營利機關의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特殊한 것이다. 慈善組織은 新規 財貨·서비스를 生産하는 것이 아니고 既存資源의 再分配에 關係된다. 通常 正式 法的實體로서 設立되어 있지만 團體的 活動을 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會費나 募出금이 아니고 政府를 包含한 社會全體로부터 基金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여진 基金이나 物資는 外國居住者를 包含해서 그 機關이 適當하다고 인정한 個人 내지 經濟單位에 分配될 것이다.

獨立機關

79. 市場에서의 取賣를 目的으로 財貨·서비스를 生産하는 法的實體로 他 經濟單位에 所屬되지 않는것을 말한다. 典型的으로는 學校, 單科大學 大學校, 病院등이고 이러한 것도 教育, 醫療서비스를 거의 生産費用과 같은 價格으로 市場에 販賣·供給한다. 이는 그 目的이나 管理, 運營方法을 定하는 契約이나 定款을 갖지만 個人이나 團體, 政府, 株主등 어떠한 經濟單位에도 所有되고 있지 않다면 獨立機關으로 取扱한다. 換言하면 그 自身外에 어떠한 經濟單位도 그 所得이나 資產에 對한 請求權을 갖지 않는 것

수이다. 따라서 他 經濟單位에 對해 어떠한 所得도 가지다 주지않고 配當이나 其他 報酬을 分配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獨立機關은 稅制上의 優待措置를 받는다.

80. 獨立機關은 典型的으로는 生産費用에 가까운 價格으로 生産物을 市場에서 販賣하는 것이므로 非市場生産者인 非營利機關과는 區別된다. 事實 獨立機關은 生産活動에 수반하여 營業剩餘 또는 赤字를 發生한다. 剩餘가 生길경우 그것을 分配하는 方法을 갖지 않으므로 機關內에 그대로 留保되게 된다. 그 경우 剩餘는 當然히 有形資産이나 金融資産의 形態로 投資運用된다. 그러나 그에 對해서 個人企業, 政府등으로부터 寄附金이나 贈與를 求하고 基金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資産形成이 充分하다면 財産所得은 販賣收入과 함께 重要한 所得源이 된다. 財産所得이나 經營移轉이 充分하다면 利率을 平均費用 보다 얼마만큼 낮게 억제하는 것도 可能하다.

81. 그러므로 獨立機關의 主要한 收入源으로는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시말해 (現金과 代金等의) 販賣收入, 財産所得 및 基本財産의 寄附나 其他 類似한 取込에 依한다. 他經濟單位로부터의 經營移轉이다.

82. 여기서 다음의 것을 提案한다. 販賣收入이 生産費用의 半을 下回한다면 非市場生産者로 간주하여 非營利機關으로 다룬다. 販賣收入이 生産費用의 半보다 많은 額分을 차지할 때는 準法人으로 取扱한다. 獨立機關의 大部分은 본래 法人과 같은 行動을 하고 있으며 非市場 서비스를 提供하는 慈善組織과는 共通點을 전혀 갖지 않는다. 實業 學校, 專科大學, 大學校, 病院, 診療所등에서도 種々인 지원을 갖추고 最良의 서비스를 提

供하고 대신에 高額所得者가 아니라면 支拂할 수 없을듯한 料金を 取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料收入이 生産費用의 半을 넘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은 準法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政府經濟單位

83. 政府는 다음에 열거한 두가지 主要한 機能을 하는 特殊한 法的 實體이다. 하나는 社會全體 또는 個人의 集團이나 諸個人에 對해 特定種 類의 財貨·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移轉을 行하고 社會의 所得과 富를 再分配하는 것이다. 이 目的의 遂行上 政府는 租稅나 其他 任意義務의 移轉形態로 經濟單位에 支拂을 強制하는 權限을 有한다. 所得이나 富의 再分配 目的以外에 租稅나 義務의 移轉이 利用되는 것은 個別 消費量에 對應하는 代價를 個人에게 負擔시키는것이 困難하면가 社會의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財貨의 生産費用을 加減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다 市場에 그것은 社會全體에 供給되는 集合의 서비스이다. 具體的으로는 公共行政, 規制, 法과 秩序의 維持, 國防, 研究, 開發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서비스에 對해 個人으로 부터 利用量에 對한 費用을 徵收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이 狀況은 때로는 市場의 失敗라고 불리는 케이스의 하나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社會全體에 無償으로 提供되고 料金を 徵收하는 것이란 別途方法으로 資金이 供給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稅金에 의한 資金供給이다.

84. 그러나 市場의 失敗가 發生하지 않은 경우에는 意圖的으로 經濟·社會政策 事項으로서 몇가지의 서비스를 無償으로 供給하는 것이 있다. 例를 들면 教育, 醫療 서비스 등과 같이 個別 消費量에 基因한 料金徵收가 完

술의 가능한 것이다.

85. 社會全體 또는 그 職員에 無償으로 提供되는 서비스는 市場에서 去來되지 않으므로 一般적으로 非市場 서비스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純粹하게 名目的인 價格으로 販賣되는 財貨·서비스도 非市場財貨·非市場 서비스로서 取扱된다.

86. 政府가 立法力·執行力을 갖춘 政治的 實體로서도 特權 지위지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關心은 그 經濟的 機能으로 政府全體를 몇 種類의 다른 經濟的 實體로서 識別하는가가 主要한 問題로 된다. 大部分의 國家에서 政府의 다른 階級 혹은 階層이 갖는 影響力이나 經濟的 權限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通常 적어도 3가지의 單位가 觀察된다. 다시말해 中央政府, 地域 혹은 地方의 政府單位, 社會保障基金當局的 세 가지이다.

中央政府

87. 社會保障當局을 除外하고 權限이 經濟領域에 미치는 政府單位의 것을 말한다. 모든 居住者 經濟單位에 對한 徵稅權을 갖고 社會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集合的서비스를 供給할 責任을 진다. 國防, 外交를 包含한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것과 동시에 適切한 立法이나 規制에 의해 社會·經濟 시스템의 效率的 運行을 保證하려고 努力한다.

88. 中央政府는 大規模 또는 例外的인 經濟的 實體이지만 그것을 보다 작게 또는 보다 均質的인 單位를 分割하는 일은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해서는 안된다. 政府의 主要省廳은 巨額의 支出에 對해 責任을 지지만 政

府全體의 所得, 豫算의 制約을 받으므로 獨立의 經濟單位인듯한 形態로 責任을 지지는 않는다. 政府全體로 부터 獨立해서 그 自身의 權利 아래 財貨·資産을 所有하는 일도 없고 去來에 從事하는 일도 없다. 또한 經濟單位로서 貸借對照表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社會保障基金當局은 別體로 하고, 中央政府는 實質적으로 單一 經濟單位이다. 社會保障基金當局은 自己 所得을 갖고 支出을 行하며 負債와 資産을 保有하므로 別個의 實體로 간주한다.

89. 勿論 中央政府는 公的法人, 非營利機關을 包含한 經濟單位를 所有·支配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中央政府機關中에서 財貨·서비스의 生産을 行하는 것은 準法人으로서 다른 必要가 생기는 것도 있다.

地方政府

90. 經濟領域의 一部에만 權限이 미치는 政府單位를 말한다.(단, 社會保障基金의 地方當局은 除外한다.) 一定地域의 經濟單位에 對해서만 稅金 및 기타 賦課를 徵收하는 權限을 갖고 그 支出은 一定地域의 居住者單位에만 影響을 미친다. 地方政府는 通常 所得이나 富의 再分配에는 相關하지 않고 限定的인 서비스를 地域社會에 供給하는데 그친다. 그 대신에 中央政府에 比하여 特定個人이나 集團에 서비스를 供給하는 것도 없다.

91. 地方政府의 各單位는 別個의 法的實體로서 財貨·資産을 保有하고 스스로의 權利下에 負債나 義務를 지는것 可能하다면 別個의 經濟單位로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된다. 現實로는 그것이 地方에 固有의 賦稅를 徵收하고 支出을 行하며 財貨·서비스의 生産에 스스로 관여할 權利를 갖는다면 別個의 經濟的 實體로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地方政府가 中央

政府로부터 移轉을 受取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어디까지나 別個의 經濟單位로 取扱하는 것이 當연하다.

92. 中央政府 아래서는 그 나라의 現狀, 歷史, 地理, 人口分布, 民族構成 등에 의거 多數의 別個의 地方政府가 存在하는 경우가 있다. 聯邦制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州(State) 政府나 省(Province) 政府가 存在하고 郡이나 市나 區 그 밖에 地方自治體 別個의 地方政府單位의 權限·責任을 專屬한 別個의 權限과 責任을 갖는다. 그밖에 國家에서는 中央政府 아래 하나의 別個의 地方政府 밖에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社會保障基金

93. 社會保障의 提供은 政府의 目的의 하나이다. 그러나 社會保障基金을 管理하는 單位가 그 自身の 資產을 保有하고 負擔에 責任을 지는 경우, 바꾸어 말하자면 該政府單位와는 別個를 貸借對照表가 作成될 수 있는 경우에는 中央·地方政府와는 別個의 經濟的 實體로서 不同하다.

94. 社會保障制度, 社會的 便益을 사람들에게 供給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主要 強制的 課出金에 의해 그 資金이 供給되는 것과 같은 課制度이다. 그러한 課出金은 政府에 의해 社會全體 내지 社會의 特定部門에 對해 부과된다. 課主 내지 被課者 또는 그 雙方으로부터의 強制的 課出金을 包含하여 給付가 受益者에게 주어지는 條件은 政府에 의해 管理된다. 通常 個人의 課出金은 制度가 考案하는 程度에 어느만큼 當該個人이 拂리나져 있는가 하는 것과는 直接的인 關係는 없다.

95. 政府單位가 自身の 被課者를 對象으로 課主로서의 資格으로 設立

한 年金基金은 社會保障基金이 아닌 점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屬屬主로서 行動하는 同一 政府單位가 發行하는 證券안으로 認定되는 年金基金을 政府單位와는 別個의 經濟單位로 認定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政府所有의 準法人

95. 中央 地方政府의 省廳이나 機關의 많은곳은 財貨·서비스의 生産에 從事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準法人으로서 간주함에 따라 制度上 政府와는 別個로 다루어야 할 것이 要求된다. 個人所有의 것과 마찬가지로 法的으로는 區別이 없는 경우라도 生産者單位로서 所有者와는 別個의 經濟的 實體로 간주된다.

97. 大部分이 또는 全體가 市場에 있어서의 他經濟單位에 販賣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財貨·서비스의 生産이 그 主要業務이지만 價格이 生産費用을 カバー하는 것을 豫定할 수 있는 것일경우 政府機關은 準法人으로 보는것이 適當하다. 政府는 本來 非市場 서비스의 生産이나 所得, 富의 再分配을 主要한 機能으로 하는 單位이므로 市場에서 販賣되는 普通 財貨·서비스의 生産은 政府活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分析上으로는 또는 政策上으로도 他政府機關으로부터 準法人으로 區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 個人所有의 것과 마찬가지로 政府所有의 準法人을 識別할 수 있가 爲해서는 必要한 計定 데이터가 入手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大規模로 大衆을 對象으로 生産과 販賣를 行하는 것을 主要業務로 하는 政府機關은 거의 必要한 計定을 保有하고 있다. 營業剩餘를 豫定할 수 있는것과 同時에 企業所得의 引出을 認定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機關의 管理者는

投資등을 目的으로한 準備金으로서 豫得을 留保하는 등 剩餘의 使用에 關해 一定한 判斷을 짓는 것이 많다.

99. 以上로 政府準法人은 本質적으로 政府所有의 非營利機關과는 다른점 에 注意하여야 한다. 後者は 別個의 法的實體이지만 前者는 그렇지 않다. 前者는 市場生産에 屬하지만 後者는 그렇지 않다.

「體系」의 部門과 內譯部門

100. 「體系」의 部門과 內譯部門은 經濟全體에 關한 經濟單位의 諸集團으로 된다. 部門分割의 主要目的은 各種의 經濟單位를 서로 區別하고 그 行動을 따로따로 分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部門은 單位 그 自體의 經濟的 特質에 의해 定義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經濟行動의 差를 反映한 것으로 됨과 동시에 有用한 것이된다. 「體系」로 區別되는 部門數를 制限하는 다른 要因으로서는 各部門에 關해 必要한 데이터가 어느정도 入手可能하다고 하는 것도 重要하다. 各部門別로 모든 經濟計定을 作成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生産計定, 所得·支出計定, 資本調達計定, 貸借對照表, 調整計定의 모두이다.

101. 우선 前節에서 記述한 經濟單位의 種類를 全部 綜合해 놓는 것이 便利하므로 第1表에 나타내어 보자. 그러나 「體系」의 部門은 第1表의 經濟單位 分類과 正確하게 對應하고 있지 않다. 實際部門分割의 경우에는 適當한 再調整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體系」의 部門分割의 基礎는 單의 序號에서 記述하였다. 個人, 政府單位, 其他 法的·社會的實體라고 하는 基本的인 區別이다. 따라서 第1表의 分類가 「體系」의 部門과 內譯部門을 具體적으로 定義 說明하는 出發點이 된다.

〈表1〉

經濟單位與 主要類型

個人：

個人企業與 所有者

其他 個人

家 計：

法的・社會的實體（政府除外）

法人企業（公的，民間，國營，外國）

準法人企業

非營利機關

個人團體所有

企業團體所有

政府所有

獨立機關

政府與 諸實體

中央政府

州・地方政府單位

社會保險基金

個人部門

102. 個人部門은 모든 居住者個人 및 個人團體에 所有되던가 또는 個人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의 集合으로 定義한다. 個人은 반드시 獨立된 經濟單位는 아니므로 같은 경우 家計別로 分類된다. 따라서 「個人部門」은 居住者家計 및 個人에 所有되던가 또는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의 集合으로 定義하는 것도 可能하다.

經濟全體로 보면, 個人과 家計, 어느 것을 基本的 單位로 하는가는 問題가 되지 않지만 內譯部門의 定義에는 그 區別이 重要하게 된다.

103. 實際로는 많은 國家에서 「個人部門」가운데 非營利機關이 占하는 比率은 매우 低고 대이타의 入手가 困難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非營利機關에는 相互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個人團體가 所有·組織하는 것 뿐만 아니라 財貨·서비스를 無償 내지 名目的 價格으로 提供하는 것을 業務로 하는 非營利機關으로 政府·非居住者單位가 所有하여 資金을 供給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主로 船外로부터 教授·敎助物資를 分配하는 機關도 이에 包含된다.

104. 生産의 分析에 適合한 單位는 個人이지 家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生産에 從事하는 企業을 所有하는 것은 個人이기 때문이다. 既述한 것 과 같이 個人企業은 그 所有者와 別개의 經濟單位는 아니므로 「個人部門」을 個人 내지 家計와 個人企業의 양쪽을 모두 包含하는 것으로 說明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사람의 個人은, 例를 들면 消費者, 資金勞動者, 企業所有者 등 各種各색으로 서로 다른 資格으로 行動하는 경우가 있지만 主로 單一經濟單位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本章의 前半에서 說明하였지만 만약

個人企業이 充分한 獨自性을 갖고 所有者와 區別된다면 準法人으로 取扱한다. 이때 部門分割上 所有者는 個人部門으로, 準法人은 法人部門으로 세종계 分類된다. 「體系」에서는 金融活動을 主要務로 하는 個人企業은 주로 이와 같이 分割된 뒤에 部門分類된다.

105. 消費・金融活動의 分析을 爲해서는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個人을 家計別로 分類하는 것이 適當적이다. 또한 個人部門의 內譯分割에 있어서도 家計는 適切한 基本單位이다.

個人部門의 內譯部門

106. 個人部門의 內譯은 社會의 서로 다른 分野에 있어서의 經濟發展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設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個人部門의 內譯은 階級上에 있어서 特別 높은 優先順位를 갖는다. 「個人部門」中 內譯의 하나는 定義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個人에 所有되든가 個人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이다.

107. 따라서 個人部門은 두가지의 主要部門으로 分割된다. 家計 그대로와 個人에 所有되든가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이다. 形式的으로는 이것이 옳지만, 非營利機關이 家計와 區別될까 더불어 當初의 部門이 완전히 分割하는 것과 같은 印象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하엿듯이 非營利機關과 家計는 그 規模가 크게 다르며 특히 非營利機關에 關해서 充分한 데이터를 入手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分析上, 政策上의 意味로는 「個人部門」의 部門分割은 家計를 各種 經濟的・社會的 特徵으로부터 分類하는 것이다. 實際 다음에서 論하는 家計의 各各의 部門은 非營利機關보다도 훨씬 크며 重要하다.

108. 家計의 部門分類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優先順位를 갖는 것은 家計의 主要 所得의 種類. 즉 個人企業으로부터의 所得, 賃金所得, 其他所得에 의한 것이다. 이 內譯의 部門分類는 家計의 家長(Reference-Person)의 屬權上의 地位를 標準으로 利用함에 따라 直接的, 間接의 으로 行하는 것이 可能하다.

109. 家計所得에 關한 詳細의 入수가 可能하다면 家計는 다음 3가지의 部門으로 分類된다. 主된 所得을

- 1) 個人企業의 純營業剩餘로부터 얻는 所得
- 2) 被傭者報酬로부터 얻는 所得
- 3) 其他 所得—移轉—으로부터 얻는 所得

施設家計는 3)에 屬한다.

110. 그러나 現實의 으로는 多數의 國家에서 必要로 하는 所得 情報가 利用 可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家計의 家長(Reference-Person)의 社會的·經濟的 地位에 따라 內譯部門이 分割되어져야 할 것이다. 經濟的 見地에서 볼 때, 家長(Reference-Person)의 選定方法이 반드시 分명한 것은 아니다. 家計에서 「世帯主」로 불리는 人을 選定할 경우, 年長者가 選定되어, 家長(Reference-Person)이 經濟活動을 하지 않는 家計가 不當하게 많은 比率를 占하는 危險性이 있어 適當하지 못하다. 그래서 可能한 限 企業의 所有者인가 賃金勞動者로서 常勤(full-time) 내지 그러한 形態의 勤務處를 求職中인 者에 限할 것이다. 該當하는 人이 여럿이 있는 경우, 소득이 보다 많은 人이나 그것이 不可能하다면 年長者를 選定한다. 이렇게 해서 家長(Reference-Person)이 企業의 所有者인가 賃金勞動者인가에 따라 家計의 그룹을 나누어, 다시 밑에 內譯部門中

2개가 認定된다. 나머지 하나는 常勤 被傭者나 그러한 形態의 就職處를 求職中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家計이다.

111. 그러므로 家計는 家長(Reference-Person)의 經濟活動에 따라 다음의 3가지 內譯部門으로 分類된다.

家長(Reference-Person)이

- 1) 個人企業의 所有者인 家計(自己消費目的으로 生産을 하는 家計 包含)
- 2) 被傭者인 家計
- 3) 常勤被傭者가 아니거나, 常勤形態에서의 雇傭을 目的으로 求職中도 아닌 家計

施設家計는 3)에 包含시킨다.

112. 위에서 記述한 2가지의 代替的 分類方法은 現實으로 相互間에 매우 類似한 結果를 發生시킬 것이다.

113. 開發途上國에서는 經濟의 公式部門과 非公式部門을 區別하여 「體系」를 따라 可能的 限 區別하는 것이 重要하다. 實際로 公式 및 非公式 生産活動의 區別은 主로 「個人部門」의 經濟單位로 適用되도록한 區別이라고 여겨진다. 그 理由는, (準法人을 包含해서) 法人과 政府單位는 전부 公式部門에 屬하는 것으로 取扱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區別은 家計와는 달리 個人企業과 非營利機關에 主로 適用된다. 이러한 非營利機關은 共同 利用目的의 道路나 建物の 建設 등 共同活動에 從事하는 非公式의 個人團體를 말한다.

114. 家計는 生産面에서 보면 均質的인 經濟單位라고는 할 수 있다. 왜

나하면 家計는 서로 다른 種類의 生産을 行하며, 서로 다른 層面上의 地位을 갖는 個人의 集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計를 基本單位로 할 경우, 특히 家長(Reference-Person)만의 特徵을 家計分類의 基準로 할 경우, 公式·非公式 部門을 明瞭하게 區別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主收入을 非公式的인 生産에 의지한다고 推定되는 家計를 其他와 區別할 수 있도록 分類하는 것은 可能할 것이다.

115. 實際로 이러한 種類의 區別은 家長(Reference-Person)이 個人企業 所有者인 家計에 適用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個人企業의 所有者는 다음의 條件 中에서 全部 또는 一部가 滿足되어야만 非公式的인 生産에 從事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1) 所有者가 自己計定的 活動(典型的으로는 自給生産)에 從事할 때
- 2) 個人企業이 有給 被傭者를 갖지 않을 때
- 3) 個人企業이 勞動集約的이고 建物·設備 等의 物的 資本이 比較的 적을 때
- 4) 所有者가 熟練勞動을 提供하는 專門 職業人이 아닐 때

116. 一般적으로 有效한 非公式企業의 正確한 定義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上記의 條件中 3개 以上이 同時에 滿足된다면 用語의 一般的인 意味에 따라 企業을 非公式的인 것으로 取扱해도 된다.

117. 非營利機關—現在の 態樣에서는 集會의 消費를 目的으로 共同生産을 行하는 非公式的인 個人團體—는 다음과 같은 경우 非公式 個人團體도 다 된다. 즉, 生産에 使用되는 勞動이나 原材料가 團體의 멤버에 의해 任意로 供給되는 경우이다.

118. 따라서 公式·非公式의 區分이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國家에서는 公式企業 所有者를 非公式企業과 區別하기 爲해 「個人部門」에, 더욱 詳細한 內譯部門을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具體적으로는 家長(Reference-Person)이 個人企業 所有者인 家計로 된 內譯部門을 더욱 分類하여 놓을 必要가 있다. 그러나 이 區別은 「體系」의 全 計定을 適해 行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個人所有者이며 또한 個人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도 資料가 許諾하는 限, 同一하게 分類되어야 할 것이다.

119. 그러나 앞에서 이미 記述하였듯이 「體系」에서는, 특히 「社會會計 行列(Social accounting matrices)」의 作成이 計劃될 경우, 上記 以外에도 家計를 分類하는 方法이 提案되고 있다. 따라서 以下에서 「體系」에서 쓰여지는 代替的인 分類 및 가치를 說明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上記의 것보다 優先順位에 있어서 뒤질리는 없다는 점에 注意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經濟環境과 分析이나 政策設定에 必要한 情報의 種類에 따라, 나 라별로 優先順位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20. 우선, 公式·非公式인 生産活動에 의한 것과는 別途의 內譯部門 分類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에서는 家長(Reference-Person)이 個人企業의 所有者인 家計를 오히려 農業活動에 從事하는가 非 農業活動에 從事하는가로 區別하는 편이 有益하거나 現實的인 것이다.

121. 다음으로, 種의 別개의 屬性이나 特徵을 基準으로 部門分割을 行하는 것도 可能하다. 例컨대 家長(Reference-Person)이 받은 公式的 教育이나 訓練의 水準에 따라 分類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無教育, 初等教育, 中等教育, 高等教育의 3~4개의 水準으로 區分하는 것이다. 또하나의 다른 分類基準으로 家計의 地理的 位置가 있다. 이는 政策目的으로 重要하

다.

122. 地理的 位置에 따라 家計를 分類할 경우, 다음의 세가지 內譯部
門을 設定하는 것이 有效하다.

- 1) 田園部
- 2) 大都市圈을 除한 都市部
- 3) 一定以上の 人口을 갖는 大都市圈

대안가지로 總所得을 基礎로 家計를 나열하여 대서로 同規模인 3~4개
의 內譯分類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23. 國家별로 經濟構造나 發展段階는 서로 다르므로 分析上, 政策上의
必要에 差異가 있고 內譯部門의 設定도 이러한 것에 依存해서 決定되지 않
으면 안된다. 따라서 一般적으로 有效한 優先順位를 設定하는 것은 困難하
다. 또한 短期的으로는 內譯部門의 識別可能性을 데이터의 入手 可能性에 의
해 制約을 받지만, 「體系」에서는 데이터의 蒐集 절차를 開發해 가는 方
向에 對해서도 各國에 가이드라인을 提供하고 있다. 「體系」의 界의 몇
부분 例를 들면, 投入·產出表에서 매우 詳細한 部門分類이 必要하다고 하
는 것은 一正確하게 어느 程度 詳細한가 하는 것은 計定 作成者의 判斷
이나 利用目的에 달려있다고 해도 一 廣範하게 承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
늘날에는 「個人部門」에서도 더욱 詳細화된 內譯部門 分類가 必要한 경,
보다 正確하게는 그 中에서도 家計에 對한 그것이 必要하다는데 대해 一
層 廣範하게 承認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具體적인 分類의 程度
는 計定作成者가 가진 資源이나 利用者の 優先順位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法人部門

124. 「體系」에는 2개의 法人部門이 있다. 그것은 非金融法人部門과 金融法人部門이다. 金融法人은 非金融法人과 區別해서 「個人部門」, 「政府部門」과 나란히 經濟의 主要 4部門의 하나로 取扱한다. 그것은 첫째로는 金融法人이 經濟 가운데에서도 獨自의 重要性을 가지며 特殊한 役割을 맡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金融法人의 生産過程이 갖는 獨自의인 性質때문이기도 하다.

125. 두가지 法人部門을 보다 詳細하게 檢討하기 爲에 準法人의 取扱을 分別하게 考察한다. 準法人은 例컨대 그 性格이 特殊한 것이라도 「體系」에서는 他法人에 비해 그다지 特別한 取扱을 맡지는 않는다. 一稱 準法人이라고 認知되면 「體系」에서는 一貫해서 法人으로서 다루어지며 「體系」의 部門分類·內課部門分類에 있어서 準法人과 法人과의 區別은 전혀 없다. 準法人은 法的으로는 所有者와 獨立 單位는 아닌 것으로, 經營者는 充分한 獨立性 아래 法人과 同一하게 行動하는 것이라고 여기지고 있다.

126. 「體系」에서는 金融活動을 主要業務로 하는 個人企業이나 政府單位는 모두 準法人이라고 여긴다. 그 理由는 管轄 公共當局서 監督, 監査, 規制, 統制를 받으므로 그 活動이나 計定은 항상 所有者와 確實이 區別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에 従事하는 企業은 所有의 法的 形態에 關係없이 「體系」에서는 모두 「金融法人部門」으로 分類된다. 그것은 法人化되어 있지 않은 準法人이라고 여기지기 때문이다.

非金融法人部門

127. 모든 居住者非金融法人·準法人企業. 法人團體所有 또는 法人에 奉仕

하는 非營利機關으로 이루어진다.

128. 非金融法人部門의 內譯部門分類는 法人 自體의 性質은 아니고, 法人을 統制하는 經濟單位의 特徵에 根據해서 行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2가지의 基準이 있다.

129. 그 첫째는 民間法人과 公的企業의 區別이고 또 하나는 國內企業과 外國企業의 區別이다. 이것을 區別하는 基準에 對해서는 本章에서 이미 詳述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反復하지 않는다. 民間企業과 公的企業의 區別은 單純히 公的 所有인 企業뿐만 아니라 상당한 程度로 政府의 直接的 支配下에 있음을 識別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國內企業과 外國企業의 區別은 상당한 程度 非居住者의 直接的 支配下에 있는 것을 識別함을 目的으로 한다. 持分の 50% 以上을 所有한다면 完全한 支配가 自動적으로 確保되지만 持分の 훨씬 작은 比率를 所有할지라도 通常 支配는 確保된다. 더구나 政府는 法人의 持分の 一部 내지 全部를 所有할 뿐만 아니라 特殊한 法規, 規制, 命令 등에 의해 支配를 強化할 수 있다.

130. 民間企業과 公的企業을 區別하는 권이 重要한 나라도 있고, 또한 國內企業과 外國企業을 區別하는 권이 보다 重要한 나라도 있다. 特定國의 經濟環境 如何를 不同하고 先驗적으로 어느쪽인가 一方이 다른 권에 優先한다고 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여기서도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法人을 두가지 屬性을 利用해서 크로스分類하였다고 하여도 4개의 分類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가지 分類만 얻을 수 있다는 데에 注意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公的企業에는 國內과 外國의 區別은 無意味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2가지 區別을 同時에 適用한다면 다음 3가지 內

譯部門을 얻을 수 있다.

- 1) 公的企業
- 2) 國內民間企業
- 3) 外國企業

法人團體所有 또는 法人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은 2)에 包含된다.

金融法人部門

131. 모든 居住者金融法人·準法人으로 이루어진다. 金融法人과 非金融法人의 區別은 主要 業務의 性質 差에 基因한다. 金融活動은 ISIC分類에 包含되는 그에 關한 모든 것을 가리키므로 狹義의 金融活動 뿐만 아니라 保險活動까지 包含한다.

132. 「金融部門」의 內譯部門分類는 「非金融法人部門」과는 對照的으로, 法人을 支配하는 經濟單位의 特徵은 아니고 實行된 活動의 類型에 根據한다. 그것은 本質的으로 主要 活動을 基礎로 하고 ISIC를 使用한 「金融法人」의 內譯部門分類이다.

133. 「體系」에서는 「金融法人部門」은 5개의 內譯部門으로 分類된다. 이는 前章에서 詳述한 것으로 反復해서 定義를 記述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中央銀行
- 2) 其他 貨幣機關
- 3) 其他 信用機關
- 4) 保險法人
- 5) 年金基金

134. 물론 公的企業과 民間企業 및 國內企業과 外國企業의 區別, 다시 말해, 誰의 所有과 支配形態를 考慮하는 것으로 上記의 內譯部門을 細分類하는 것도 可能할 것이다. 이는 1)을 除外한 모든 것에 適用可能하여 意味가 있다. 그러나 中央銀行은 恒常 公的企業이므로 그 範圍에 들지는 않는다. 그 以外는 非金融法人과 同一한 分類法에 처거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1) 公的金融法人
- 2) 國內民間金融法人
- 3) 外國金融法人

135. 實態로는 「金融部門을 13개의 內譯部門으로 分割하는 것이 現實의 인가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가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2~3개의 작은 國家에서는 一國의 規模에 比하면 어슬러지 않을 정도로 「金融部門」이 重要性을 갖는 경우도 있다. 또한 他 生産部門에 比해 보다 詳細한 統計가 利用可能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內譯部門 分割의 詳細함은 政策目的이나 經濟構造에 맞추어서 最終적으로는 各國의 裁量에 맡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政府部門

136. 모든 政府單位, 社會保障基金, 政府所有이거나 政府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으로 이루어진다. 단, 政府所有의 準法人은 이에 包含되지 않는다. 그것은 非金融法人部門 또는 金融法人部門의 어느 쪽인가에 分類된다.

137. 「一般政府部門」은 中央政府 以下の 水準인 政府組織에 對해서 3~4개의 內譯部門으로 分類된다. 또한 社會保障基金 以外の 政府單位는 그

權限과 權能이 미치는 地理的 領域의 크기에 따라 內譯部門으로 나누어진
다. 一般政府의 4가지 內譯部門은 아래와 같다.

- 1) 中央政府
- 2) 州政府 또는 省政府
- 3) 地方政府
- 4) 社會保障基金

138. 本章 가운데에서 이미 記述한 적이 있지만, 「中央政府」內譯部門은
單一 單位인 中央政府단으로 구성된다. 全經濟領域에 課稅權을 가지며 그 支
출은 領域內의 全經濟單位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미친다.

139. 「地方政府部門」은 權限과 權能이 미치는 範圍가 政治上의 目的에
따라 區別되는 最小의 地理的 領域으로 限定되는 政府主體로 이루어진다.
例컨대, 郡, 大都市區, 都市區, 市·道 等이다. 通常 地方政府單位들 전부
하면 全經濟領域에 걸치며 重複은 생기지 않는다.

140. 어느 나라에서는 別途로 中間水準의 政府單位가 있으며 地方政府單
位 集團에 對해서 一部 經濟領域에 限定되는 權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나라의 憲法에 따라 州政府, 省政府 등으로 불린다. 中間層의
政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綜合해서 「體系」內의 別個의 部門
으로 다룰 것을 勸한다. 그렇지 않으면 (社會保障基金 外에) 中央政府과 地
方政府를 區別하는 것만으로 充分하다.

141. 注意하여야 할 點은, 各內譯部門內의 構成要素인 單位는 결국 真正
한 經濟單位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點이다. 卽, 스스로의 權利下에 財·
貨產을 所有하며 負債를 負擔하거나 貨幣을 發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課稅權을 가지며 스스로의 資金으로 支出의 種類나 金額을 決定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中央政府는 地域單位에서도 몇개의 機關이나 官廳을 維持하고 있지만 各 機關·官廳은 政治的 權限에 關係없이 金融的 또는 經濟的 意味에서 自主性을 갖고 있지 않다면 個別經濟單位라고는 할 수 없다.

142. 前章에서 既述한대로 「社會保障基金」內課部門은 單一單位인 社會保障基金안으로 구성된다. 政府所有이거나 政府에 奉仕하는 非營利機關은 그것을 所有하는 政府單位와 同一한 內課部門으로 分類한다.

「體系」에 있어서의 部門과 內課部門

要 約

I. 個人部門

家計

家長(Reference-Person)이

- 1) 個人企業所有者이고
 - 1) 公式 生産活動에 從事하는 家計
 - 2) 非公式 生産活動에 從事하는 家計
- 2) 支拂 받는 被養者인 家計
- 3) 其他
- 4) 對家計非營利機關

II. 非金融法人部門

- 1) 公的企業
- 2) 國內民間企業

3) 外國企業

Ⅲ. 金融法人部門

1) 中央銀行

2) 其他貨幣機構

3) 其他 信用機關

4) 保險法人

5) 年金基金

Ⅳ. 一般政府部門

1) 中央政府

2) 州 區 省 政府

3) 地方政府

4) 社會保障基金

第3章 生産計定

序 論

1. 이 章에서는 「體系」에서 使用되는 生産計定에 대하여 論議한다.
먼저 生産의 범위를 定義한다. 즉, 「體系」가 生産的이라고 간주한 活動과 生産的이 아니라고 간주한 活動의 差異를 說明한다.
다음에 生産計定을 構成하는 財貨·서비스의 2개의 主要한 要素 즉, 產出과 中間投入에 대하여 論議한다.
마지막으로 代替的 評價方法과 生産計定에 있어서 均價項目으로서의 附加價値의 性質에 대하여 論議한다.

2. 生産計定은 財貨와 서비스가 生産되는 活動과 過程에 關聯된 現實의 去來 또는 歸屬되는 去來를 記錄한다.

計定에서 記錄되는 것은 物理的 過程 그 自體와는 區別되는 것으로서의 去來라고하는 事實을 強調할 必要가 있다. 이는 經濟的 意味에 있어서 生産의 概念과 生産過程에서의 投入 및 生産過程에서 얻어진 產出을 대상으로 市場이 存在한다는 것 間의 密接한 關係를 밝히는 것도 된다.

실제 生産過程으로부터 얻어진 產出은 항상 다른 經濟單位間的 去來對象이 될 수 있는 財貨와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體系」에 있어서 財貨와 서비스의 意味을 분명히 하는 것이 本章의 최우선 目標이다.

3. 財貨는 需要가 存在하며, 그에 대한 所有權이 確立될 수 있는 有形物이다.

財貨의 所有權은 다른 經濟單位間的 去來로 交換될 수 있고 市場은 그러한 去來를 促進하기 위하여 組織된다. 注意해야할 것은 하나의 財貨가

創造되는 物理的 過程인 財貨의 生産活動과 그 후 市場에서 그 財
貨가 交換되는 活動은 전혀 별개의 活動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財貨가 生産될 때에는 生産者は 그것이 向後 어떠한 條件으로 交
換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交換되는 條件구조와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4. 서비스의 去來는 반드시 所有權이 交換에 關係되지 않는다는 것이 財
貨의 去來와 根本적으로 그 性質이 다르다.

서비스의 경우 經濟單位間의 相互作用은 전혀 다른 形態를 취한다. 즉,
하나의 經濟單位는 生産活動 그 自體가 다른 經濟單位의 直接的인 便益이
되는 것과 같은 一定한 生産活動에 從事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財貨의 生
産인 경우에 強調된 生産過程과 그 後의 交換과의 分離는 서비스의 경우
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價値는 그 生産에 不可缺한 構成要素이다.

生産者は 消費者單位가 所有하고 있는 任意의 財貨를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서의 消費者單位에 대한 狀態에 어떠한 改善을 기하기 위하여 勞動을
제공하며, 供給된 서비스의 量은 實現된 改善의 程度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財貨에 대한 것보다 物理的 單位로 실제서비스 產出을
計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훨씬 곤란한 것이다.

5. 서비스는 2개의 主要한 種類가 있다. 第一形態의 서비스는 消費者가
所有하는 財貨의 狀態에 生産者가 일미간의 改善를 實現한다고 하는 것이
이다. 바꾸어 말하면, 生産者는 기존의 다른 經濟單位가 所有하고 있는 財貨
의 價値를 增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輸送, 修理, 清掃,
保養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生産은 종종 처음에 언급한 財貨의 生産인
경우와 다른 점이 있으며, 物理的인 變換過程을 포함한다. 따라서 財貨의 生
産과 서비스의 區別은 生産에 사용되는 技術에 基因하는 것은 아니다.

6. 第二形態의 서비스는 生産者가 1個人 또는 人의 狀態와 條件에 依한 改善을 期하는 것이다. 이 改善은 어떤 種류의 物的 變化라는 形態를 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醫科 또는 食料生産, 理髮, 旅客 輸送 等이다. 또한 改善은 非物的일지도 모른다. 非物的 改善의 경우 서비스는 多量한 形態를 취하지만, 때때로 서비스의 受惠者 또는 消費者가 行動하기도 하고 意思決定을 행하기도 하므로, 以前 보다도 훨씬 有利하게 되는 듯한 情報提供이라는 形態를 취한다.

提供된 情報은 教育과 訓練의 경우 처럼 一般의인 性質의 것인 경우도 있고, 또한 消費者의 特定狀況에 대한 것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消費者는 專門家의 特別한 知識으로부터 利益을 얻기 위하여 그 어드바이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7. 하나의 生産過程이 人間的 集團에 대하여 同時에 서비스를 提供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人間的 集團은 같은 비행기, 선박, 列車, 그 外의 교통수단으로 輸送될 것이다. 또한 인간은 동일한 수업, 講義 또는 公演에 참가하기도 하고 行하기도 하며, 집단으로 教育받기도 하고 즐기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人間的 集團에 同時에 提供되지만, 集團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명도로 구별할 수 있고 받은 서비스의 對價를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의 서비스는 社會全體에 供給되어 個人의 消費行動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비스를 集合의서비스라 한다. 이 集合의서비스는 本質적으로 岳秩序의 維持, 그리고 個人과 그 財産을 保護, 도난, 방 오일 등의 위험으로부터 防禦하는 것이다. 集合의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國家가 供給하며 課稅를 통하여 支拂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消費行動을 觀察,

記錄하고 料金徵收의 基準을 잡는 것이 困難하거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중 어떤 것은 非營利機關이 供給할지도 모른다. 그 경우 會員의 捐附과 會費에서 支拂된다. 集合의 서비스의 特徵은 다음 단락에서 상세하게 論한다. 集合의 서비스는 市場에서 賣買되지 않으므로 그 價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서비스의 產出은 그 生産費用에 의해 評價될 수 밖에 없다.

8. 위에서 언급한 財貨와 서비스에 共通되는 本質的인 特徵은 그것을 消費하는 經濟單位와는 다른 經濟單位에 의해 進行되는 生産過程에서 그것이 生産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특히 어느 特定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에 轉化하는 것이 가능한 經濟單位의 出現을 說明하는 이유이다. 또한 그것은 經濟的意味에서 生産的인 活動과 其他 活動의 區別을 可能케 한다.

실제 아무리 必要不可缺하게 要求되는 것이라 해도 다른 單位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生産의 이치 않다. 後者は 食事, 수면, 運動, 게임놀이 등 같이 사람을 고용하여 본인대신에 行動을 받아줄일 수가 없고, 따라서 專門의 生産者에 의해 市場에 이므로 供給되지 않는 特정한 基本的인 人間活動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러한 活動은 表面的으로는 調理와 洗濯 및 연도와 같이 他人이 行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種類의 活動은 本質的으로 상호간에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個人과 經濟單位자신의 行動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經濟單位를 고용할 수 없는 活動이 存在한다고 하는 事實에 기인한 生産의 限界가 있다. 이러한 活動은 專門의 生産者가 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市場에 이므로 組織될 수 없다.

「體系」에 있어서 生産의 범위

10. 그러나 體系 내에서 使用되는 生産의 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本質的, 理論的인 범위보다 훨씬 좁다.

實際 家計 내에서 自家消費을 위하여 生産하는 家事서비스와 個人서비스 전 부 生産에서 排除되어 있으므로, GDP에서도 除外된다. 한편 家計 내에서의 自家消費을 위한 財貨의 生産과 資本形成을 生産으로서 「體系」에 포함된다. 自家消費을 위한 家計서비스의 生産은 國民經濟計定的 초기시장부 더 당시 生産에서 除外되어 왔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약간 說明할 價値가 있다.

11. 먼저 除外된 서비스의 種類를 特定化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가) 家計에 의해 占有되고 있는 住居의 清掃, 修理, 裝飾, 자기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行하는 修理는 除外

(나) 家計의 目的에 使用하는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家計소유의 耐久財 및 其他 家財의 清掃, 修理, 維持

(다) 食事의 調理과 봉사

(라) 어린이육아, 訓練, 教育

(리) 病者, 產婦者, 老人의 양호

(로) 家計소유 교통수단을 사용한 家計구성원과 財貨의 輸送

12. 以上은 전부 基本的인 經濟的 意味로 前節에서 說明한 것처럼 분명히 生産의 活動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生産하기 위한 家事使用人, 요리사, 家庭教師, 간호부, 운전사 등 他人에게 給料을 支拂하며 고용하고 있는 家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열거한 서비스는 價行

上 「體系」에서는 生産에서 除外된다.

13.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상당한 量의 勞動은 이러한 家事, 個人서비스의 生産에 消費되며, 한편 이러한 서비스의 消費는 經濟厚生에 重要な 貢獻을 하고 있다. 따라서 國民計定의 唯一 또는 重要な 目的이 經濟厚生에 대한 集計量의 水準과 變化를 計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서비스의 價値額을 歸屬하고 計定에 포함하는 有力한 論據가 될 것이다.

그러나 「體系」는 하나 혹은 둘을 택하여 集計量의 水準과 成長을 計測하는 目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家事서비스의 價値額을 歸屬하고, 「體系」의 全體를 構成하는 상세한 計定과 附表的 행렬방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그 歸屬을 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있다.

14. 厚生の 計測에 대한 家庭內의 모든 서비스의 重要性이 問題인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그러한 서비스는 상당히 重要하고 그러한 것을 「體系」속에 포함하는 때에는 理論적으로 충분히 만족할만한 여러방법으로 實行하는 것이 技術적으로 지극히 困難한 大規模의인 歸屬을 必要로 한다.

歸屬의 規模는 「體系」내에 이미 存在하고 있는 歸屬의 規模를 주어진 것으로 하고 貨幣單位와 歸屬單位^{*}間에 「體系」의 균형을 크게 歸屬單位의 例으로 기우는 것이 最善하다.

貨幣單位와 歸屬單位를 거의 동일한 크기로 混合한 데이터에 대한 分析上의 有益性이 問題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家計의 自己計定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家計의 所得·支出計定의 兩側에 貨幣單位에 附加된 형태로 大規模의인 歸屬을 必要로 한다. 그러나 歸屬所得의 經濟的 重要性은 貨幣로서 나타나는 것의 經濟的 重要性과 전혀 다르다. 즉, 歸屬所得은 貯蓄되어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歸屬支出에 對應하는 特定文

出에 全面的으로 當당되는 것이다.

15. 國民計定은 다양한 目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貨幣로
트루와 함께 상당히 大規模의인 歸屬로트루를 그 속에 포함하는 것이 巨
觀經濟모델의 作試, 計劃, 豫測, 政策志向 等의의 經濟分析이라는 國民計定 大
部分의 目的에 맞고 데이터의 有益性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國民計定을 작성하는 主要한 理由中 하나는 貨幣로트루가 支配的인 市場
의 機能 또는 機能不全을 研究하는 것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과 失業이라는 問題는 本質的으로는 市場不均衡의 징후이다. 거기서 그러한
問題의 分析에는 未來에 관한 데이터를 必要로 한다. 따라서 現行의 慣行
에 포함되지 않는 大規模의인 歸屬를 「體系」에 포함시키는 것은 國民計
定이 現在 사용되고 있는 大部分의 目的에 대하여 데이터의 有益性을 상
당히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16. 그 外의 서비스는 財貨와 동일한 것처럼 취급할 必然性이 없다.
그러나 家計內서비스의 自己計定生産은 財貨의 自己計定生産보다도 市場과
經濟의 其他 部分에서 分離, 獨立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財貨의 消費에 關한 意思決定은 財貨의 生産에 關
한 意思決定과 분리되어, 消費가 行하여질 環境을 考慮하여 行하여지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서비스의 경우에는 2가지 意思決定은 하나로 융합되
고 있다. 예를 들면, 農産物을 收購할 때 生産者는 어느만큼의 量을 消費
하고 얼마만큼의 量을 저장하고 얼마만큼을 物物交換用으로 전용하기도 하
고 市場에서 販賣할여를 選擇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選擇은 自己計定서비스 生産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家計內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生産되어도 自動的으로 消費되기 때문에 家計

內的 消費에 관한 意思決定은 生産에 관한 意思決定과 同時에 일어난다. 自家消費을 위해 生産하는 家計서비스의 供給은 항상 그 需要와 均衡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需要하는 것 보다 많게 또는 적게 生産하는 것은 不均衡하기 때문이다. 家計內에서 消費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生産하는 것을 결정한 순간에 그것을 市場에 내놓을 意圖과 可能性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家計內서비스의 生産은 分析上, 政策上 견지에서 그다지 興味깊은 것은 아니다.

17. 이러한 家計內서비스의 自己計定을 生産에서 除外하는 것은 便宜上 또는 간소화를 위한 恣意的인 慣行이 아니라 이러한 活動이 經濟內에서 相對적으로 獨立된 것임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產出物이 어떠한 市場에 대해서도 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生産過程에서 貨幣所得은 發生하지 않는다.

이러 價값이 歸屬이 생하여지기 때문이라면 發生한 所得은 對應하는 支出에 결부된다. 歸屬所得의 受領者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또는 사용하지 아닐지조차 選擇할 수 없다. 家計內 自己計定生産에 의해 發生한 所得은 經濟의 其他 部分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 다른 한편 供給被領者에 의한 家事서비스, 家計內서비스의 生産은 「體系」의 生産範圍內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市場去來가 이루어져 있고, 經濟의 어느다른 部分에 영향을 미치는 貨幣所得이 發生하기 때문이다. 실제 一般적으로 利用되는 生産要素에 報酬가 支拂되는 모든 生産過程은 비록 自己利用서비스의 生産過程에 귀속된다 해도 生産範圍內에 포함될 뿐이다. 이 基準에 따라 政府單位와 非營利機關에 의한 集會서비스 전부는 生産범위 內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理由에

서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그것이 政府과 非營利機關에 의해 支拂된다고 해도 生産된 서비스는 自家消費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經濟單位에 供給되기 때문이다.

19. 「體系」속의 生産에 대한 價値의 위치에 대하여 이런 一般的인 結論은 以上の 論議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要約되어 있다.

20. 「體系」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生産을 生産範圍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a) 貨幣로 支拂되거나 支拂되지 않아도 實際 다른 經濟單位에 인도된 모든 財貨·서비스의 生産

(b) 生産자가 自己使用을 위하여 留保하고 있지만 市場에서 다른 經濟單位에 提供하는 것도 可能的인 財貨의 生産

(c) 生産자에 의해 生産된 生産要素에 報酬가 支拂된 生産過程에 의해 自家消費을 위한 서비스의 生産

21. 바꾸어말하면, 「體系」는 다른 經濟單位에 所得을 發生시키지 않는 自家消費을 위한 서비스生産은 生産範圍內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實際問題로서 이러한 서비스는 家計內의 구성원에 의해 同一 家計內에서 消費하기 위하여 生産되며 家事서비스·個人서비스인 것과 활동에 차이가 없다.

22. 以上の 가이드라인은 「體系」에서 사용되는 生産價値의 基礎가 되는 一般的인 原則을 說明하는 것을 意圖하고 있다. 그것은 例外를 인정하지 않는 硬直的인 法則으로서 취급될 것은 아니다. 특히 아래에서 충분히 說明할 것이지만 特定 經濟內에서 自己利用을 위하여 生産되는 어느 財

費·서비스의 물이 완전히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推定하려고 하는 價値는 없다.

23. 결국 「體系」는 家計內부의 自家消費을 위해 生産된 서비스의 產出에 대한 價値額의 歸屬을 必要로 하지 않지만, 이것은 그러한 活動이 前項에서 說明된 것 보다 根本的인 經濟的意味에 있어서 生産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그 理由 때문에 經濟厚生의 보다 包括的인 指標을 얻을 目的으로 「體系」의 外側에 그러한 서비스의 價値額을 推定하려고 하는 것은 適切할 것이다. 이러한 增幅된 範圍는 「體系」의 기초가 되는 原則에 모순 또는 對立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家計內 生産의 범위

24. 前項에서 家計內에서 自家消費을 위해 生産된 財貨·서비스를 算入할 것인가 除外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一般原則은 說明하였지만, 特定種類의 家計活動의 처리에 관해 보다 상세한 指針을 제시하는 것이 適切할 것이다. 특히 어느 活動이 財貨의 生産, 혹은 서비스의 生産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5. 첫째로 住宅所有者에 의한 住宅서비스의 自己計定生産은 國民經濟計定에서는 生産범위의 內側에 항상 포함되어 왔다. 原則적으로 이것은 生産에 있어서 상당한 量의 資本(住宅)을 消費하는 個人企業의 所有者에 의해 행해지는 生産過程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家計內에서 生産되고 있는 通常의 家事·個人서비스와는 根本적으로 전혀 다르다.

所有者 占有住宅의 賃貸住宅에 대한 比率는 國家에 따라 상당히 幅幅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같은 國家에서도 비교적 短期間 동안에 상당

이 큰 變化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住宅서비스를 自己決定生産에 關係시키지 않으면, 住宅서비스의 生産과 消費의 國際的 時間的 比較에 심각한 困難을 야기시킬 것이다.

26. 둘째로 前面에서 說明한 것처럼 「體系」는 個人에 의한 모든 財貨의 生産을 生産範圍內에 포함한다. 그 理由는 生産이 發生될 때 生産된 財貨를 市場에 내놓을 것인가 자신이 使用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比率로 그러한 것들에 相當할 것인가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生産者가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기계구성원의 自家消費에 相當된 다음 형태의 生産은 전부 포함되어 있다.

(A) 作物의 栽培를 포함하는 農産物生産, 말기류와 그 外의 野生作物의 採集, 林業, 木材伐採와 벌집의 收集 狩獵業과 漁業

(B) 岩鹽의 採掘, 토탄의 採掘, 물의 蒸餾과 같은 其他 第一次生産物의 生産

(C) 農作物의 加工, 다시말해 脫穀과 製粉, 家畜의 屠殺, 모피의 加工, 肉製品과 魚肉製品의 生産과 保存, 버터, 치즈 등과 같은 乳製品의 生産 맥주, 啤飮, 알콜類의 生産, 脂肪種子의 압착, 미구니와 꽃자리를 짜는것 等

(D) 其他種類의 加工, 예를 짜는것, 婦人·아동복과 양복만들기, 신발류의 生産, 陶器·家庭用品·耐久財의 生産, 家具 및 버지家具의 製作 等

27. 포함되어야 하는 活動 전부를 완전히 망라한 목록을 作成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결국 위 목적은 「體系」가 生産範圍內에 포함되고, 自家消費을 위해 個人에 의해 發生되는 가장 보편적인 種類의 生産的 活動을 나다니는 것만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28. 住居와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家計用耐久財의 修理와 維持는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사이의 경제선상에 위치한다. 「體系」에서 採用된 原則은 功상의 修理와 維持는 새로운 財貨가 製造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生産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家計구성원에게 의한 住居와 家計用耐久財의 修理와 維持는 生産範圍의 外側에 위치한다. 단, 所有者에 의한 住宅서비스의 生産을 위한 投入物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의 占有者에 의해 행해지는 修理와 維持는 例外이다. 대부분의 이른바 “DIY (Do it yourself, 自作木工)” 活動이 除外된다. 이러한 活動을 위해 구입하는 小工具, 機械적지과 같은 材料는 家計의 最終消費支出로서 취급된다.

29. 이 후 뒤쪽에서 보다 상세하게 說明하는 것처럼 修理와 維持는 資本財가 계획된 目的을 위해 계속 사용되는 것과같은 狀態로 복원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活動이라고 理解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目的이 正常狀態에서의 財貨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目的에 활용하기 위해 資本財의 性質에 重大한 變化를 야기시키는 것인 경우, 그 活動은 修理와 維持의 活動이 아닌 것으로 된다. 특히 만약 그 目的이 증속과 같은 것을 행함으로써 住宅를 擴張하는 것인 경우, 그 活動은 建設이고 그 產出은 單純히 財貨로서 分類되는 것 뿐만 아니라 資本形成에 포함된다. 修理·維持와 資本形成의 區別은 企業의 中間消費와 自己計定資本形成의 區別이라고 하는 맥락에 있어서 보다 詳細하게 說明된다.

30. 一般적으로 그 購入이 最終消費支出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과 같은 財貨의 家計內에 있어서의 使用 또는 加工은 生産으로서 취급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은 DIY (Do it yourself) 活動을 위해 購入한 材料의

경우에 적용될 뿐 아니라 餘暇活動과 레크리에이션活動에 사용하기 위해 購入한 그 外의 材料와 器具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食事의 調理를 위해 購入한 食品에도 적용된다.

「體系」에서 採用하고 또 ISIC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도 採用하고있는 原則은 家計構成員과 그 外의 사람들에 의해 居宅에서 消費된 食事의 調理가 自己計定으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은 本質적으로 서비스형태의 活動이며 따라서 生産범위의 外에 위치하게 된다. 그 위에 다음 章에서 說明되는 것처럼 個人과 家計에 의해 그들이 需要와 欲求를 직접 만족시키기 위한 財貨의 使用은 固有의 意味에 있어서의 消費活動이므로 生産의 需要·總額과 같이 취급되어져서는 안된다.

31. 農作物의 生産은 生産範圍內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財貨의 生産에 불가결한 構成要素로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本質적으로는 財貨를 生産하는 事業體의 부수적인 活動이다. 마찬가지로 물의 운반도 本質적으로는 財貨를 生産하는 活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鑛業과 石油業에 있어서 生産의 第一段階가 그 自然의 所在場所로부터 經濟적으로도 다 有用한 場所로의 輸送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32. 마지막으로 家計內 自家消費를 위해 生産한 比較的 小量의 財貨에 관한 情報을 蒐集하는데 필요한 費用과 便益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統計上の 資源이 不足한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家計內의 財貨의 自己計定生産의 推計는 그 生産이 經濟全體를 問題시 한 경우, 그것이 財貨의 總供給에 대해 상당한 貢獻을 하고있다고 믿을 만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져야할 것이다.

대략적인 指針으로서 推計를 위한 費用이 經濟分析과 政策形成의 見地로

부터 정당화되는 것은 特定한 財貨供給의 적어도 10%가 家計內 自己計定 生産에 의한 물건과 재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적당한 바다, 호수, 강, 산림이 있는 나라에서 漁業이나 연료채취라는 自己計定 生産의 推計를 시도하는 것은 거의 意味가 없다. 마찬가지로 先進國에 있어서 衣服, 신발류, 家具의 自己計定生産은 實際 存在하고 있었다해도 극히 小規模로 보낼 것 없고 그 推計를 시도하는 것도 거의 意味가 없다.

非合法的 生産

33. 非合法的 生産이라는 것은 法律과 慣習에 의해 禁止되고 있지만, 市場에 있어서 需要가 存在하고 市場에서 實際로 販賣하기 위해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하는 活動이다. 非合法的 生産에 대한 罪責을 얻는 때에는 실제상 분명히 罪狀이 있으므로 非合法的 生産의 罪狀에 대해 상세하게 따 고들 價値는 없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原則的인 論點중에서 主要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論議하고 동시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價値가 있다.

34. 「體系」에서 採用되고 있는 一般的인 立論은 다음에 제시되는 2가지의 條件이 충족되는 것을 前提조건으로 하여 非合法的 生産을 生産範圍 內로 하고 따라서 生産計定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a) 本來的 生産要素에 의해 投入이 產出로 變換되는 正當한 生産過程인 活動

(b) 該當活動으로부터의 產出으로서 生産된 財貨와 서비스가 市場에서 自由意志에 의해 購入되는 것.

35. 따라서 절도, 강탈, 폭력 등과 같은 犯罪的 活動은 분명히 生産的 이지 않으므로 모두 除外된다.

36. 여기에서 考察對象이 되는 活動은 經濟的 意味에서 生産的이지만, 그 自體가 非合法的이던가 그 產出物의 販賣과 消費가 어느 一定 條件下에서 행해지는 경우 外에는 禁止되고 있는 것이다. 非合法的이라고 여겨지는 生産의 主要種類는 국가와 時期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原料供給 生産과 關係의 生産 또는 賣場과 流通中絶과 같은 서비스의 供給이다. 全世界 모든 國家에서 모든 時期에 非合法的인 것으로 규정된 것과 같은 生産의 種類는 실형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非合法的 生産에는 非合法的 生産物의 製造 그 자체만 만이 아니라 그 輸送과 流通도 포함되며, 그러한 것들의 活動에 의해 發生되는 所得은 그 製造로부터 얻어진 所得을 完全 上回하는 경우도 많다.

37. 道徳上 그리고 實際上的 理由에서 非合法的 生産을 暗黙的으로 無視하여 완전히 「體系」에서 除外시켜야한다고 하는 主要한 理由중에도 모으나 이러한 活動을 計定의 項도 範圍에 記錄된 다른 項으로써 重要한 影響을 끼친다는 것을 認識해야만 한다. 非合法的 生産은 合法的으로 사용하게 되는 互換의 所得을 發生시킬지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生産과 所得을 計定에서 除外시키는 것은 計定內의 다른 項目, 특히 均衡項目에 誤差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은 非合法的인 輸出과 輸入이 總輸出, 總輸入의 상당한 比率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體系」의 除外計定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38. 따라서 만약 必要한 情報가 어떠한 理由에 의해 入手可能하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利用하여 그 生産을 計定內에 포함시키는 것이 適當하며 非合法的 生産部分을 識別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非合法的 生産의 規模는 극히 적고 또 신뢰할 수 있는 推定이

어렵다고하는 假定上이지만 非合法的 生産을 記錄하려는 시도는 「體系」內에서 낮은 優先順位밖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地下經濟

39. 어떤 一定한 活動은 經濟的 意味에서 충분히 生産的이고 또 그 自體 완전히 合法的임에도 불구하고, 所得稅, 附加價值稅 또는 其他 生産에 關係된 稅收의 支拂을 回避하고 社會保障課出金의 支拂도 回避하기 爲해 公共機關으로부터 意圖적으로 은폐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生産에 관해서는 通常 그것이 「地下」經濟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說明되고 있다. 이러한 活動 전부는 분명히 「體系」의 生産 범위에 위치하며, 統計機關은 이러한 生産의 推定値를 計定內에 포함시키기 爲한 모든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實際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活動의 信賴할 수 있는 推定値를 이미 作成해 놓고 그러한 나라에서 발견된 計定統計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몇몇 경우의 예를 들면, 建設에 있어서는 「地下」의 部分을 識別하는 일 없이도 産業의 生産物會計에 만족할 수 있는 包括적인 推定値를 作成하는 것이 可能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推定値를 作成하기 爲해 사용한 統計資料가 稅務統計과 社會保障統計가 아니라 消費財 原材料, 輸入, 支出調査와 같은 其他 資料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公共機關으로부터 은폐되어 있더라도 그 活動이 國民計定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生産과 附加價值의 測定

40. 經濟的 見地에서의 生産은 土地, 勞動, 資本財의 형태를 띠는 本原的 生産要素가 財貨·서비스의 投入을 財貨·서비스의 產出로 變換시키기

위에 共同으로 작용하는 過程이다. 投入은 生産過程에 投入된 時點에서 記錄되고 評價된다. 한편, 產出은 生産過程으로부터 나다란 순간에 記錄되고 評價된다. 投入을 評價하는 價格은 購入者價格이고 한편 產出을 評價하는 價格은 基礎價格이다.(生産者價格에서 產出에 대한 純稅을 뺀 것) 어느 경우에도 生産이 終하였던 時點의 市場에서 成立되어 있는 價格이다. 投入과 產出사이의 價値額의 增加는 該當生産過程에 의한 附加價値로서 計測된다. 따라서 그것은 本래의生産要素사이에서 分配가능한 金額이다. 따라서 投入과 產出의 定義, 測定, 評價는 「體系」全體에 있어서 基本的인 것이다.

41. 實態로는 生産의 測定은 그 간단한 記述이 示唆하는 것 보다도 複雜하다. 특히 生産過程이 長期間에 걸치는 경우, 投入과 產出 件부가 同時에 記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船舶과 建物 및 其他 構築物과 같은 매우 큰 資本財의 生産은 現實적으로 몇년의 會計期間에 걸쳐 行해질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產出物 件부를 代表할 生産過程이 終了된 時期에 할당하는 것은 분명히 不適切하다. 이와 같은 產出物은 生産이 行해진 全期間에 걸쳐 各各의 期間에 完成된 製作中인 製品을 計算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時限의 경과에 의해 發生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問題는 投入이건 產出이건 生産에 사용되기전 혹은 市場에서 팔리기 前의 다양한 期間동안 生産者의 在庫로서 財貨가 保有될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購入과 販賣에 대한 企業의 會計記錄으로부터 中間消費된 投入과 生産된 產出의 價値額을 얻기 위해서는 在庫變化分の 調整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問題는 本章의 뒤 項에서 더욱 詳細하게 考察될 것이다.

42. 評價의 問題도 있다. 「體系」에서 採用되고 있는 一般的인 原則은

購入者價格으로 投入을 評價하고 基礎價格으로 產出을 評價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購入者價格·基礎價格 共に 投入과 產出이 記錄된 時點의 市場價格이다. 그러나 어떤 形態의 產出에 있어서는 이 評價方法은 實行不可能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必要不可缺한 市場과 市場價格이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產出의 代價는 政府과 非營利機關이 個別的 혹은 集合的으로 家計에 代金を 請求하는 일 없이 供給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財貨·서비스의 供給과 需要는 價格機構에 의해 市場에서 調節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生産은 「非市場(生産)」이라고 한다. 非市場 財貨·서비스의 評價와 취급에 關係서는 뒷장에서 論說될 것이다.

產出의 測定

A. 市場產出

43. 物理的개념에서는 生産過程으로부터의 產出은 그 過程으로부터 生産된 財貨와 서비스로부터 이루어진다. 단, 財貨와 서비스의 定義는 本章 第 1 節에 나타나있다. 會計期間內에 生産過程이 完了된다고 하는 前提에 있어서는 財貨·서비스產出의 記錄時點는 財貨가 完成된 때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는 때이다. 生産過程이 2 期間 以上에 해당되는 경우, 各期の 期間內에 完成된 製作中인 製品의 量에 의해 產出이 測定된다. 이 경우, 各期末에만 記錄할 수 있다.

44. 可能的한 「體系」에서는 그것이 記錄되는 時點에서의 市場基礎價格으로 財貨·서비스產出이 評價된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市場價格基礎로 評價된 產出은 그것들이 實際로 市場에서 販賣되든지 生産者의 自家使用을 위해 生産者自身이 保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市場產出」이라 한다.

製作中인 물건이 경우와 自家消費와 自己資本形成을 위한 生産의 경우에는, 各종의 市場價格은 生産費用을 考慮하여 推定될 것이다.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非市場產出의 概念은 市場價格에 存在하지 않고 生産이 市場에이스로 組織되어있지 않은 財貨와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計算되지 않는다.

生産者在庫의 變化

45. 모든 財貨가 生産된 時點에서 賣却되는 것은 아니므로, 一般적으로 어느 주어진 期間에 生産된 產出의 價値額은 賣却된 價値額과 一致하지 않는다.

企業의 計定에 記錄된 賣上高으로부터 產出의 價値額을 導出하기 위해서는 生産되어 동시에 企業에 保有되어 있는 財貨의 在庫變化를 賣上高에 덧붙일 必要가 있다. 더욱이 이 경우, 在庫變化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라도 좋다. 基本的인 恒等式은,

$$\text{產出} = \text{賣上高} + \text{生産된 財貨의 在庫變化}$$

로서 이식 그 자체는 企業會計, 國民經濟計定에서도 成立되는 基本的 恒等式의 하나이다. 그러나 「體系」에 있어서 在庫變化가 測定되고 評價되는 方法은 一般적으로 企業會計에서 使用되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價格의 時間的인 變化가 있었던 경우, 企業會計에 가해지는 產出과 利潤의 測定은 國民經濟計定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46. 「體系」에 있어서 在庫變化의 測定方法은 產出의 記錄·評價方法에 依存한다. 市場產出은 언제나 같은 方法으로 評價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財貨·서비스가 生産後 곧 賣却되는지 안되는지, 生産者에 保有되는 完成品은

庫가 되는지, 生産者의 自家消費과 固定資本形式에 相當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產出이 記錄되는 時點에서의 市場에서 支配的인, 基礎價格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이것은 在庫가 된 財貨는 在庫가 된 時點에서 支配的인 基礎價格으로 評價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反對로 그 財貨가 그 後 在庫로부터 售고되어 賣된 時點에는 그 時點의 價格에서 評價되지 않으면 안된다.

47. 예를 들면, 生産된 時點에서 價格 PO로 評價되어 在庫가 되고, 그 後 在庫로부터 售고되어 보다 低廉 價格 PI에 賣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따라서, $PO = \text{財貨產出의 價値額}$

$PI = \text{企業에 의해 記錄된 財貨의 販賣價値額}$

財貨가 生産된 때와 동일한 會計期間에 販賣되지 않은 경우, 「體系」에서는 그 產出을 生産된 期間에 在庫增加의 價値額으로서 記錄한다. (販賣는 0) 나중에 財貨가 販賣된 期間에는 「體系」는 $-PI$ 의 在庫變化를 記錄한다. 따라서 財貨가 販賣된 期間의 產出은 賣上에 在庫變化를 더하므로, 0으로 記錄하는 것이 適切하다. 한편, 동일한 會計期間에 價格이 PO에서 PI으로 上昇하여 그 後에 財貨가 賣된다면 「體系」는 $(PO - PI)$ 로 在庫의 變化를 記錄한다. 結果적으로 賣上에 在庫變化 $(PI + (PO - PI))$ 를 더한 產出의 價値額, 즉 PO와 같게 된다. 이 경우 實質 순수하게 物理的觀念에 있어서 在庫로 保有되어 있는 財貨의 量이 期間全體를 통해 變化하지 않는다 해도 在庫變化에 대해 마이너스數值가 記錄되는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48. 在庫로 保有되어 있는 동안에 財貨價格上昇으로 인하여 生産者가 얻는 利益, 결국 $(PI - PO)$ 은 一般적으로 名目保有利得(nominal holding

gain)이라고 한다. 保有利得은 時間의 經過에 의한 熟成의 過程과 다른 物理的變換으로 되풀어지는 價格上昇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當은 保有利得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上記의 簡單한 例에서는 生産되어 같은 會計期間중에 賣에 賣인 財貨에 대해서 「體系」가 記錄할 在庫變化의 數値額은 符號를 逆轉한 保有利得, 즉 $(PO - PI)$ 과 같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體系」에서 在庫變化의 記錄方法은 產出이 在庫로서 保有되어 있는 동안에 發生할 수 있는 一切의 保有利得이 扣除되어 產出의 價額에 포함되지 않음을 保證하고 있다. 이 調整은 높은 價格에 이선의 時期에 극히 重要하다.

49. 「體系」에서 在庫變化의 取扱은 많은 國家에서 널리 企業會計에 쓰이고 있는 取得原價會計(historic cost accounting)方法과 對比된다. 取得原價會計에서는 財貨가 在庫로 轉입된 時期의 評價에 사용된 것과 같은 價格으로 在庫로부터 출고된 財貨가 評價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위의 例에서는 在庫로부터의 출고는 PO에서 評價된다. 만약 財貨가 生産된 것과 같은 時期에 賣었다고 한다면, 產出이 賣上과 같게 되므로 在庫變化의 數値는 0이 된다. 結果적으로 產出額은 在庫로서 財貨가 保有되어 있는 동안에 發生한 保有利得을 포함하여 記錄된다. 만약 財貨가 다음 時期에 賣인다면 賣上은 PI와 같아지고 在庫變化는 $-PO$ 와 같다. 結果적으로 產出額은 0이 아니라 $(PI - PO)$ 이다. 財貨는 그 後에 生産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保有利得과 같은 플러스數値의 產出이 記錄된다. 따라서 財貨가 販賣前에 在庫로서 保有되는 期間이 있는 경우 生

產된 時期에 팔리는가 後에 팔리는가에 관계없이, 取得原價會計에 있어서 產
出의 測定에는 保有利得이 포함된다.

50. 取得原價會計의 體系的인 適用을 위해서는 財貨가 在庫로부터 出庫
되는(出庫된다고 假定되는) 順序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 가장 一般的인 方
法은 FIFO(First in First Out) 즉 先入先出法일 것이다. 이것
은 同種의 財貨는 在庫에 편입된 順序로 出庫된다고 假定하는 것으로 따
라서 當期에 在庫로부터 出庫된 財貨는 가장 긴 期間동안 保有된 財貨
라고 假定하는 것이다. FIFO와 取得原價會計를 조합시키면 在庫로부터
出庫되어 賣却되는 모든 財貨에 관하여 賣上에 在庫를 比한 것으로 測定
되는 產出의 價額에 保有利得이 포함됨을 意味한다. 이러한 保有利得은
인플레이션時期의 產出에 관하여 극히 重要的 것이 될 것이다.

51. FIFO의 대신이 되는 方法은 LIFO(Last in First out) 또
는 後入先出法이다. LIFO에서는 引出된 財貨는 가장 마지막에 在庫에 편
입된 財貨라고 假定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當期價格에서의 評價에 관련
된 것이 많다. 在庫가 꽤 安定的이든지 또는 增加하고 있을 때 LIFO를
利用하는 경우, 在庫引出의 當期價格評價가 保障되는 것에도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產出額이 保有利得分만큼만 增加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在庫保有水準이 低下하고 있다면 LIFO를 사용해도 產出에
상당한 保有利得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52. 마지막으로 產出의 測定에 保有利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生産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利潤도 增加하고 있는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原則적으로 保有利得은 生産으로부터 발생한 利潤은 아니다. 결국, 그것은 本業의 生産要素의 도중에 의해 投入物을 產出物로 變換시키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식으로든 財貨를 變換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利潤이다. 生産으로부터 얻어지는 利潤은 「體系」에서 定義되는 用語에서는 營業剩餘이다. 그것은 生産者가 在庫의 保有에서부터 추연히 얻는 保有利得을 엄밀히 除外하는 方法으로 測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體系」에서 在庫變化가 評價되는 方法은 특히, 產出의 價値額으로부터 항상 保有利得이 除外되는 것을 保證하고 있다. 따라서 附加價値, 營業剩餘으로부터도 保有利得이 除外되어 있는 것이 된다. 以下에서 說明하듯이 「體系」는 또 投入으로서 使用되는 原材料의 在庫에 발생하는 保有利得이 生産過程에서의 中間投入의 測定을 確守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保證한다.

53. 一般적으로 「體系」에서 모든 在庫變化는 증가되는 감소되는 그것이 행해진 時點에서 그대의 市場支配的인 價格으로 記錄된다. 在庫變化는 그것들의 發生을 直接記錄하는 것으로 保有在庫의 水準을 알 必要는 없다. 會計期間全體의 在庫變化는 增加分의 累積價値에서 減少分의 累積價値를 變 것에 의해 일어난다.

54. 「體系」에 있어서 在庫變化의 測定에는 모든 在庫의 움직임을 會計期間을 통해 監視하는 것이 必要하며, 期初과 期末의 在庫水準을 아는 것

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在庫變化의 測定을 얻기 위한 計算은 容易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必要한 情報을 충분히 詳細한 수준까지 入手可獲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必要한 測定에 가까운 것을 얻으려면 期待된 다른 方法을 사용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通常採用되고 있는 方法에 관해서는 以下の 章에서 說明될 것이다. 매우 적은 情報밖에 必要로 하지 않는 測定值에서도 必要한 在庫變化測定의 꽤 좋은 近似值을 얻을 수 있다고 期待할 수 있기 위한 條件에 관해서도 詳細하게 說明될 것이다. 그 외에 在庫變化의 解釋과 意味에 관해서도 보다 충분히 說明될 것이다.

同一事業體에 있어서의 生産, 消費된 財貨·서비스

88. 同一事業體에 있어서 生産되고, 또 後에 中間投入으로서 消費된 財貨 서비스는 그 事業體의 產出의 一部로서는 간주되지 않는다. 原則적으로 이와 같은 財貨와 서비스는 附隨的인 活動에 의해 生産된 서비스에 제한된다. 실제 事業體의 概念에는 自家中間消費를 위한 生産은 결코 事業體의 產出의 一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암묵되어 있다. 왜냐하면, 만약 除算을 위해 이와 같은 財貨와 서비스가 各各 區分되어 記錄되었다고 한다면 그 各各을 生産한 活動에 대해서 자기 別도로 事業體가 設定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기 때문이다.

前章에서 記述한 것과 같이 ISIC의 各以上의 다른 中分類에 걸쳐서 幾重으로 統合되어 있는 企業의 서로 다른 段階에서의 生産에 대해 各各 別도의 事業體가 인정나 認定되어야 한다. 따라서 幾重統合企業은 항상 개별적인 事業體에 分類되지 않으면 안되며, 실제로 2段階以上の 生産을 行하는 事業體는 없어야 한다. 한편 個人企業에 의해 生産되는 財貨와 서비스에서 個人企業의 所有者自身과 所有者가 所屬한 家計에 의한 最終消費로서 使用되는 것은 물론, 事業體의 外部에서 消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事業體의 產出으로서 취급된다.(以下를 略함)

同一企業에 속하는 다른 事業體사이에서의 受授

56. 同一企業에 속하는 한 事業體로부터 다른 한 事業體로 공급되는 財貨와 서비스는 항상 生産하고 있는 事業體에 대한 產出의 一部로서 計上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財貨와 서비스는 受取側의 事業體에 對해 中間消費에 使用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總資本形式의 一部를 形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生産側의 事業體에서는 財貨와 서비스는 그 地點에서 支配的인 高價價格으로 評價되어야만 한다. 또 受取側의 事業體에서는 그것들의 財貨·서비스를 購入者價格으로 評價해야 한다. 그 購入者價格은 基礎價格으로 第三의 事業體에 對해 授受되는 경우에 負擔되는 輸送費用을 加算한 것이다. 企業內의 內部會社를 目的으로 하는 人工的인 移轉價格의 使用은 가능한한 回避되어야 한다.

57. 「體系」는 企業과 事業體의 結合에 對해 生産計定을 作成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어떤 한 企業의 總產出과 總中間投入이 그 企業을 構成하는 事業體에 관한 總量과 같은 것을 保證하기 위해 企業의 產出과 投入에는 以上에 記述한 것과 같은 事業體間的 財貨·서비스의 授受분을 포함하도록 增加시켜 놓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形態의 產出

58. 다른 네 種類의 產出에 關하여 考察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적어도 市場生産者의 경우 通商 賣上에 관한 比率로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豫想되는 것이다. 第一의 形態는 事業體에 對해 그 自身の 被 働者에게 現物報酬으로서 提供하기 위해 生産된 財貨와 서비스이다. 現物報酬에는 炭坑勞動者에 對한 無料石炭으로부터 飛行機乘務員과 鐵道被働者の 無

料旅行에 이르는 일은 例가 있다. 이러한 財貨와 서비스는 產出에 포함시키
기 基礎價格으로 評價해야 한다.

89. 第二形態의 產出은 다른 기업과 事業體에 後者の 生産物과 交
換되어 供給되는 財貨와 서비스이다. 결국 다시 말하면, 賣却된다고 하기
보다 物物交換되는 財貨 및 서비스이다. 先進國에 있어서는 物物交換이 發
생하는 정도는 작겠지만 税金回避 및 脱稅을 위해 특히 個人企業사이에서
發生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物物交換되는 財貨·서비스는 基礎價格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90. 第三形態의 產出은 自己計定總資本形成에 使用되는 財貨이다. 운송수
단과 같은 機械과 設備의 生産者는 그를 자신이 장래 使用하기 위해 資
本 設備의 일부분을 保有할런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경우 그것들을 事業
體의 產出의 一部로 취급하여 基礎價格으로 評價해야 한다. 그러나 自己計
定資本形成의 대부분은 建物과 다른 構築物의 형태를 띠 것이다. 建設企
業自體를 제외하면 建設活動은 問題가 되는 企業의 主要活動과는 다름에
틀림없으므로, 一般의으로는 建設單位를 위한 別個事業體를 設定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 事業體의 產出은 最終需要에의 授受로서 취급되어 基礎價
格 또는 必要하다면 建設費用에 의해 評價되어야 한다. 一般의으로 建設의
產出이 測定되는 方法에 관해서는 이 章의 다음 節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91. 第四形態의 產出은 企業의 (할 명 내지 複數)所有者에 의한 最終
消費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財貨와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消費는 個人企業
의 所有者에 限하며, 法人企業에서는 發生하지 않는다. 自給農業의 경우 事
業의 產出全部가 所有者自身 또는 그의 家計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最終
消費으로서 利用된다. 最終消費으로서 使用된 產出은 基礎價格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産出의 構成要素: 要約

總, 주로 市場에서 販賣하려고 시도한 通常의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하는 事業體와 企業에서의 産出의 多様な 構成要素에 대한 要約이 다음 表에 제시되어 있다. 「通常(ordinary)」이라고 하는 말은 流通과 銀行과 같이 特別한 銀行이 採用되고 있는 特別한 産出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特別한 種類의 産出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거론하였다.

産出의 構成要素

주로 市場에서 販賣하려고 意圖한 通常의 財貨·서비스의 生産者

1. 事業體와 企業에 의한 自己生産物에 대한 實際의 販賣額.
2. 事業體와 企業에 의해 生産된 財貨의 在庫變化에 대한 價値額.

1 + 2 = 3. 市場에 있어서 實際로 販賣되었는지 또는 販賣하는 것을 의도한 産出.

-
4. 同一한 企業에 속하는 다른 事業體로 自己生産物의 授受.
 5. 自己生産物의 現物報酬으로서의 被儲者로의 授受.
 6. 다른 事業體 또는 企業의 生産物과의 交換에 의한 다른 事業體 또는 企業으로 自己生産物의 引渡(物物交換)
 7. 事業體와 企業에 의해 生産된 資本財의 自己總固定資本으로서의 配分.
 8. 自己生産物에 대한 非法人企業(한정 내지 複數) 所有者의 最終消費으로서의 配分.

4 + 5 + 6 + 7 + 8 = 9. 市場에서 販賣되지 않은 産出.

3 + 9 = 10. 産出合計.

83. 위에 기재한 表는 通常의 財貨와 서비스의 市場生産者에 관한 것이지만, 表에서 區分된 產出의 7개 構成要素中 단 하나가 실제의 貨物去來의 價額額을 表現하고 있는 것은 注目할 가치가 있다. 在庫變化도 歸屬에 의하고, 더구나 종종 正確한 實行이 가장 困難한 歸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表의 4부터 8까지의 項目은 企業과 事業體에서 生産된 財貨·서비스의 어떤 것이 다른 目的을 위해 市場에서 이동된 狀態이다. 이러한 項目은 모두 完全을 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市場生産者의 경우, 이러한 項目의 歸屬價額額은 販賣額과 비교해서 작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大型資本財와 構築物生産者의 產出

84. 이 節에서 考察된 生産者는 그 產出이 大型資本財 - 예를 들면, 船舶, 飛行機, 重機械, 建物 그 외의 構築物-인 生産者이다. 一般적으로 그와 같은 產出은 1年으로 假定되는 會計期間內에는 完成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品目은 단순히 完成까지 長期間이 걸릴뿐 아니라 最終의인 購入者가 指定하는 方法에 의해 轉讓되는 唯一한 財貨(unique goods)인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財貨의 生産者는 個人團體가 共同으로 行한다고 하는 형태의 建設을 제외하면 대부분 언제나 市場生産者이다.

85. 「體系」의 一般原則은 產出의 記錄時點을 完成時로 하는 것이다. 全國 生産過程으로부터 財貨가 나타났을 때,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大型이고 複雜한 資本財가 最終적으로 完成된 時點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어느 確이든 過程이 때마침 終了된 比較的 짧은 期間에, 完成까지 長期間이 걸리는 生産過程으로부터 產出의 全體를 歸屬시키

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各各의 會計期間에 生産된 產出이 있다고 假定하여 最終產出을 複数生産期間에 걸쳐 分配하는 方法을 考案할 必要가 있다.

66. 購入者가 指定한 方式에 의해 이루어지는 買賣契約의 締結이 生産過程에 先行하는 형태의 프로젝트와 生産者 自身の 주도권과 위험부담에 의해 生産過程이 終了된 後까지 그 產出이 賣却되지 않는 프로젝트와 區別할 必要가 있다. 造船, 大型빌딩의 建設과 設備, 發電所, 塹, 高速自動車道路의 完成에 數年이 걸리는 其他 構造物과 같은 매우 큰 프로젝트는 尙상 前者의 형태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移動性이 있는 機械과 設備의 製作과 個人住宅의 建設은 第二形態일 것이다.

67. 事전에 買賣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未完成資本財生産의 結果로서 產出은 生産者에 의해 所有되게 되지만, 그 產出은 生産에 의해 未完成品과 完成品의 在庫價値額이 어느 정도 增加했는가 하는 것에 의해 測定되어야 한다. 未完成品의 在庫는 一般적으로 製作중인 物作이라고 한다. 製作중인 物作의 價値額은 資本財의 總生産費用에 占有하는 該當會計期間達成分의 比率를 完成資本財의 當期基礎價額에 適用함으로써 推定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在庫變化의 價値는 實際生産費用에 推定利稅에 대한 余裕분 (mark-up)을 상승시킨 것에 近似되지 않으면 안된다.

68. 完成品이 그 年の 期에 판매된 때, 該年の 產出은 販賣額과 기초의 未完成品在庫의 價値額을 販賣價格으로 再評價한 것과의 差로 測定한다. 當年の 在庫를 再評價할 必要가 있는 것은 當期에 納金 在庫에 관한 所有利得 (혹은 損失)이 產出의 測定에 介在되는 것을 排除하기 위해서이다.

69. 사건에 買賣契約이 成立되어 있는 未完成資本財의 취급은 그와 다르다. 이와 같은 경우, 財貨는 各 段階마다 販賣된 것으로 취급되고 達成분에 관한 所有權의 移動이 계속되는 期間동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假定된다. 실제로는 生産의 여러 段階에서는 通常 購入者에 의한 段階마다의 支拂 혹은 先支拂에 따른다. 法的으로는 該當製作中인 物件이 生産者가 아니고, 購入者의 財産인 경우도 당연히 있다. 따라서 各期에 生産된 產出은 購入者에 대한 販賣로써 測定되고, 生産者在庫에 대한 價額額의 增加로써 測定되지 않는다. 그 경우, 그 販賣價格中에서 任意의 1期間에 실현된 比率은 總生産費用中 該當期間分의 占有比率에 의해 測定된 것이다. 代替的으로 是의 購入者에 의해 定期的으로 段階마다 支拂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段階마다의 支拂額이 販賣額의 상당의 좋은 近似值가 될 것이다.

都賣業者와 小賣業者의 產出

70. 都賣業者와 小賣業者의 產出은 다른 財貨·서비스의 生産者와는 달리 定義되고 있다. 都小賣業者의 役割은 最小限度의 加工을 수반하여 財貨를 轉賣하는 것이다. 流通業者는 실제로 財貨를 販賣하고 있지만 流通業者의 生産의活動은 顧客이 구입하는데 便利한 좋은 場所로 財貨를 輸送, 保管하고 轉賣가 容易하고 동시에 사람을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財貨를 진열하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要求에 맞도록 財貨를 包裝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 過程에서는 財貨 그 自體에 의미있는 變形이 가해진다고는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財貨는 流通業者 自身の 生産過程에의 中間投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販賣된 財貨는 流通業者의 產出을 構成하지 않는다. 流通業者의 서비스는 販賣된 財貨에 의해 실현된 商業마진에 따라 測定된다. 商業마진은 流通業者가 轉賣한 價

價格 流通業者가 같은 날, 같은 財貨를 購入하는 데에 支拂하지 않으면 안 될 價格과의 差로서 定義된다. 流通業者에 의해 販賣된 財貨는 通常在庫로서 어느 程度의 期間동안 保有되고 있으므로 마진에 일체 保有利得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重要하다. 따라서 商業마진의 또 하나의 定義는 流通業者가 轉賣한 價格과 以前에 流通業者가 支拂한 價格과의 差로부터 購入과 轉賣의 사이에 실현된 保有利得 혹은 保有損失을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保有利得은 인플레이션시에 매우 重要的 것이 될 것이다.

71. 따라서 財貨가 流通業者에 의해 販賣된 때 그리고 그 産出이 記錄된다. 流通業者에 의해 生産되는 産出額은 財貨의 販賣數量和 商業마진의 크기에만 依存한다.

72. 流通業者는 販賣하는 財貨가운데 일부분을 批發者에게 現物報酬로서 供給하기도 하고 事業所有者 自身の 個人的인 消費을 위해 販賣目的以外로 利用하지만, 財貨 그 자체는 流通業者가 生産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財貨의 謝屬價額은 流通業者의 産出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當初 再販賣의 의도가 있었던 財貨라도 후에 都·小賣業個人企業의 所有者에 의해 消費되면, 그 財貨는 業主에 의해 最終消費을 위해 直接購入된 것과 같이 취급된다. 그것같은 該當 都·小賣業自體를 通過하지 않고 販賣에도 産出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를 피하기 위해 購入된 價格 보다 낮은 價格으로 販賣되지 않으면 안 되는 財貨에 관해서 마진은 마이너스이다. 폐기된 財貨價格이 0으로 결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운용리스의 産出

73. 그 耐用年數 보다도 짧은 어떤 特定期間, 機械와 設備을 임대하는 活動은 운용리스업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活動의 形態는 ISIC중 分類 71 에 分類되어 있다. 所有者 혹은 貸貸者가 利用者 또는 賃借者에 서비스를 提供하고 産出은 賃借者가 貸貸者에게 支拂한 賃賃料에 의해 評價되는 生産形態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라고 하는 다른 또 하나의 賃賃의 形態와 表面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명확히 區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용리스에 관해서는 以下の 項에서 別度로 記述하겠다. 이 項의 目的은 운용리스에 대한 産出의 性質과 測定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74. 운용리스의 特徵的性質은 아래와 같이 要約된다.

(가) 機械·設備의 貸貸者·所有者는 設備의 在庫를 運 利用者에게 빌려 줄 수 있는 良好한 狀態로 維持한다. 이런 觀點에서 貸貸者는 租·小買業者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나) 設備의 貸出期限은 短期으로는 1日 長期으로는 1年以上이 된다. 賃借者는 期限이 다 되었을 때 更新하여 같은 利用者가 같은 設備을 계속해서 어느 期間까지 계속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賃借者는 設備의 耐用年數를 초과하여 빌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다) 貸貸者·所有者는 利用者·賃借者에게 供給하는 서비스의 一部로서 設備의 維持와 修理의 責任이 있다. 따라서 通常 賃借者는 設備의 操作에 관한 專門家이지 않으면 안된다. 컴퓨터와 같은 高度로 複雑한 設備의 경우, 賃借者와 그 被借者는 혼자 힘으로 明確하게 設備을 保守點檢하기 위해 必要한 專門知識과 機器類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重要な 要因이 된다. 또 賃貸者는 重大하고 오래가는 故障이 발생한 것과 같은 정

우, 設備들 전부 交換할 責任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75. 이와 같이 貸貸者가 供給하는 서비스는 1個의 設備貸付以上の 것이다. 그것은 利用者의 觀點에서는 重要하게 될 수 있는 便宜과 保障과 같은 다른 要素를 포함한 것이다. 운용리스는 當初 어느 一定 형태의 設備을 지속적으로 必要하다고 하지만, 그 設備自體를 購入했다고 해도 매우 불충분하게 밖에 利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利用者의 需要에 對應하여 設備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특히, 電子工學分野에서 機械의 形態가 점점 複雜化되어가고 있고 展開되어, 貸貸者에 의한 設備의 保守點檢과 設備의 利用을 지원해 주는 便宜의 提供은 利用者에게 購入하는 것이 아니라 賃借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 더구나 利用者에게 購入이 아니라 賃借를 선택하게 하는 다른 要因으로서 賃借가 企業의 貸借對照表, 資金의 流通, 稅負擔에 對해 갖는 歸納의 問題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운용리스를 金融리스로부터 區別하는 것이 困難하게 될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金融리스는 稅制의 장점을 確保하기 위해 운용리스서비스와 같이 보이는 方法으로 의도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般적으로는 2가지 형태의 賃貸를 그다지 區別없이 서로 區別할 수 있다.

76. 賃借者의 賃貸料支拂은 賃貸者에 의해 賃借者에 供給된 서비스에 대한 支拂으로서 취급된다. 賃貸料는 賃貸者가 營業費用과 利子를 負擔하고 있기 때문에 通常 設備의 資本消費 보다도 상당히 크다.

銀行의 產出(改訂을 豫定하는 暫定稿)

77. 銀行은 2가지의 相異한 種類의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銀行의 주

요한 機能은 金融仲介機關으로서의 行動이고 通常의 경우 銀行은 通常 이 서비스에 대해서 直接 料金を 徵收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貸取 預金利率보다 비싸게 貸出利率을 設定함에 따라 利得을 얻고 있다. 銀行에 의해서 供給되는 제 2의 서비스는 顧客으로부터 直接料金を 徵收하는 어떤 범위의 金融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投資에 對한 助言提供, 稅金에 對한 助言提供, 外國換業務, 顧客의 貴重品保藏, 보관 등이다. 銀行에 의한 一般金融서비스, 助言·서비스와 事業서비스는 金融仲介機關으로서 銀行의 主要한 活動과는 상당히 相異한 것이기 때문에 可能限한 別個事業體로 考할 것이다. 이들 事業體의 產出은 對해진 서비스에 對한 料金과 手續料에 對해 測定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金融·事業서비스에서는 特別한 測定上 問題는 없다. 만약 실제적인 理由에서, 이와 같은 二次的 活動에 대해서 別個事業體로 測定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의 活動에 歸屬되는 產出은 이루어진 서비스에 對한 料金과 手續料을 基礎로 해서 測定되어지 지 않으면 안된다.

78. 그러나 金融仲介活動으로부터의 產出의 價値額에 관해서는 關係를 明할 必要가 있고 預金資金으로 이루어진 投資과 貸付의 일을 주요하는 貸取財產所得과 그들의 預金에 對한 支拂利率과의 差額으로써 測定되어진다. 關係를 明함으로써 이루어진 서비스의 總價値額에 對한 어느 정도 正確한 測定을 提供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原理적으로는 貸出과 預金, 양쪽에 동일한 利率을 提示하기 때문에 債權者에 대해서도 債權者에 대해서도 提供되어진 特定서비스와 그들의 信用度에 對한 料金を 顧客으로부터 徵收한다고 하는 方法이다. 競爭的 謀力の 結果, 실제로 存在하는 利率의 차이는 間接적으로 이들의 要素를 處理한 것으로 된 것이 推

定되어진다. 利率率差異의 存在에 의해 特異한 料率設定을 하지 않거나, 혹은 顧客으로부터 直接的으로 徵收하는 料率을 적게 만드는 效果가 초래되어질 것이다.

保險企業의 產出(暫定稿)

79. 保險企業의 產出은 顧客에 대해 供給하는 여러가지 種類의 危險을 補償하는 保險을 設定한다고 하는 서비스로부터 成立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支拂金額은 確실한 것이 아니고 保險料 가운데 그 一部로서 포함되어지고 있다.

80. 事故, 損害, 火災, 盜難 등의 危險에 관한 保險의 경우, 그 保險을 提供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드는 費用은 該當會計期間內에 발생한 事故로부터 發生하는 保險금에 대한 支拂總額으로 충분히 充당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가정된다. 따라서 受取保險料가 支拂保險금을 超過하는 部分은 그 保險企業自身에 의해 供給되어지는 서비스의 價額에 대한 近似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保險金으로서 支拂되어지는 金額은 必然적으로 每期間마다 어느 정도 變動이 있고,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 測定된 保險企業의 產出은 때에 따라서는 保險企業自身에 의해 保險料를 固定하는 것을 前提로써 計算된 서비스 內容에 그다지 確실한 近似值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더욱이 큰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產出이 負(-)의 값마저 되어 버린다.

81. 生命保險은 그 保險契約者가 死亡이라는 危險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利用하는 外에 契約貯蓄의 手段으로써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事故 등에 대한 保險과는 相異하다. 따라서 保險企業에 의해 供給되어

지는 서비스費額은 受取保險料가 아래에 열거된 各 項目의 合計를 超過하는 金額에 의해 유추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保險金+利자를 붙인 養老保險의 契約者에 대한 配當收益+保險計算上の 準備金에 대한 實質附加額-保險計算上の 準備金에 對해 保險契約者에 對해서 발생하는 歸屬利子-實現資本利得의 配當

82. 여기서 定義되어진 것으로서 保險計算上の 準備金(actuarial reserves)은 保險契約者가 生命保險企業의 準備金에 對해서 갖는 持分을 커버하는 것이다. 즉, 이 準備金은 該當 期間中에 保險리스크, 次期以後의 保險리스크에 對한 事前支拂 및 기타의 生命保險契約에 應징되는 貯蓄의 要素를 커버하기 위한 準備金을 포함하고 있다. 이 保險計算上の 準備金에 對한 利子は 保險契約者에 對해서 發生한다. 따라서 比喩 現實에서는 利子가 保險契約者에게 支拂되어지지 않아도 그와 같은 利子は 個人所得에 포함된다.

年金基金의 產出

83. 여기서 말하는 年金基金은 그것을 設立하고 있는 團體主와는 金融的으로 獨立한 機構이다. 基金은 그 自體의 資產을 保有하고 있고, 따라서 自己權利에 對해 金融主에게 從事하고 있다. 그와 같은 基金의 產出은 그 基金管理者에 의해 供給되어진 서비스로부터 이루어지고 年金基金의 產出額은 그 基金의 管理費用에 의해 測定되어진다.

B. 非市場產出

84. 非市場產出은 그 生産者로부터 다른 經濟單位에 對해서 無料이거나,

혹은 그 平均生産費用으로는 도저히 達할 수 있는 名目的인 價格으로 供給되어지는 財貨·서비스로 構成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產出은 그 費用을 보전하는 價格으로 市場에서 販賣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와 같은 財貨·서비스의 供給은 販賣로부터 얻어지는 受取額에 의해서 決定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國民計定에서 그와 같은 財貨·서비스의 產出을 評價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適切な 市場價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이와 같은 것의 대부분은 政府單位 혹은 民間非營利機關이 家計에 대해서 個別적으로 혹은 集團적으로 供給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政府單位 및 民間非營利機關은 非市場財貨·서비스를 無料 또는 名目的인 價格으로 供給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生産費用은 別度の 基金 즉, 政府의 경우에는 稅金 그리고 民間非營利機關의 경우에는 會員으로부터의 기부, 혹은 그 밖의 讓出金과 會費에 의해 補填될 수 있기 때문이다.

85. 公共財는 非市場產出을 다른 經濟單位에 대해서 無料 혹은 그 平均生産費用 절반미만의 名目的인 價格으로 提供하기 위해 生産된 財貨·서비스로서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非市場生産者와는 다른 經濟單位에 대해서 財貨·서비스를 供給하지만, 그 販賣로부터의 受取額이 生産費用의 절반 밖에는 尙당하지 않는 生産者로 定義할 수 있다. 非市場生産者는 生産한 財貨·서비스의 어느 정도를 그 費用을 보전하는 價格으로 販賣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非市場生産者의 定義보다 그들의 產出全體로부터 보면 尙當은 比率 밖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동일하게 市場生産者는 어느 정도의 非市場財貨·서비스를 供給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에는 極히 드물다고 생각된다.

86. 非市場生産의 特徵에 관해서는 특히 2가지를 指摘할 수가 있다.

그 첫 번째는 財貨·서비스가 貨幣擔保뿐만이 아니라 交換으로 受取할 수 있는 어떤 담보도 거의 없고 혹은 완전히 없이 供給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雇傭主가 被傭者에게 勞動에 대한 現物報酬로서 提供하는 財貨·서비스는 非市場產出이라고는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非市場生産에 대한 投入는 一般으로 市場生産에 대한 投入와 동일하게 市場으로부터 購入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產出이 無料 혹은 名目的인 價格으로 供給된다고 해도 生産費用은 貨幣로 負擔된다고 하는 것이다.

87. 非市場生産에는 실제상 2가지의 主要한 種類가 存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첫 번째는 政府單位 혹은 民間非營利機關에 의한 社會全體 혹은 社會의 어떤 部分에 대한 集合的서비스의 供給이다. 두 번째는 個別家計에 대해서 無料 혹은 名目的인 價格으로 供給되는 財貨·서비스이다.

88. 政府에 의해서 生産되는 集合的서비스는 公共行政, 規制, 法과 秩序의 維持 및 防衛라는 것과 같이 政府가 社會 모든 構成員에 集團적으로 供給하는 서비스이다. 이들의 集合的서비스에 대한 固有한 特徵은 다음 章에서 보다 충분히 說明되어질 것이다. 現在의 體格에서는 다음의 일이 이와 같은 서비스의 性質에서 固有하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결국 各家計 및 企業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利用하는 程度에 맞게 料金を 徵收한다고 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個別單位的 消費行動은 觀察不可能 혹은 記錄不可能하다. 모든 經濟單位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繼續적이고 동시에 集團적으로 消費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價別的으로 消費원 규모를 測定하는 것, 혹은 觀察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를 위해 가장 供給者가 원한다고 해도 供給과 需要가 價格기구에 의해 調節될 수 없다고 하는 市場에 대한 失敗狀態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생산은 別度の 方法에 의해 資金이 供給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것이 生産領域에서 政府의 收入에 대한 經濟的數據를 提供하고 있다. 政府는 社會가 이와 같은 集會의 서비스의 生産을 實現하는 것을 可能케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生産費用은 대부분 課稅에 의해 조달 되어지고 있다.

89. 民間非營利機關에 의해 供給되는 서비스도, 또한 대부분 集會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典型的으로는 特定사람들 혹은 家計인 集團에 대해서만 供給되고 있다. 즉, 社會全體가 아니고 社會의 比較的 작은 部分에 대해서 供給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서비스의 生産은 非營利機關을 통해서 組織하는 根據는 本質的으로는 政府를 통해서 社會全體에 대한 集會의 서비스를 組織하는 數據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個人的 서비스 利用에 대한 程度에 맞게 적절한 料金を 徵收하는 것으로는 供給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生産은 다른 方法, 예를 들면, 寄附金, 讓出金, 또는 기타 移轉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個人的 利用에 맞는 料金を 徵收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不可 能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去來費用이 상당히 비싸고, 個人的 利用에 맞는 料金を 徵收하는 것이 非經濟的인 活動이 되어 버린다.

90. 政府 및 非營利機關에 의해 供給되는 集會의 서비스에 대해서 市場 및 市場價格이라고 하는 것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의 產出은 다른 方法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體系」에서 採用된 原則은 非市場生産者의 產出에 대한 價値額을 該會計期間中の 生産에 關係 負擔된 費用을 토대로 測定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產出이 아래에 열거한 諸項目

의 合計으로 決定된다.

中間消費

被給者報酬

生産에 關聯된 稅金

固定資本消耗

91. 그러나 이미 말한 것같이 非市場生産은 集合的서비스의 生産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고 個別的財貨·서비스가 個別家計에 供給되도록 다른 生産領域에까지 擴張하고 있다. 이 경우, 各個人에게 그 個別消費에 맞게 料金を 徵收하는 것은 通常의 경우 比한 去來費用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個別的財貨·서비스를 無料 혹은 名目的인 價格으로 供給한다고 하는 意思決定은 財貨·서비스 그 自體의 性質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市場機構가 利用可能해도 市場機構없이 한다고 하는 決定은 政治的 혹은 社會的 理由에서 종종 社會內에서 資源을 再分配한다고 하는 의도를 동반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92. 이와 같이 集合的서비스의 生産은 非市場을 媒介로 組織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個別的 財貨·서비스에는 事情이 다르다. 個別的 財貨·서비스는 市場을 媒介로 혹은 非市場을 媒介로 어느 쪽에 의해도 供給될 수 있다. 이 理由로부터 個別的 財貨·서비스가 非市場을 媒介로 供給되는 程度는 나라 마다 혹은 同一 國家에서도 그 時代마다 그 정치자세 및 意思決定에 의해서 상당히 변하기 때문이다. 통상 非市場을 媒介로써 供給된 個別的 財貨·서비스의 典型的인 것은 教育, 衛生, 住宅서비스라고 하는 것이다.

83. 個別的 財貨·서비스는 市場의 근간에서도 非市場근간에서도 똑같이 供給될 수 있게 하기 위해 尙望의 生産形態가 同一國家內에서 恣意하는 것도 드문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一見한 바와는 個別的 非市場 財貨·서비스의 產出을 市場에서 類似한 서비스에 대해서 豫較한 價格에 기초를 두어 그 價額額을 生産者가 自家消費 또는 自己資本形成을 위하여 留保한 市場財貨·서비스의 產出에 대한 歸屬의 경우와 동일하게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見차는 輕重 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合理的 價格을 얻는 것이 실제로서는 극히 困難하기 때문이다. 個別的 財貨·서비스에 대한 非市場生産의 대부분은 사실상 教育, 衛生, 住宅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 市場에 의해 供給된 경우와 非市場生産者에 의해 供給된 경우와는 서비스의 형태와 質이 일반적으로 다르고 兩者는 단지 다른 目的에 適應이 되는 것 혹은 단지 다른 消費者그룹에 대해서 有用한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또 一般의 다른 형태의 生産者에 의해 供給된 서비스의 質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가 量的으로 충분한 規模로 市場 및 非市場生産者에 의해 提供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非市場產出을 市場產出의 價格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은 不可能하지는 않다고 해도 大膽히 어려운 것이다. 市場 및 非市場生産者에 의해 供給된 서비스는 모두 아마 「教育」 혹은 「衛生」 등과 같은 하나의 커다란 項目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라 해도 서비스의 형태는 상호간에 크게 다르고 실제로는 많은 非市場서비스와 정확히 동등한 市場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通常 個別的 非市場生産者의 產出을 그 生産費用과는 獨立으로 假觀可能한 또는 經濟的으로 意味하는 方法으로 評價하는데 충분한 價格情報을 찾아내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集合的서비스, 個別的 財貨·서비스를 供給해도 모든 非市場生産者의 產出은 위에서 말한

것같이 總生産費用을 基準으로 즉, 다음 項目의 合計額으로써 評價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中間的費

被業者報酬

生産에 關聯한 税金

固定資本消耗

94.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 얻어진 價額은 非市場生産者의 모은 產出을 보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財貨·서비스의 附隨的 數額로부터 생긴 受取額을 다시 追加할 必要는 없다.

95. 非市場生産者의 產出額은 生産過程에서의 投入額과 관계없이 決定할 수 없기 때문에 非市場生産의 收益性을 評價하는 方法은 없다. 附加價額, 附營業剩餘 및 純營業剩餘가 生産計定體系內에서 균일 항목으로서 殘差의 形式으로 決定되는 것은 아니며, 非市場生産에 대해서는 「體系」에서 約束하여 直接的으로 計算된다. 假定으로부터 명확하게 附營業剩餘는 存在하지 않지만 附營業剩餘는 固定資本消耗과 同等하다고 假定的으로 생각된다. 附加價額은 被業者報酬, 生産에 關聯한 税金 그리고 固定資本消耗의 合計額과 同等하게 된다.

96. 만약 非市場生産者가 하나의 生産物만을 生産하고 있는 것이 라면, 「體系」가 生産物의 總產出額을 量한 方法이 그 生産物의 1單位當 平均價額 - 換算한다면 產出 1單位當 單位價格-을 定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非市場生産者가 2가지 이상의 生産物, 예를 들면, 2가지 以上の 同一 種類의 서비스를 同時에 生産하고 있다면 總產出額을 各生産物마다 구분하는 方法은 없다. 따라서 生産物에 대한 單位價格을 定할 수는 없게 된다.

97. 마지막으로 家計內에서 生産된 家事서비스도 그것들을 評價하는 通常한 市場價格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特殊한 非市場產出으로서 取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는 것에 注意해야 한다. 家內使用人의 雇主는 全面的으로 自家消費에 대한 家事서비스를 生産하는 個人企業의 所有者로서 取扱되어진다. 產出은 市場에서는 전혀 販賣되지 않기 때문에, 產出은 그 生産費用을 토대로만 評價할 수 있다. 「體系」에서는 產出을 그 勞動費用, 즉, 現物賃金을 포함한 것으로서 被僱者報酬만을 토대로 評價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中間消費, 資本消費, 稅金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따라서 產出, 附加價值 더욱이 被僱者報酬는 모두 서로 동등하다고 간주된다. 이와 같은 家事서비스의 取扱은 자기소유주택의 취급과는 對照的이다. 借主가 所有하거나, 非法人企業에 의해 生産된, 自家消費을 위한 住宅서비스의 產出은 生産費用이 아닌 同一形態의 住宅에 대한 市場賃賃料를 토대로 評價된다.

98. 家計內의 家事서비스 生産은 技術的으로는 非市場生産의 한 形態로서 취급되어야 하지만 政府單位 및 非營利機關에 의해 實行된 非市場生産과는 다르다. 따라서 같은 分析上 및 政策上의 때문에 다른 非市場生産과 家事서비스生産과를 분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研究·開發의 產出

99. 研究·開發이 政府研究所 혹은 非營利機關에 의해 實行된 때에는 그 生産은 非市場生産으로서 취급되어 그 產出은 위에서 말한 方法에 의해 評價된다. 政府 혹은 研究所와 같은 非營利機關에 의한 研究·開發 行爲는 集合的서비스 供給의 좋은 例이다. 실제 一般적으로 그 研究成果가 社會全體에서 利用可能하고 한 經濟單位에 의한 利用이 다른 經濟單位의 利用可

能性を制限하고 있지 않다.

100. 研究·開發의 活動은 教育과는 다르고, 따라서 研究·開發과 教育의 일쪽이 시행되어지는 大學, 專科大學 등은 原則적으로 相同한 活動에 從事하는 營利企業과 分類되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研究·開發과 教育에 關해서 제각기 別個 生產事業體로 나누어져야 한다. 研究·開發과 教育의 양쪽 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分類에 現實的인 難點이 存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的인 難點에 依해 그 分類가 항상 變하지야 한다고 하는 事實이 예외하게 되어져서는 안된다.

101. 같은 형태의 研究·開發이 營利企業內에서 行해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意味에서도 부수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는 活動이기 때문에 別個事業體로 항상 認定되어야 한다. 企業에 對한 研究·開發은 通常 기존 製品의 品質改善을 포함한 新製品의 發明, 혹은 既存製品을 生産하는 새롭고 보다 效率的인 方法에 關한 發明으로 指稱하고 있다. 研究 成果는 一般적으로는 利用不可能하고 또 特許權 (Patent)에 依해 保護되고 있다. 따라서 社會全體가 가장 事實上 長期的으로는 利益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들을 集成的서비스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營利企業에 對해 行해진 많은 研究·開發은 市場에서의 數賣로 돌아지지 않고 自己計定生産이 된다. 이런 이유에 依해 企業研究所의 產出에 對하여 價値額을 歸屬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그를 위한 유일한 現實的인 價値額을 總生産費用에 보대를 두고 歸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事實上 營利的인 研究·開發事業體의 產出에 對한 評價는 政府 혹은 非營利研究機關에 關한 것과 동일한 方法이 된다. 그러나 營利企業은 定義에서 非市場生産者는 아니기 때문에 「體系」에서 그 研究事業體의 產出을 非市場 (產出)으로 分類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

102. 市場調査는 販賣活動의 한 形態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研究·開發에는 포함할 수 없다. 通常 同一企業內에서 行해

지고 있는 경우에는 附隨的인 것으로 취급되어진다. 물론, 다른 附隨的인 活動과 동일하게 그를 위한 別個의 事業體를 認定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하는 경우까지 疑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小規模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附隨的인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적당하다.

探査에 대한 產出

103. 새로운 礦物, 燃料 혹은 다른 天然礦床을 發見하기 위한, 科學的探査 (Scientific exploration)는 本質的으로는 研究·開發과 동일한 生産 活動의 한 形態이다. 따라서 그 活動이 科學的인 方法을 이용해서 組織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探査活動에 관하여 研究·開發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適當된다. 그 探査가 시행되는 各場所에 대해 別個의 事業體로 認定되어야 한다.

104. 市場生産者에 의해 시행된 경우 그 探査는 自己計定形態의 生産을 構成하고 그 產出額은 負擔된 生産費用을 토대로 歸屬되어야 한다. 研究·開發과 같이 探査를 附隨的 活動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만약 探査가 政府나 非營利機關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事業體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活動은 非市場(活動)으로 취급되고 또 產出額은 生産費用에 기반을 둔 自己計定生産에 參加하는 市場生産者와 동일한 方法으로 評價된다.

105. 探査에 의해 發見된 새로운 地下資源의 價值額은 探査의 產出이 되지 않는다. 新規로 發見된 資源의 價值額은 該當資源에 관해서 所有權을 確立한 經濟單位의 期初과 期末貸借對照表을 연계시키는 것으로써 調整計定 속에 記錄된다.

中間消費

106. 中間消費이라고 하는 것은 該當會計期間中에 生産過程에 의해 變形되어 지든가 혹은 전부 사용되어지는 財貨·서비스인 것이다. 中間投入은 다른 生産過程에서 生産된, 이미 定義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財貨·서비스이어야 한다.

107. 中間投入에 대하여 2가지 형태로 區別할 수 있다. 첫번째는 生産에서 완전히 다 사용되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형태가 변모되어지는 財貨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原材料 혹은 半製品이고 어떠한 方法에 의해 物體的으로 變形되어지거나 혹은 다른 製品에 조립되어 生産過程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한 종류의 變形過程은 財貨 生産에서의 특징이고 ISIC 저층 5개의 분류 즉, 농업, 수렵, 임업 및 수산업부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까지 記錄된 産業에서 볼 수 있다.

108. 投入에 대한 두번째 형태는 서비스의 生産에서 보다 特微적인 것이다. 그것은 中間消費로서 使用되는 것도 있고 最終消費로서 使用되는 것도 있는 完成品—財貨 혹은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문방구, 책, 其他事務用品, 食料, 飲料, 衣料, 醫藥 등 다양한 消費財, 燃料 및 動力, 運輸用品, 貨幣信品과 交換品, 특히 輸送, 事業서비스 혹은 金融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 産業에 의해 生産된 서비스의 範圍에 들어 가는 모든 것이다. 이들의 中間投入은 產出으로서 認識할 수 있는 형태로 生産過程으로부터 재차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意味에서 生産過程에서 일반적으로 모두 消費되어 지든가 혹은 완전히 사용되어 지는 것이다.

109. 물론 各事業體 혹은 各企業은 財貨의 生産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에도 모두 실재에는 두가지 형태로 된 投入의 實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産業이 두번째 형태의 中間投入을 주로 使用하는 것에 대해서 財貨를 生産하는 産業은 壓倒적으로 첫번째 형태에 의지하는 傾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理由에 의해 金融, 流通事業서비스, 保健, 教育, 公共行政과 같은 主要한 서비스産業에 의해 消費된 中間投入은 基本的으로 는 相互간에 類似한 傾向이 있다. 또 동시에 그것은 財貨를 生産하는 産業에 使用된 것 같은 投入과는 系統的으로 다르다.

110. 中間投入으로서 計上되기 위해서는 財貨가 變形되거나 消費되거나 該當會計期間中の 生産過程에서 完全に 消滅되지 않으면 안된다. 生産單位에 의해 所有되고 그 期間中の 一部分만이 완전히 使用된 資本財는 中間投入에는 算入되지 않는다. 耐用年數가 複數의 會計期間에 걸친 耐久財의 漸次的인 使用은 固定資本消耗로서 취급된다. 다음에서는 2가지 형태에 대한 消費의 區別에 대해서 보다 詳細하게 說明한다.

中間消費의 記錄時點과 評價

111. 財貨·서비스의 中間消費는 그 財貨·서비스가 現實의 生産過程에서 供給된 時點에서 記錄되며, 生産者에 의해 그것이 取得된 時點에서 記錄된 것은 아니다. 실재에는 서비스의 投入에서 이 2가지의 時點은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財貨의 投入에 관해서는 生産을 위한 使用에 어느 정도는 이미 取得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中間投入으로서 消費된 財貨·서비스는 그것이 消費된 時點에서의 市場에서 成立하고 있는 購入者價格으로 評價된다. 더욱이, 財貨의 경우에는 그 財貨를 事業體까지 運送하기 위해 購入者가 自己自身에 대해서 支拂하는 輸送費를 포함하고 있을 可能

한이 있다.

112. 실계에는 通常의 경우 事業體는 財貨의 中間消費를 直接記錄하려고는 하지 않고 中間投入으로서의 使用를 의도한 財貨와 原材料의 購入記錄과 在庫로서 保有되고 있는 財貨量의 變化에 關係서 記錄을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中間消費에 대한 測定値는 該當會計期間中の 購入으로부터 在庫增加分을 控除하는 것에 의해 導出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正確한 中間消費의 價額을 購入額으로부터 導出하려고 한다면 在庫變化分을 適當한 方法으로 評價하는 것이 必要하다. 여기에 關涉된 의미는 在庫를 通過하는 各品目에 關係서 그 品目을 위해 記錄된 在庫變化分의 價額과 當初 支拂된 購入者價格과의 合計는 在庫로부터 輸出되어 生産過程에 供給된 時點에서 成立하고 있는 購入者價格과 同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在庫에 殘留시킨 品目과 在庫로부터 輸出된 品目에 關係서 在庫變化分의 測定을 그와 같은 操作이 行해지는 時點에서 成立하고 있는 購入者價格으로 評價하는 것에 의해 發生하면 上記關係가 成立하는 것은 當然이다. 이것은 生産過程으로부터 產出로서 生産된 財貨의 在庫變化分을 評價하기 위한 原則과 동일한 것이다.

113. 따라서 在庫變化를 測定하기 위해 이용되어지는 企業會計上 慣行에 關係서 혹은 生産計定作成의 目的에서는 投入과 產出을 그 消費・生産의 時點에서 成立하는 市場價格으로 評價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企業會計데이터를 國民計定作成에 利用하는한 한계가 생긴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論議를 반복할 必要는 없다. 完成品在庫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지만, 企業會計에서 記錄되고 있는 在庫變化에 對한 價額을 生産計定에서 구하고자 하는 價額으로 變換하기 위해 必要한 調整은 價格變動이 큰 期間에는 不

강하고 困難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난점은 該當會計期間中에 在庫水準이 變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惡化되고 그것은 期末에 한해서 본다면 原材料 在庫水準이 기초와 거의 同一한 水準으로 유지된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114. 만약 生産計에 記錄된 原材料의 購入額 및 生産物의 販賣額이 간단히 附加價值計算에 대한 혹은 企業會計의 경우라면 利潤의 計算에 대한 단계로서 利用할 뿐이라면 投入, 및 產出의 在庫變化를 別度로 計算할 必要는 없다. 保有하고 있는 모든 財貨의 在庫變化에 대한 價值額에 대해서 中間消費用, 혹은 販賣用이라고 하는 區別없이 在庫 데이터를 하나의 數字로 統合할 수가 있다. 그 위에 附加價值는 販賣額과 購入額의 差로 投入・產出 兩面의 모든 在庫變化에 대한 價值額을 표시하는 하나의 數字를 대하는 것으로 計算할 수가 있다. 동일하게 利潤額을 計算하기 위해 必要한 것은 全體合計數字 뿐이다. 그러나 「體系」에서 生産計定은 附加價值計算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總投入 및 總產出의 測定은 그 單獨으로 投入・產出表를 위해 必要하다. 이러한 理由에서 「體系」에서는 個別商品의 購入과 販賣에 관한 데이터를 제각기 대응하는 投入 및 產出에 대한 데이터로서 變換可能한 것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集計되지 않는 형태의 商品別 在庫變化에 대한 데이터가 必要하다.

115. 投入와 生産은 일관된 方法으로 測定되어야 한다. 이미 說明한 것 같이 附隨의 혹은 2次的 活動에 의해 生産된 財貨・서비스가 동일事業體 내에서 주된 生産過程의 投入으로서 순환되는 경우, 그 財貨・서비스는 그 事業體의 產出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事業體의 設定이 的確하다면, 그와 같은 순환과정은 最小限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순환과정은

생김 때 財貨·서비스產出으로서 記錄되지 않는 경우는, 中間投入으로서도 記錄해서는 안된다. 曷으로 同一企業에 속하는 別個의 事業體간의 財貨·서비스 授受와 支拂은 生産側事業體에서는 產出으로서 記錄되고 따라서 受取側事業體에서는 中間投入으로 記錄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의 附加價値가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產出과 投入이 一致하게 評價되어야 한다. 이것을 輸送이 別個의 事業體 혹은 企業에 의해 行해졌을 때에는 2 事業體間的 輸送費가 受取側事業體에 소속된 購入者價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賣場의 事業體에 있어서 附隨的인 活動을 행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單位에 의해 輸送된 경우에 그것은 포함되어져서는 안된다.

中間消費와 本源的生産要素에 대한 支拂의 境界

116. 生産에서 원천의 사용된 財貨·서비스에서도 生産過程 그 自體에 의해 直接的으로 消費된 것은 아니고 그 生産過程에서 勞動에 從事하고 있는 被働者에 의해 消費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財貨·서비스가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被働者에 대한 現物報酬로서 供給된 財貨·서비스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問題가 생긴다. 該當生産過程으로부터의 產出으로서 生産된 財貨·서비스가 그 生産過程에 從事한 勞動者에 대해 勞動者自身の 使用을 위해 無料로 供給된 경우에는 그 財貨·서비스가 現物報酬로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自명하다. 그러나 投入이나 產出이나 生産過程 그 自體에는 直接的인 關係를 갖지 않는 食事, 輸送 혹은 레크레이션의 便宜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財貨·서비스가 被働者에게 供給된 경우에는 이것들도 또 現物報酬로서 취급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중의 어느것은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가

가하는 問題는 있다. 여기에서 中間消費인가 要素支拂인가는 雇傭主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注意해야 한다. 결국 雇傭主의 觀點에서 보면 양쪽다 費用이고 또 어느 쪽을 취급해도 營業剩餘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같은 財貨·서비스를 現物報酬로부터 中間消費으로 옮기는 것은 附加價值 및 要素所得 그리고 GDP 전체를 그만큼 減少시키게 될 것이다. 「體系」에 있어서의 生産의 境界에 영향은 없지만 附加價值 및 GDP의 測定에는 관계가 있는 問題인 것이다.

117. 被傭者は 自身이 支拂할 税金을 免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現金보다도 오히려 現物로 支拂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에는 注意해야 한다. 個人稅率이 높을 때에는 課稅當局이 이같은 所得에 대해 어느 정도 진지하게 課稅하려고 하는가에도 依存하지만 被傭者가 現物報酬를 원하는 강한 동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느 狀況下에서는 다양한 구실로 現物支拂이 激增하는 傾向이 있을 만한 것이다.

118. 一般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被傭者에 대한 財貨·서비스의 供給을 現物報酬로서 취급하는 것이 適當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와 같은 財貨·서비스는 通常·事業體 혹은 企業勞動費用의 一部가 되고 드물게 例外的인 경우에 있어서만 別度の 方法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다. 그 例外라는 것은 만일 財貨·서비스가 雇傭主에 의해 供給되지 않는다고 하면 被傭者가 자신을 위해서는 購入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財貨·서비스와 關聯되어지는 것이다.

119. 예를 들면, 被傭者에 대해 無料로 供給되는 食事は 항상 現物報酬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食事が 無料로 供給되지 않았다면 그 대신에 被傭者는 食料 혹은 食事を 물이나 買의 點에서는 다른 것이

다 해도 자신의 所得에서 購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雇
主에 의한 工場까지의 혹은 工場에서부터 無料輸送의 提供는 貨物報酬로
서 취급되어야 한다. 제나하면 被僱者는 輸送을 준비하고 支拂을 하
지 않으면 안된다. 같은 雇主가 被僱者를 위해서 輸送을 하는 理
由는 어느 地域에서는 雇主가 集合的으로 輸送하는 것이 被僱者
가 혼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效率的이고 보다 안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 雇主가 輸送서비스를 提
供하지 않았다면 雇主는 職員을 증근시켜야 하므로 보다 높은 貨
幣費金を 支拂함으로써 그 증가된 交通費를 보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資金總額의 增加분이 보다 效率的인 集合的輸送을 提供한 費用보다도 큰 것
이 되어 버린다. 集合的 輸送의 提供는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貨幣費金を
支拂하는 것의 代價이고 따라서 그것은 貨物所得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20. 被僱者에게 供給된 財貨·서비스 중에서 貨物報酬로 취급되어선 안
되는 것은 그것이 供給되지 않는 경우라도 被僱者가 購入하려고 하지 않
는 財貨·서비스이고 따라서 자신의 所得에서 購入할 財貨·서비스에 대한
需要를 줄여서까지 獲得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들은 被僱者가
오로지 자신의 일에 대한 職務實行을 위해 사용하는 財貨·서비스를 포함
한다.

121. 被僱者에 대해서 供給된 財貨·서비스 중에 雇主に 의한 中間消費
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a) 道具·備品 혹은 軍需品을 포함한 特別品은 被僱者에 의해 자신들의
수행에 사용된다. 特別品은 한계가 예매한 경우이다. 실제 그것은 때로 職
務을 떠나서 費用되고, 다른 次類에 대한 需要를 減少시킬지도 모른다.

(b) 被働者에 대해 일이 끝난 후 깨끗이 하도록 준비된 샤워, 목욕탕, 혹은 다른 施設・便宜, 勞働性質의 結果로서 必要한 건강진단 혹은 그의 健康체크.

(c) 自宅와 勤務場所의 양쪽에서 떨어진 장소로 移動하여 雇主에 의해 지시받을 것, 長期 또는 短期동안 自宅를 떠나 被働者에게 提供된 호텔 혹은 다른 宿泊設備.

122. 만약 被働者가 일단 그것은 財貨나 서비스에 대한 經費를 負擔하고 나중에 雇主로부터 支拂받는 경우 後者の 支出은 물론 中間消費로 分類된다. 被働者에 관해서는 當初의 支拂도 그 後에 되돌려 받는 것도 記録할 필요가 없다.

123. 위에서 서술한 것 같이 基本的인 判斷基準을 충족시키지 않는 財貨・서비스의 供給은 現物所得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食事, 輸送, 車, 住宅, 保健教育, 혹은 娯樂서비스 등 雇主로부터 제공되지 않으면 被働者가 스스로 준비해서 그것을 위한 支拂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은 형태의 財貨・서비스는 항상 現物報酬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雇主는 保健, 教育, 娯樂・스포츠에 대해 施設・便宜를 提供할 때 個別的 혹은 集會的서비스를 그 構成員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供給할 非營利機關과 동일한 자격을 지니고 行動하게 된다. 雇主에 의해 提供된 스포츠施設・便宜와 같은 集會的서비스의 價額은 被働者間에 平等하게 分配되고 個人的 現物報酬의 部分에 포함된다.

中間消費와 資本支出과의 境界

124. 生産計定에 記録된 中間消費는 生産過程에서 直接消費된 財貨・서비

스를 커버하는 것을 意圖한다. 즉, 會計期間中の 生産으로 變形되거나 完全히 다 사용된 財貨·서비스를 커버한 것이다. 따라서 資本財는 한 期間에 모두 消費된 경우가 없으므로 企業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資本財의 消費, 新設資本財나 研究·開發에 대한 支出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經常支出과 資本支出과의 境界線上에 混雜이 있는 것은 可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支出과 中間消費와의 境界에서 精確히 線을 긋는 것이 必要하다.

中間消費와 總固定資本形成과의 境界

125. 企業 혹은 事業體의 總固定資本形成은 市場에서 販賣되는 것의 購入, 혹은 自己計定生産의 結果로서 該舊會計期間中 資本財의 純取得價値額이다. 한편 資本財라고 하는 것은 生産의 目的으로 사용되어져 典型的으로는 耐久財이고 더욱이 大型이거나 혹은 高價財인 것이다. 여기서 耐久財라는 것은 通常 使用에서는 會計期間內에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財貨이고 그 耐用年數는 2~3 年の 期間으로부터 50 年以上에 걸친다. 그러나 모든 耐久財가 資本財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왜하면 耐久財가 小額이고 싸며 또 相對적으로 單純한 作業을 實行하는데 使用되는 경우에는 다른 취급이 되기 때문이다. 企業에 의한 이와 같은 財貨의 購入은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126. 몇 년간이나 사용한다는 事實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財貨의 實例에는 輪, 삼, 나이프, 도끼, 당치, 나사, 스프링 등과 같은 장비이다.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지는 小型耐久財에 관해서는 以下の 章에서 資本形成의 概念에 관해서 說明할 때 그 點에 관해서도 보다 詳細하게 記述하게 될 것이다.

127. 總固定資本形成에 小額이고 單純 그리고 한 가격의 耐久財를 排除

하는 것은 現實的인 理由로부터 온다. 이들의 對價를 資本財로서 취급하면, 그 耐用年數 및 資本的對價를 推定할 必要가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급을 正當化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와 같은 小型道具를 使用하는 費用이 新規取得價額으로서 記錄되어지는가 혹은 資本的對價의 형태로 記錄되어지는가는 실제에는 「體系」에 있어서 純營業剩餘나 其他 非모우測定에는 近소한 差異가 생기지 않는다는가 혹은 전혀 差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128. 또 維持·修理(部品の)交換과 總固定資本形成과의 사이의 區別도 명확하게 할 必要가 있다. 一般的인 法則으로서의 이제까지 生産에 使用되고 있던 資本財의 維持 및 修理는 中間的對價로서 취급해야 한다. 缺陷部品の 交換을 포함한 維持·修理는 同一事業體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典型的인 附隨的活動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修理·維持로 特性化하고 있는 同一企業內의 別個事業體에 의해 供給받지도 모른다. 혹은 市場메이스에서 서비스를 供給하는 種도의 企業으로부터 購入받지도 모른다.

129. 銷場를 포함한 維持는 항상 中間的對價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동일한 既存資本財의 修理 혹은 既存資本財의 部品交換은 中間的對價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어떠한 修理도 특히 機械의 重要部品이기도 한 缺陷部品の 交換을 하는 修理는 修理가 행하여지기 以前の 性能에 비해 資本財의 性能을 높이는 일이 된다. 必要한 修理·交換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機械의 殘存耐用年數는 0일지도 모르지만 修理는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種류의 重要한 修理는 中間的對價가 아닌 總固定資本形式으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重要한 修理와 그렇지 않은 修理와의 區別은 理論的으로 이상하고 또 실제 問題로서도 實行可能性을 결여한다. 資本財의 期待耐用年數 및 資本財의 投資로부터 期待收益率을 計算

할 때에는 다른 中間費用과 함께 修理·維持는 豫測된 營業費用속에 포함되고 있다. 修理 및 交換의 發生率은 每期間中에 變動한다. 하지만 觀念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要因으로도 또 變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資本財의 耐用期間 全體를 통한 維持·修理·交換의 必要額은 이미 投資收益率의 推定에 資本財의 耐用年數 豫測에 의해 資本消費率을 推定할 때 考慮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要因이 相互關에 關係되어 있고, 修理·維持는 期待正常耐用年數에 대해서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修理·交換의 發生率이 財貨의 耐用年數期末에 增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資本形成의 第二의 現象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正當化하지 않는다.

130. 한편 既存資本財의 所有者는 언제나 그 資本財를 다른 種類의 資本財로 變更하고 혹은 擴大·擴張하려고 하는 可能性이 있다. 그와 같은 意思決定은 예를 들면, 船舶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通常은 建物 혹은 道路와 같은 여러 構築物에 관해서 이루어진다. 建物에 대해서 水平的인 혹은 垂直的인 擴張部分이 附加 되어질지도 모른다. 道路 혹은 水路는 幅을 넓히거나 혹은 延長할지도 모른다. 建物은 大規模로 헐리고 재차 다시 지어진다. 이와 原型가운데 남겨진 것은 歷史的인 혹은 美的인 特權이 있는 部分만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많은 實例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1. 이런類의 變更과 擴張이 資本形成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새로운 資本財의 創造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들의 活動이 修理 혹은 交換이라고 불리워지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명확하다. 따라서 修理·交換이 中間消費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一般의 原則의 例外인 것은 아니다.

132. 修理 혹은 交換은 資本財를 正常狀態로 回復시키기 爲해 資本財의 大·小部品 어떤 것을 바꿀 必要에 臨한 것이다. 尙ほ 交換部品이 때로는 交換前의 部品보다도 우수하고 資本財의 性能 또는 機能에 對한 改善을 奏效한다고 해도 修理 혹은 交換 그것은 資本財의 基本的인 性質, 또는 그것이 사용된 目的을 變換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修理·交換은 性能에 對期的인 改善을 가져오지만 이것은 이를 總固定資本形式으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正當化하는 理由는 되지 않는다. 重要的 修理를 總固定資本形式으로 취급하기 爲해서 중요하지 않은 修理와 重要的 修理와를 區別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도 실제로도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區別은 「體系」에서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면으로 既存의 資本財에 對한 變更 혹은 擴張은 修理·交換과는 區別될 수 있다. 왜냐하면 變更·擴張은 資本財를 回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資本財의 性質을 바꾸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資本財를 變更하는 혹은 擴張한 다고 하는 意思決定은 그 財貨가 본래 갖고 있는 機能을 충분히 完수하고 있을 때 즉, 修理할 必要가 있을 때라도 언제나 이루어질 可能性이 있다.

133. 마지막으로 既存建物 혹은 其他 構築物의 경우 그 變更·擴張活動은 建設活動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注意해야 한다. 修理·維持하는 달리 建設은 緊隨的인 活動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建設이 그 構築物을 所有하는 企業에 對해 自己決定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 活動에 對해서는 다른 事業體로 認定되어야 한다.

研究·開發

134. 事業서비스로서 취급되어져 ISIC의 細分類(class) 7413 으로 목록

과되어져 있는 市場調査와 ISIC의 中分類(division) 73으로 된 科學的性質을 갖는 研究·開發을 區別할 必要가 있다. 市場調査는 會計서비스 혹은 法律서비스와 같은 다른 事業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市場調査가 극히 小規模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수적活動으로서 취급해도 좋다. 市場調査가 同一企業內의 다른 事業體에 의해 행해지고 있을 때, 혹은 外部의 市場調査機關으로부터 購入되고 있는 때에는 그렇게 받은 서비스 혹은 購入된 서비스는 市場調査의 對象인 製品을 產出한다고 하는 生産過程에의 中間投入으로서 취급되어진다.

135. 한편 科學的性質을 갖는 研究·開發의 취급은 다르다. 이와 같은 研究·開發은 生産過程에서 直接的으로 消費되는 財貨·서비스는 아니고 生産水準의 變化에 수반되어 直接的으로 變化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企業에 의해 행해지는 研究·開發의 크기는 當期產出의 水準에는 直接關係없이 그것은 競争上地位의 維持·改善을 위하여 新製品을 開發하거나 혹은 새로운 生産過程을 開發하려고 하는 企業의 欲求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研究·開發은 現在進行中에 있는 生産過程에 대한 投入은 아니므로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결코 研究·開發을 附隨的活動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研究·開發에 關係하고 있는 어떠한 單位도 原則적으로 別個事業體로서 취급되어져야 한다.

136. 따라서 企業에 의해서 自己計定으로 행해지고 있는 研究·開發은 自己計定の 建設에 대한 것과 동일한 方法으로 취급된다. 研究·開發은 企業의 歸屬產出의 一部로서 그 企業內 別個의 事業體에 귀속해야 할 것이다. 政府單位 혹은 非營利機關에 의해 행해지는 研究·開發은 이와 같은 單位의 集合的產出의 一部로 되기 때문에 그것 自體로서는 어떠한 企業의 中間消費에도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探 査

137. 研究・開發과 마찬가지로 礦物・燃料 혹은 地下資源에 대한 科學的 探査는 生産過程에서 直接的으로 消費되는 것 같은 財貨・서비스는 아니고 그 產出水準의 變化에 대해 바꾸는 것은 아니다. 探査는 當期生産으로부터 完全히 분리되며 또 探査에 이용되는 資源의 量은 전히 別當의 要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探査에 관한 支出은 事業體 혹은 企業의 中間消費의 一部로서는 취급되지 않고 결코 附隨的活動으로서도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礦物 등에 대한 科學探査의 취급은 위에서 논의한 研究・開發에 대한 취급과 동일한 것이다.

政府 또는 非營利機關에 의해 供給되는 集會의 서비스

138. 政府에 의해 生産되는 集會의 서비스는 결코 企業의 中間消費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서비스는 公共行政 및 防衛만이 아니고 政府事業體에 의해 實行된 研究・開發도 거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想起해야 한다. 集會의 서비스의 消費을 個別企業에게 配分하는 것은 理論적으로 不適當하고 현실로도 不可能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企業의 中間消費에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139. 한편 企業團體에 의해 所有되고 業界의 利益을 促進하기 위해 存在하고 있는 非營利機關은 실은 市場生産의 한 形態로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論議를 主張할 수 있다. 따라서 團體의 各成員에 의해 支拂된 寄附金이나 讓出金은 各企業에 부여된 서비스에 대한 支拂로서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는 關係하고 있는 企業의 生産過程에서의 中間投入으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은 寄附金으로서 支拂된 금액에 의

에評價된다.

軍事設備

140. 防衛서비스의 生産, 즉 ISIC의 活動 7522에 종사하는 政府事業體에 의해 取得된 모든 財貨는 非耐久財인지, 耐久財인가에 관계하지 않고 中間投入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國民經濟計定에서의 通例이다. 따라서 ISIC 7522로 分類된 軍事事業體에 의해 取得된 船舶, 航空機, 車輛, 그외 다른 設備는 항상 이들이 取得된 期間에 消費된 中間投入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동일하게 軍事事業體에서 使用하는 建物·道路·飛行場·항만 등의 建設은 從來 항상 資本形成이 아닌 中間消費로서 취급되어 왔다. 이것은 活動 7522의 生産을 어떠한 資本의 投入도 없이 오로지 勞動에 의해 生産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의 理論的根據는 아직 說明된 적이 없다. 軍事事業體에 의한 支出을 항상 經濟的인 것으로서 취급해야 하는 理由로서 資產의 耐用年數를 評價하는 것이 不可避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확히 說明하지 않다.

141. 資本資產으로서 취급되어지기 위해서는 財貨는 耐久財라는 것 만이 아니고 복수의 會計期間에 걸쳐 生産에 이용되는 것이기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大砲, 로켓트, 미사일 및 彈頭과 같은 軍事兵器가 전부에 실제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生命·財產을 파괴하는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고 단 그 순간에 남김없이 消費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活動은 어떠한 意味에서도 生産으로 解釋할 수 없다. 따라서 파괴兵器가 設計開發대로의 特定目的을 위해 실제로 이용될 때에 그 使用을 經濟的인 生産過程에의 投入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명백하고 軍事設備를 資本財로서 취급하는 것을 주저한다. 따라서 軍事設備를 生産要素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의 근본이유에는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142. 그러나 防衛 혹은 戰爭阻止라는 생각은 兵器는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期待에 근거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防衛 혹은 安全의 提供은 生産의 한 形態로서 解釋할 수가 있다. 실제 이에 의해 사람들은 안목을 얻고 있고 個別的으로 支拂하는가 集團적으로 支拂하는가는 別個로 사람들은 그에 대한 支拂을 기여이 量한다. 특히 다른 生産의인 活動과 마찬가지로 防衛의 提供은 勞動以外에 資本의 投入 즉, 복수의 會計期間에 걸친 一定資本財의 실제적인 利用과 消費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防衛의 生産에 이용되어지는 資本財를 認定하려고 하는 때에는 현실로 使用되고 더욱이 다른 형태의 生産活動과 대개 같도록 使用된 耐久財와 그것이 豫定된 것 같은 特定目的을 위해서는 결코 使用되지 않지만, 만약 使用되어져도 生産過程에서 投入으로서는 되지 않도록 耐久財와 區別할 필요가 있다. 基本的으로 이 區別은 經濟全體를 통해서 使用되는 것같은 通常의 資本財와 戰時에 使用되는 것을 豫定한 特別 目的을 갖는 特殊的인 軍事設備과의 差異인 것이다.

143. 이 論法에 따르면 大砲, 로켓트, 미사일 및 2彈頭·地下格納庫는 資本財로서 취급되어져서는 안된다. 특히 이 論法을 擴張하고 이같은 兵器를 운반하거나 投下하거나 하는 任務의 機能을 갖는 軍艦, 潛水艦, 戰艦, 목적기 및 裝甲車輛이 資本財로서 취급되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適當하다. 한편 이상의 船舶, 潛水艦 혹은 航空機에 의해 基地로서 使用된 機場, 항만 혹은 다른 施設은 非軍事의性質을 갖는 전히 다른 目的을 위해서도 다소간의 改修를 실시하여 혹은 전혀 改修없이 使用될 수 있다. 현실에도 이와 같은 施設이 軍事·民間의 兩目的에 使

用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더욱이 이施設の 軍에 의해 使用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使用되어도 本質적으로 그 利用方法은 같다.

144. 이런 理由로 軍事事業體에 의해서 取得된 耐久財 가운데 어떤 형태의 것이 消費財로서 취급하는지를 提案한다. 즉, 그 積極的 利用方法이 과격적이고 生産過程으로 投入된다고 볼 수 있는 財貨를 消費財로서 취급한다. 실제에는 그러한 財貨는 製品分類, 즉 「中心製品分類(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 의해 認定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軍事兵器 및 그 機械이 이와 같은 兵器를 운반한 하는 車輛, 船舶 및 航空機이다. 한편 軍인이 利用하기 위한 建物の 建設 및 軍事事業體가 사용하기 위한 道路, 교량, 비행장, 항만 등의 建設은 資本形式으로서 취급한다. 특히 民間事業體에 의해 非軍事的目的을 위해 使用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機械·設備도 資本形式으로서 취급한다. 예를 들면, 人間 혹은 物資의 輸送을 위해 이용되는 車輛, 船舶 혹은 비행기 및 전투터, 사무기기 및 設備 등이다.

145. 銃砲, 手榴彈, 다른 輕兵器 및 裝甲車輛의 경우 軍事的이 아니다. 따라서 ISIC 7522에는 분류되지 않는 事業體로 取得되어 使用되고 있다. 그러한 事業體는 國內의 安全, 治安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ISIC 7523-즉 公共秩序, 安全活動-으로 分類된다. 특히 輕兵器 및 裝甲車輛은 商業서비스로서 安全서비스의 供給에 관련하여 ISIC 分類 7492로 分類된 事業體로 取得될지도 모른다. 이들을 資本財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論議가 있을 수 있지만 大規模로 無差別한 損害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로켓트, 미사일, 大型兵器의 경

우만큼 強力한 論議는 아니다. 그래서 가령 軍事事業體에 의해 取得되는 同種의 兵器類가 中間消費로서 취급된다고 해도 非軍事的事業體에 의해 取得된 兵器 혹은 裝甲車輛은 資本財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146. 軍隊에 의해 統制된 病院, 大學, 學校 등은 生産을 위한 別個의 事業體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ISIC 7522 속에 分類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들은 ISIC의 中分類 80 및 85 속에 適當한 細分類에 넣어야 한다. 經常支出과 資本支出의 區別은 같은 産業에서는 누가 그것을 所有하지 않고 支配하고 있는가에 關係없이 모든 事業體에 대해서 동일하게 알으면 안 된다. 따라서 軍의 病院 혹은 教育關係事業體의 支出은 非軍事事業體에 의한 支出의 경우와 동일한 方法으로 分類한다. 따라서 軍病院이나 學校의 建設 및 그들이 取得하는 機械·設備는 항상 資本形式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中間消費와 附加價値의 境界

147. 이미 나타난 것과 같이 附隨的活動에 의해 生産된 서비스는 同一事業體內에서 小規模로 生産·消費되든지 또는 專門인 生産者 즉, 同一企業內的 專門의事業體 혹은 市場의 專門의生産者로부터 얻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이다. 만약 事業體가 이들의 서비스중 어떤 것을 附隨의生産에 의해 얻는 것에서 專門의生産者로부터 얻는 것으로 완전히 바꾼다면 그 결과는 中間消費를 增加시키고 附加價値를 減少시키는 것이다. 그 理由는 附隨的活動에 의해 生産된 서비스는 그 活動에서 產出 혹은 事業體의 主要活動에의 投入으로서도 결코 明示의으로는 記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비스의 生産費用만이 記錄되는 셈이지만 附加價値의 一部分

되며 設備者報酬 및 資本消耗은 포함하고 있다. 附隨의 生産者 專門의 生産者 간의 變換에서 발생하는 中間消費의 附加價値에 대한 比率의 變化는 生産技術이 아닌 生産體制의 變化를 반영한 것이다. 記錄된 投入·產出比率에는 變化가 있지만 利用 및 基本의 技術에 있어서 效率에 다소간의 上昇이 있는 경우는 많다고 해도 本質的으로는 같다.

148. 技術은 本質的으로 변하지 않은 채 있지만 生産過程에서 中間消費와 附加價値의 境界가 變化하는 第二의 경우가 存在한다. 이것은 事業體 또는 企業이 機械를 購入하지 않고 빌리는 것으로 결정할 때 생긴다. 운송·리스의 活動에 관해서는 이미 本章에 기술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使用者가 다양한 理由로 設備를 購入하기 보다는 오히려 빌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 理由는 設備가 계속적으로 必要하다고 하는 可能性, 使用者가 새로운 製品 혹은 편리하게 利用하기 위해 頻번하게 設備를 바꾸는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使用者가 복잡한 장치의 유지 및 修理의 責任을 다른 階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 등이다.

149. 使用者가 1개의 設備를 購入하지 않고 임대할 때 지불되는 賃賃料(rent)는 使用者의 中間消費一部分이 된다. 즉, 서비스의 購入으로서 취급된다. 이미 說明한 것 같이 리스會社의 所有者는 設備에 대해서 單純한 賃賃料以上の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따라서 支拂되는 賃賃料는 通常 該會社 計期間中の 設備에 대한 資本消耗 보다도 상당히 큰 것이다. 賃賃料는 賃賃된 設備1대에 대한 資本消耗는 물론 賃賃者의 營業費用, 金利負擔分 및 利潤도 보전(커버)해야 한다. 따라서 設備를 購入하지 않고 오히려 빌리는 것의 效果는 設備의 資本消耗分以上 보다도 상당히 큰 金額을 附加價値에서 中間消費로 옮기는 것이 된다.

150. 生産을 組織하는 方法과 그것을 費用하는 方法에 의해 中間消費과 附加價值사이의 生産費用의 配分이 影響을 받는 第三의 경우도 存在한다. 建物에 대한 賃料(렌트)는 機械 혹은 設備의 賃借에 대해서 支拂되는 賃料와 同一한 方法으로 취급된다. 즉, 中間消費의 一部分이 되는 經常費用으로써 취급된다. 그러나, 한편 金庫에 의해서 占有되는 土地에 대한 賃料(렌트)는 提供된 서비스에 대한 支拂로서는 생각되지 않고 附加價值에서 이루어진 移轉으로서 그 土地所有者的 財產所得의 一部分이 된다. 建物 및 그것이 세워져 있는 土地가 賃借되어 賃借되고 부가된 賃料가 그러한 것을 區別하지 않고 影響을 及ぼ하고 있을 때에는 支拂된 賃料全體가 財產所得으로써 취급되고 따라서 中間消費로부터 除外된다.

151. 따라서 建物を 賃借하든지 購入하는 것에 관한 意思決定이 中間消費과 附加價值의 區分에 影響을 미치는 것에 반하여 生産이 發生하는 土地의 賃借나 購入에 관한 意思決定은 그 區分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建物の 賃借가 生産計定에 미치는 歸結은 本質的으로 運用 리스라는 조건하에서 設備을 賃借하는 것과 같게 된다.

152. 따라서 中間消費水準 및 그 總產出額에 관한 比率은 生産過程이 組織되는 方法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는 3개의 요인이 存在하고 있을 것이다. 즉, 附隨的活動이 專門的인 生産者에 及ぼ하는 程度, 機械 및 設備가 구입되지 않고 오히려 運用·리스로서 賃借되는 程度, 建物が 購入되지 않고, 오히려 賃借되는 程度이다. 本質的으로 同一한 基本的生産技術을 利用하고 있는 生産者에 關해서 大體 이러한 3要因의 共同效果는 매우 고고, 同一國內에서 장기적으로 또 各 나라마다 中間消費의 總產出額에 대한 比率에 커다란 變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生産計定과 附加價值

153. 「體系」는 2가지 형태의 生産計定을 要求한다. 즉, 部門別 生産計定과 産業別 혹은 活動類型別 生産計定이다. 두 형태 모두 個別 事業體의 生産計定을 그룹화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部門에 대해서서 生産計定을 얻기 위해서는 各 事業體를 企業에서 재차 정리한 뒤에서 서술했던 것과 같은 部門으로 그룹화할 必要가 있다. 실제로는 原대미디가 事業體에 있고 企業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경우 事業體에 있어서 企業에 이따를 再構成할 必要는 거의 없다. 우선적으로 同一企業에 속하는 事業體間의 財貨·서비스의 교환을 잊지 않고 그 企業의 產出 및 投入에 포함해 두는 것이 重要할 것이다.

154. 産業別 生産計定은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에 따라 事業體를 그룹화함으로써 産業을 構成하여 일어난다. 「體系」의 投入·產出表에서는 産業別 詳細한 生産計定이 상호간에 關聯되어진 형태로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産業別 生産計定の 問題를 여기에서 특히 강구할 必要는 없다. 投入·產出表 그것에 대해서는 以下の 章에서 상세히 檢討된다. 따라서 部門別 生産計定만이 本章에서 考察된다.

155. 生産計定에는 3개의 基本的構成要素가 存在한다. 즉, 產出과 中間消費 및 균형항목으로서의 粗附加價值이다. 粗附加價值는 그 事業體內에서 發生된 生産의 價値額에 관한 概念이다. 그것은 2개의 코호디터·플로우 (財貨流) 價値額의 差에 의해 측정되고 또 事業體의 產出價値額이 그 中間投入의 價値額을 상회하는 金額으로서 定義된다. 따라서 粗附加價值에 대해서서 詳細한 定義는 2개의 코호디터·플로우의 詳細한 定義에 從속하게 된다. 만일 產出 및 中間投入의 內容과 評價에 대해서 正確한 特定化가 行해지지

된다면, 이미 粗附加價値의 定義에 對해서 兪중 詳細하게 說明할 必要가 實제로 없게된다. 「粗(gross)」라는 말은 生産過程에서 消費된 資本財의 價値額이 控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156. 粗附加價値는 生産計定的 均衡項目이고 따라서 모든 均衡項目 혹은 計算上の 잔차와 그 性質을 共有하고 있다. 粗附加價値 그것 自體가 크오 디어·플로우는 아니고 어떤 특정 財貨·서비스의 集會이라고는 간주될 수 없다. 粗附加價値를 表現할 수 있는듯한 物理的單位는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그것 自體 直價의으로 價格要素와 數量要素로 分解될 수 없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附加價値를 特定の 價格集會으로 判定되는 것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 事業體의 投入와 產出을 構成하는 財貨·서비스를 評價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價格을 變更함으로써 附加價値의 代替的尺度를 構成할 수는 있지만 附加價値 그 自體는 價格의 次元을 갖지 않는 것이다.

157. 生産過程에서 發生하는 粗附加價値에서 支拂되는 3種類의 經費 또 는 負擔이 存在한다. 그러한 것은 (a) 被働者報酬, (b) 固定資本消耗, (c) 生産에 關한 稅金이다. 各 項目의 詳細한 내용에 關해서는 다음 章에 서술 되어 있다. 이러한 3項目을 控除한 뒤에 生産過程에서 發生하는 純營業剩餘가 均衡項目 혹은 計算上の 잔차로서 얻어진다. 따라서 純營業剩餘의 定義로부터 이 3項目과 純營業剩餘의 合計額은 粗附加價値와 같다.

158. 本章의 앞절에서 中間消費와 產出을 定義했을 때, 그러한 것이 財貨·서비스의 消費·生産時點에서 成立하고 있는 市場價格으로 評價될 必要가 있다는 것이 強調되었다. 中間投入의 경우 適切한 價格은 生産이 行해지는 時點과 場所에서 財貨·서비스를 引渡해 받기 위해서 購入者가 支拂

해야 할 價格이다. 販賣業者 혹은 小賣業者로부터 購入된 財貨에 대해서 購入者에 의해서 支拂되는 價格은 商業마진을 이미 포함한 것이고, 이 마진에는 流通業者에 의해서 負擔되고 있는 輸送費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財貨가 販賣業者로부터 혹은 小賣業者에게서 혹은 直接 그 生産者로부터 구입했다해도 購入者價格에는 生産이 행해진 場所에서 財貨를 輸送하는 사이에 購入者 자신이 負擔하는 輸送費를 포함해야 한다. 中國投入은 「體系」의 모든 計定 및 附表을 통해서 위에서 定義된 購入者價格에 따라 評價된다. 附加價値稅制가 실시되고 있을 때에는 控除可能 附加價値稅는 현실에서 購入者에 의해 支拂된 價格의 一部는 아니므로 投入의 購入者價格에는 그 投入에 대한 控除可能한 附加價値稅를 포함하지 않는다.

189. 따라서 產出으로서 生産되는 財貨·서비스評價는 그정도 간단한 것은 없다. 生産過程에서의 產出으로서 生産된 財貨·서비스에 稅金이 부과될 때 과는 꼭 價格은 稅金을 포함한 형태로도, 稅金을 중제한 형태로도 表示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稅金은 產出에 대한 稅金이라고 불리운다. 즉, 그것은 產出稅 以外の 生産에 關聯된 稅金인 給與稅 혹은 財產稅와 같은 生産者가 自分の 生産活動의 結果로써 負擔하는 다른 稅金과는 區別되는 것으로 生産物에 賦課되는 稅金인 것이다.

190. 과는 꼭의 價格이 그 關된 生産物에 대한 產出稅를 포함하여 측정되었을 때, 그 價格은 生産者價格이라고 불리운다. 실제로는 生産者가 購入者로부터 產出稅를 받아 모아 그 後 政府에 그 稅金을 支拂하고 있다. 과는 꼭의 價格이 產出稅를 除外하고 측정되었을 때 그 價格은 基礎價格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生産者에 의해서 현실에 留存된 販賣1單位當의 金額이다.

161. 生産者價格 혹은 基礎價格이 파는 쪽의 觀點에서 「市場價格」인가 어떤가는 自明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生産者가 產出稅를 포함한 한개의 價格만을 붙인 것이라면 이것을 현실의 거래가격 혹은 市場價格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生産者의 請求書 혹은 總款은 基礎價格과 產出稅를 별도로 別記할 可能性이 있다. 이 경우 파는 쪽은 產出稅의 負擔人으로서 別個의 資格으로 行動하게 되어 基礎價格을 파는 쪽과 사는 쪽과의 사이에 실제의 거래가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 分應는 附加價值稅制下에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편 購入者의 觀點에서는 市場價格은 必然적으로 控除可能한 附加價值稅를 제외한 產出稅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 사는 쪽과 파는 쪽을 대칭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市場價格은 基礎價格이 아니고 오히려 生産者價格이어야 한다.

162. 따라서 產出을 評價하는데 파는 쪽 價格中—生産者價格—혹은 基礎價格—產出을 評價하는데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事業體의 產出價值額. 따라서 粗附加價值에 2개의 測定方法이 存在하게 된다. 可能한 限 基礎價格이 部門別生産計定에 있어서는 利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것은 生産者가 현실에 自身の 產出에서 받아 들인다. 또 生産上 意思決定의 基礎價格이다. 특히 그러한 것은 때때로 生産者를 대상으로한 統計調査에서 구체적 蒐集된 價格이다. 그러나 혹시 產出을 基礎價格으로 評價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게 되면, 生産者價格을 대신하여 利用하는 것이 容認된다.

163. 「基礎價格을 利用한 粗附加價值」라는 表現은 產出을 評價함에 있어 基礎價格을 利用하여 粗附加價值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의 總記法으로서 사용된다. 「基礎價格表示의 粗附加價值」라는 表現은 附加價值. 그것이

이런 價格集合에 의해서 表現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生産者價格을 이용한 粗附加價值」라는 表現은 代替的 評價원자의 結果를 表現하는 것에 이용된다.

104. 粗附加價值가 生産者價格을 이용해 計算될 때, 그 소비자에 의해서 支拂되고 事業體 혹은 企業의 生産者價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稅金이 存在할 경우, 國內의 모든 事業體 혹은 企業에 의한 粗附加價值의 合計는 支出面에서의 GDP, 즉, 最終支出合計 이너스 輸入되는 額에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稅金의 重要的 例는 輸入關稅이고 또 最終소비자에 의해서 支拂되는 非扣除的 附加價值稅이다. 따라서 購入者價格, 즉, 市場價格으로 측정된 支出面에서의 GDP는 모든 事業體 혹은 企業에 對해서의 生産者價格을 이용한 粗附加價值合計를 最終 그 소비자에 對해서 直接부과된 財貨·서비스에 對한 稅額分만큼 超過하고 있다.

105. 粗附加價值의 計算에 있어서 產出의 評價에 基礎價格을 이용했을 때에는 購入者價格表示의 GDP는 모든 事業體 혹은 企業에 對한 粗附加價值의 合計額을 財貨·서비스에 對하여 부과된 모든 稅金總額分만큼 즉, 事業體의 產出에 對한 모든 稅金總額과 직접 最終소비자에 의해 支拂되는 財貨·서비스에 對한 기타 稅金과의 合計額만큼 超過하고 있다.

106. 給與稅 또는 財產稅와 같이 生産에 關聯된 기타 稅金은 定義에 의해 事業體 혹은 企業에 의해 產出되며 生産된 財貨·서비스의 數量 또는 價値額 어느 것인가에 對해서 評價되는 稅金은 아니다. 이러한 稅金은 產出 1單位當 賦課되지 않기 때문에 產出 1單位的 價格에서 扣除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產出 1單位를 評價하는 3가지는 아니고 2가지의 可能

한 方法一각, 生産者價格과 基礎價格間에 存在하게 된다. 물론 단일 事業體 또는 企業의 製品이 하나 뿐이라면 產出1單位當의 平均稅額을 얻기 위하여 生産에 關聯된 기타 稅金의 合計額을 算術的으로 분할하여 계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產出價格에서 控除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產出1單位當의 平均被課者報酬 또는 平均資本報酬을 控除하는 것 보다는 正當한 것 이라해도 아직 關心을 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하나가 아닌 많은 製品을 生産하고 있는 企業에서는 稅金을 여러 가지 生産物에 相當하는 手段이 없기 때문에 產出1單位當의 平均稅額을 計算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167. 따라서 事業體 或이나 企業의 純附加價値를 第三의 方法으로 產出을 評價하려고 하는 것으로 計算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生産에 關聯한 其他 稅金은 純附加價値로부터 支拂되는 支出金 또는 負擔金이다. 이것들은 純附加價値에서 資本消耗分이 控除되는 것과 거의 같고 一括해서 控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基礎價格을 이용한 純附加價値에서 生産에 關聯한 其他 稅金을 控除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結果는 마치 그것이 產出을 評價하는 第三의 價格集合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純附加價値에 대한 다른 程度로 解釋할만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解釋은 資本消耗을 純附加價値에서 控除함에 따라 얻어지는 純附加價値를 마치 그것이 產出을 評價하기 위한 特別한 「純」價格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附加價値라고 解釋하는 것과 같이 不適合하다.

168. 傳統的으로 國民經濟計定에 있어서는 生産에 關聯한 其他 稅金控除에 의해 減額되는 基礎價格을 이용한 純附加價値는 「要素費用表示의 純附加價値」라 한다. 用語로서 理想的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稅金은 限定된 有用性때에

없고 많은 使用者는 要素費用表示에 의한 粗附加價值와 基礎價格을 이용한 粗附加價值를 區別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區別에 신경을 쓴다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目的을 위하여 讀者를 선택할 것이다.

169. 물론 純營業剩餘는 粗附加價值를 計算하는 경우에 產出을 評價하기 위하여 生産者價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基礎價格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이 된다. 基礎價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粗附加價值에서 生産에 關聯된 여러 稅金만이 控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生産者價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粗附加價值에서 控除되는 것으로서의 生産에 關聯된 稅金은 生産에 關聯된 其他 稅金以外에 產出에 대한 稅金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生産計定에 잇따라 部門別計定, 部門別 生産計定에서 產出을 評價하기 위하여 利用되는 價格選擇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0. 產出의 價額額이 歸屬된 경우 產出에는 稅金이 賦課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生産者價格과 基礎價格의 區別은 關係없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價額額이 市場에서 팔리는 것과 같은 製品의 價格에 기인하여 歸屬된 때에는 選擇되는 價格은 原則적으로 基礎價格이어야 한다. 適當한 市場價格이 存在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產出은 현실의 혹은 推定된 生産費用에 기인하여 評價되어야 한다. 즉, 현실의 혹은 推定된, 中間的費+被賣者報酬+(혹 있다면)土地에 대한 賃賃料+固定資本消耗의 合計額으로서 測定된다. 이 경우 粗附加價值는 위의 마지막 3項計合計額과 같게 된다. 또 위에서 서술한 적도 있지만, 生産者價格을 이용한 粗附加價值와 基礎價格을 利用한 것과의 區別은 여기에서는 適當하지 않다. 事業體의 產出이 完全하게 同質이 아니었을 때에는 產出1單位當 平均歸屬價格을 推定하는 것조차 不可能하다.

II. SNA (國民經濟計定體系) 改訂에 관한
國際機構 會議資料

第 1 章 OECD 國民計定 專門家會議 資料

第 2 章 SNA改訂事業의 進展에 관한
UN통계국 회의자료

第1章 OECD의 國民經濟計定 專門家會議
(1988年 5月9~11日) 概要

- SNA 改訂 -

序 言

OECD의 國民經濟計定 專門家會議는 1988年 5月 9일부터 11일까지 3日間 OECD本部에서 2年만에開催되어 23個國(美國은 缺席) 37人的 本門家과 國際聯合統計局, EC統計局, IMF에서 證서버가 出席해서 多論議 題에 대한 討論을 했다.

- (1) SNA評價 進捗狀況
- (2) 資本移轉과 經營移轉의 區別
- (3) 세프노딜 및 害에 對한 政府補償의 國民經濟計定上의 取扱
- (4) 資本 스톱의 測定
- (5) 其 他

이번 會議의 議長은 OECD事務局의 사프론(J.E. Chapron)이 맡았거 만 그 日程이 過半을 第1議題인 SNA의 評價에 關한 討論에 써버렸다. 會議의 概要는 以下와 같다.

1. SNA의 概況¹⁾

SNA의 改訂 作業은 1991年의 새로운 國際聯合 가이드 라인의 決定을

註1) SNA의 評價에 關해서는 一橋大學 教授 倉林義正氏의 「SNA의 評價 動向과 問題」(季刊 國民經濟計定 62年度 第3號 No.76所載) 및 「SNA의 現狀과 問題」(「經濟研究」 第39卷 第2號 April, 1988) 에 背景 및 問題點이 詳述되어 있다.

日標로 (現行의 SNA는 1968年 國際聯合 가이드 라인에 依據하고 있다) 國際聯合 統計局, 世銀, IMF, EC統計局 및 OECD 스태프에 의한 國際 機關 作業그룹(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에 의해 進行되고 있다. 이제까지 以下の 6個 專門家 그룹의 會合이 行해져 왔다.

SNA 編造에 關한 專門家會合(1986. 6.23 - 27)

價格·數量比較에 關한 專門家會合(1986. 11.10-14)

海外去來에 關한 專門家會合(1987. 3.23 - 4. 2)

家計部門에 關한 專門家會合(1987. 8. 30 - 9. 4)

公的部門에 關한 專門家會合(1988. 1.25 - 29)

生産計定과 産業連關表에 關한 專門家會合(1988. 3.21 - 30)

上記 會合에 次해서 1988年 9月에는 金融計定과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 會合이, 또한 1989년에는 SNA와 MPS(物的 生産體系)의 연결에 關한 專門家會合이 開催될 豫定이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의 草稿는 OECD 事務局 經濟統計局의 經濟統計課長인 힐(T. P. Hill)이 國際聯合의 委囑을 받아서 이를 맡게 되었다. 이 草稿는 專門家會合의 參加者에 의한 「SNA 調整 그룹」에 의해 檢討된 後 各國에 配布될 豫定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國際聯合 가이드 라인은 1991년에 國際聯合 統計委員會에서 決定될 豫定이다.

本會談에서는 이제까지 開催되었던 6個의 專門家會合의 檢討 結果를 綜合한 事務局 報告書에 의해 A. 現行 SNA의 變更를 包含하지 않는 合意點 B. 現行 SNA의 變更를 包含하는 合意點 C. 專門家 그룹에 의해 討論되었지만 最終 決定에서 이르지 않은 事項의 願으로 討論가 進行되었다.

A. 現行 SNA의 變更를 包含하지 않는 合意點

이런 SNA의 評價에서는 現行 SNA를 大幅으로는 바꾸지 않기로 하고

있다. 그러기위해 專門家그룹은 많은 論點에 대해 現行 SNA의 規定이나 定義를 變更하지 않기로 했다. 主要한 論點은 아래와 같다.

核心計定

核心計定(Core Accounts)은 SNA의 構造에 關해 네덜란드 中央統計局으로부터 提案된 것으로 核心部分(基本表)에는 歸屬計算部分을 除外한 實際의 市場去來만을 記錄하고 歸屬計算部分을 別表로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經濟計定 시스템의 特定의 一部(Sub-set)를 導出에서 他部分보다도 基本的인 核心이라고 定義하는 것은 極히 困難하다는 것으로부터 改訂 SNA에서는 核心計定을 設定하지 않기로 하였다.²⁾

投入產出

投入產出의 Frame work는 改訂 SNA에서도 主要部分이 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商品×商品 또는 產業×產業의 매트릭스의 記述를 줄이고 供給과 處分(U表, V表)에 加重值을 한다는 記述를 하고 있다.

制度部門別 分類

現行 SNA의 制度部門別 分類는 基本的으로는 變更하지 않지만 對家計 民間非營利團體는 家計部門의 一部(Subsector)로 한다. 制度部門別 分

註2) 核心計定에 對해서는 前回の OECD 國民計定 61年度 第2號 No.71 pp.95 參照)

核心計定の 提案에 對해서는 C.A. Van SOCHOVE & H.K. Van TUINEN "Flexibility in the Next SNA: the Case for an Institution Core,"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umber 4 December 1987 參照.

회에 따라서 네덜란드 中央統計局의 보스(C. Van den Bos)가 報告書를 提出하였다. 이 報告書에서는 民間企業을 國內企業과 國際企業으로 區別하고 法人企業과 準法人企業을 分離할 것 등이 提案되고 있다. 本會議에서는 現行 SNA의 企業의 分類(公的對民間 및 金融對非金融)에서는 充分치 않은 것, 따라서 改訂 SNA에서는 보다 詳細한 分類을 使用하여야 할 것 이라는 點에서 一般의 支持를 얻었다.

産業과 其他 他生産者

産業과 其他 他生産者의 區別 및 「商品」과 「其他 財貨·서비스」의 區別은 改訂 SNA에서도 계속한다. 단 用語로서는 市場生産者(Market-Producer)와 非市場 生産者(Non-Market Producer)로 變更된다.

其 他

其他 現行 SNA와 變更이 없는 點의 主要事項

- 資産의 損益은 所得支出計定에 包含되지않고 調整計定에 包含된다.
- 居住者, 非居住者의 區別은 1年 原則을 利用된다.
- 企業의 最終消費支出이라고 하는 概念은 使用 않는다.

등이 나타나 있다.

B. 現行 SNA의 變更를 包含한 重要點

計定の 構造

計定の 構造에 대해서 現在 所得支出計定과 資本調達計定으로 나누어져 있는 根本計定の 構造變更이 提案되었다. 여기서 提案된 計定表(附表1)는 制度部門別 分類로 計定設計를 一貫시킨것이지만 本會議의 參加者로부터는 「附表의 制度部門 區分中 「企業」에 包含되는 數值에 대해서 上段(生産/供給과 使

用)의 生産單位로서의 「企業」에 包含되는 것과 上段(所得支出)의 末末主體로서의 「企業」에 包含되는 것과는 性格이 다르고 兩者가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등의 意見이 나왔다. 이 때문에 附表1에는 보다 詳細한 說明을 보려는 등의 檢討가 必要한 것이 確認되었다.

住民總消費(Total Consumption of the Population)

住民總消費은 MPS나 分布統計에서 利用되고 있는 것과 類似한 概念으로 家計消費支出에 政府 및 民間非營利團體에 依り 提供되는 家計에 直接 주는 便益(例들들면 教育, 保健等)을 더한 것이다. 改訂 SNA에서는 이 새로운 概念을 導入할 것이 提案되고 있다. 이 概念에 對해서는 家計消費의 國際比較性이 높아지게 되는 등 參加者로부터는 基本的으로 이것을 支持하는 意見이 表明되었지만 그것과 同時에 問題點도 指通되었다. 즉, 「政府支出中 무엇이 個體의 家計을 爲한 支出에 該當하는가 明確한 分類 가 되어있지 않다.」 「새로운 消費概念에 對해서 必然적으로 새로운 所得 概念이 考證되고 있지만 後者에 對해서는 定義等도 분명히 하고 있지않다.」 「政府支出中에는 家計에 對한 것뿐만 아니고 個體 生産者에 對한 것 도 있지만 이것을 家計에 對한 支出과 類似한 取扱을 하지 않는것은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등의 意見이 나왔다.

EC統計局의 代表로부터는 「現行 民間消費支出과 政府消費支出項目은 새로운 概念과 並行해서 계속 使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系列의 續性과 同時에 어느部門이 그 支出을 負擔했는가 하는 情報도 重要하기 때문이다.」는 意見이 있었다.

自己消費을 爲한 生産

自己消費을 爲한 生産에 對해서는 現行 SNA에서는 第1次 産業의 生産

物에 있어서 生産領域에 包含시키고 있다. 이에 對해 이번의 改訂 SNA에서는 「市場에서 購入 可能한」 生産物은 自己消費을 위한 生産에 包含시킬 것이 提案되고 있다. 이는 自己消費을 위한 生産比率이 높은 途上國을 對한 取扱이지만 參加國들은 「모든 財貨에 對해 自己消費을 위한 生産을 GDP에 包含시키는 것은 先進國에 있어서도, GDP를 大幅으로 擴大하는게 될 수 있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다. 때문에 改訂 SNA에서 生産活動에 對해 自家消費을 위한 生産의 類型 목록표를 나타내 주는 것이 當연하다고 하는 提案이 있었다.

違法活動 및 地下經濟活動

改訂 SNA의 規程에서는 그 自體違法인 活動과 그 自體는 違法이 아니지만 稅金을 免하기 위해 非法 經營되는 地下經濟活動과의 區別을 分明하게 하기로 하였다. 參加者들은 「地下經濟活動의 推計는 情報가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GDP에 對하면 GDP의 國際比較가 困難하게 된다」 등의 指摘이 있었다.

公企과 民間

非金融法人과 金融法人은 現行 SNA에 있어서도 「公企」과 「民間」으로 區分되고 있지만 改訂 SNA에서는 政府가 그 企業의 大多數의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경우 및 政府가 株式의 過半數를 갖고 있지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企業의 經濟活動을 支配하고 있는 경우는 公共企業으로 하고 있다. 參加者들은 「提案되고 있는 公企과 民間의 區別에서는 實際 區別을 行하는는 充分치않고 各國의 國民經濟計定 擔當者가 區別을 容易하게 行할수 있는 보다 具體적인 가이드라인이 必要하다」고 하는 指摘이 있었다.

直接投資

IMF의 國際收支提要 4版(1977年)에서는 直接 投資家에 歸屬하는 再投資收益은 直接 投資에 包含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改訂 SNA에서는 上記의 國際收支表의 取扱과 一致性을 갖도록 再投資 收益을 海外去來計定에 包含시킬 것이 提議되고 있다.⁴⁾ 本會議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統計局 代表로부터 再投資 收益의 取扱에 對해 提呈된 報告書에 對해 發言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統計局으로서의 再投資收益의 SNA 上의 取扱을 IMF 國際收支提要에 對해 經常計定の 投資收益 貸渡과 資本計定の 直接投資 借渡에 記載하는되는 反對하고 SNA와 國際收支表의 一致性을 갖기 爲해서는 再投資收益을 貸借對兩表과 調整計定の 兩邊에 나타나거나 또는 國際收支表上에서 再投資收益을 附表의 形態로 別處하거나 하는 어느 한 方式을 採擇한다고 하는 意見を 나타낸다.

參加者 中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見解를 支持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 各國間의 金融請求權을 測定하는 見地에서 國際收支表과 같은 取扱을 支持하는 사람도 있었다. 議長演에서도 이 點에 關해서는 1988年 9월에 召開된 金融計定과 貸借對兩表에 關한 專門家會合에서 다시 論議된 것이지만 이 경우 改訂을 行하는데 對한 意義와 同時에 海外 會社의 再投資 收益을 어떻게 測定할 것인가 하는 實際上的 問題도 討論된 것이라고 하는 意見

註 3) The IMF Balance of Payments Manual (4th Edition 1977). Paragraph 304 參照.

註 4) 直接投資 및 再投資收益의 定義에 對해서는 OECD "Detaile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983 參照. 特히 日本의 國際收支表에서는 現在 再投資收益을 包含하고 있지 않으므로 SNA와 의 差는 發生하지 않는다.

이 있었다.

이 밖에 從來 行해지고 있지 않았던 道路, 橋梁, 埠 等の 構築物의 固定資本 消耗도 算出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提議가 있었다.

C. 專門家그룹에 의해 討論되었지만 最終 決定에 미치지 이르지 않는 事項

實買可處分所得과 交易條件

價格·數量比較에 關한 專門家그룹은 改訂 SNA에는 實買所得의 合計值을 包含하도록 勸告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改訂 國際聯會 대뉴얼에는 下記의 說明表를 追加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實買國民可處分所得의 導出

1. 不變價格表示의 國內總生產 (GDP)
2. + 實買交易條件 效果
3. = 實買國內總所得 (GDI)
4. + 海外로부터의 要素所得 (純) (實買)
5. = 實買國民總所得 (GNI)
6. + 海外으로부터의 經營餘轉 (純) (實買)
7. = 實買國民可處分所得
8. - 不變價格表示의 固定資本減耗
9. = 實買國民 (純) 可處分所得

上記의 表에 있어서 以下の 두가지 點에 關해서는 專門家 그룹의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 上表 第2項의 交易條件 效果를 어떻게 算出하는가 하는 點

이다. 交易條件 效果를 下記를 利用해서 計算한다고 하는 點까지는 專門 家二들의 合意를 表하고있다.

$$\text{交易條件效果 (T)} = \frac{X-M}{P} = \left[\frac{X}{P_X} - \frac{M}{P_M} \right]$$

X : 輸出額

M : 輸入額

P_X : 輸出디플레이터

P_M : 輸入디플레이터

問題는 式식의 P에 어떠한 디플레이터를 利用하는가 이다. P에 輸入 디플레이터를 利用한 「니콜슨法」, 輸出과 輸入디플레이터의 加重平均을 利用한 「기어리=마-지法」 「크루비스=倉林法」等 몇가지 方式이 알려져 있다.⁵⁾ 參加者의 意見도 니콜슨法을 支持하는 사람 GDE디플레이터를 支持하는 사람等 여러가지로 合意를 얻는에는 이르지 못했다.

둘째 實質可處分所得의 算出法에 대한 것이다. 한가지 방법은 附表의 2,4,6行의 各 項目에 對해 各各 權重이라고 判斷되는 디플레이터를 利用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方式의 利點은 實質國民可處分所得에 對한 各種의 構成要素別 變動에 依한 效果分析이 可能하게 된 點이다. 이에 對해 하나 더 생각하여야 할 것은 附表의 2~8行의 項目을 빼놓고 國民可處分所得을 一般의인 디플레이터-예를들면 國內純支出(NDE = 消費 + 資本形成 - 固定資本減耗)의 默示的 디플레이터-로부터 求할 수 있다고 하는

註5) 交易條件 效果의 測定法의 조사로서는 例를 들면, Pierre Gutmann "The Measurement of Terms of Trade Effec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umber 4 December 1967 參照.

것이다. 이 방식의 長點은 이 디스플레이를 利用하는 것에 의해 또는 期間內의 可處分所得으로 支拂하는 것이 可能한 國內支出의 數量(Volume)을 나타내는 것이 可能하므로 實質所得의 尺度로서 理解가 容易한 點이다.

本會議에서는 디스플레이로서 NDE를 利用하는 것이 當연하다고 하는 意見도 있지만 各자의 디스플레이션의 得失을 생각해서 慎重히 決定하는 것이 當연하다고 하는 意見도 있어 意見一致는 볼 수 없었다.

政府生産

公共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は 現行 SNA에는 包含되고 있지 않은 政府 所有의 建物 歸屬貨物 및 其他 政府의 有形固定資産의 歸屬시스를 政府의 生産에 包含되도록 提案하고 있다. 이러한 變更은 一般政府部門의 營業剩餘 및 GDP全體를 增加시키는 것이 된다. 參加者들은 政府는 利潤 極大化를 目標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政府生産에 營業剩餘를 包含시키는 것은 適當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變更은 時系列의으로 커다란 不連續을 초래하게 되어 利用者에게 있어서도 不便하다고 하는 意見이 나왔다. 다른 한편 이 變更은 企業의 附加價值 測定方法에 依한 것으로 理論의으로도 一致한다고 하는 意見도 나왔다. 즉, 現行 SNA에서는 企業의 建物 등의 歸屬貨物分은 歸屬計算은 하고있지 않지만 默示의으로 産業全體의 營業剩餘에 包含되고 있는데 對해 政府部門은 그러한 歸屬計算이 되고있지 않으므로 이 點을 改訂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歸屬計算의 範圍에 對해서는 政府所有 建物의 歸屬貨物는 同種의 民間 建物의 貨物를 베이스로 推計하는 것이 可能하고 이것을 包含하는 것이 當연하다고 하는 意見이 많았다. 그러나 他 政府의 有形固定資産의 歸屬貨物를 包含하는 데에는 實際上 算出이 困難한 것 등으로부터 反對 意

見이 大多數 이었다. 이에 對해 一部 參加者들은 建物만 歸屬計算 하는 것은 理論的으로 根據가 없다고 하는 意見도 나왔다.

軍事情 耐久財

現行 SNA에서는 軍事情 耐久財는 固定資本形式이 아니고 經常支出에 分類되게 되어있다. 專門家 그룹의 檢討에서는 軍事情 耐久財의 取扱에 對해 舊來의 固定資本形式에 分類하는 意見과 現行과 같이하는 意見이 對立하고 있어 結論이 나지않았다. 本會議에서는 軍事情 耐久財의 一部는 資本形式에 包含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意見이 많았다. 그 理由로서는 完全히 同種의 施設(學校, 病院等)에 對해 軍事情의 인가 아닌가로 資本形式과 經常支出로 區別해서 取扱하는 것은 根據가 없다는 것.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平均에 있어서 軍事情서비스의 境界가 分화되지 않은것 등이 指摘되었다. 또 軍事情 耐久財中 兵器에 대해서는 平均耐用年數等 資本減耗의 計算이 困難한 點 등을 들어 이것을 資本形式에 包含시키는 것에는 反對 意見이 많았다.

資本形式

生産 및 投入產出表에 關한 專門家 그룹은 R & D, 컴퓨터, 소프트웨어, 鑛山探査(Mineral Prospecting)에 對한 支出이 적어도 一部는 資本形式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하는 提案을 行하고 있다.

R & D에 對해서는 參加者로부터 가까운 將來 所得을 發生한다면 期待되는 R & D로의 支出을 資本形式에 包含시키는 것은 合理的이라고 여겨 지지만 R & D中에서 그러한 R & D를 區別하는 것은 困難하다는 點 또한 R & D의 資本減耗를 計算하는 外에 平均耐用年數의 決定이 어렵다는 點 등이 指摘되었다. 특히 OECD事務局 科學技術產業局의 代表로부터는

R & D 支出의 測定 및 分類를 위한 가이드라인 (* Frascati Manual *)⁶⁾을 現在 改訂中에 있으며 改訂版에서는 國民經濟計算에 必要한 分類法에도 配慮한다고 하는 說明이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計算機 自體에 依하여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資本形式에 包含되어 있다고 하는 指摘이 있다. 많은 參加者는 소프트웨어로의 支出를 資本形式으로 하는 것에 贊成을 表했다. 또한 改訂 SNA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資本派純算出方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意見이 나왔다.

鑛山探査에 對해서도 資本形式에 包含시키는 것에 對해 많은 支持를 받았다. 노르웨이로부터는 石油探査은 이미 資本形式에 包含되고 있다고 하는 說明이 있었다. 그러나 一部の 參加者로부터 極히 投機的인 試探은 資本形式에 包含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意見이 있었다.

輸入의 評價

專門家들은 財貨·서비스의 輸入을 FOB 價에 依해서 記述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參加者들은 輸入의 詳細한 數値는 CIF 價에 依해서 다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投入產出表의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는 CIF 價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意見을 表했다.

居住者

技術援助 프로젝트에 長期契約으로 從事하는 사람은 居住者로 할 것인가

註 6) OECD, * The Measure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Frascati Manual 1980*

이런가에 대해서는 專門家그룹에서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技術援助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援助國에서 船費를 맡으며 被援助國의 生産活動에 從事한다고 하는 두가지 性格을 갖고 있다.

이 點에 關해서는 英國 中央統計局의 카-터(S. Carter)女士로부터 技術援助 스태프에 對해 1人 個人的 居住者와 非居住者 兩方의 性格을 함께 갖는다고 간주한 取價의 試案이 나타나있다.

參家者의 意見도 居住者로 보아야 한다는 意見, 非居住者로 보아야 한다는 意見, 英國案을 支持하는 意見으로 三分되어 意見一致는 볼 수 없었다.

D. SNA評價 過程에서 解決하여야 할 其他 問題點

專門家그룹에서 아직 討論되고 있지 않은 重要한 論點으로서 參加者로부터 指摘이 있었던 主要한 點은 아래와 같다.

- ① 附屬銀行 서비스料의 測定과 그 中間需要와 最終需要의 配分法
- ② 損害保險의 改訂 SNA上的 取扱
- ③ 土地와 建物과의 賃貸料를 區分할 수 있는 경우의 取扱

2. 資本移轉과 經常移轉의 區別

第二議程에 對해 國際聯合의 咨文안으로서 改訂 SNA의 起草를 맡고있는 T. P. Hill로부터 事務局報告書에 基해 『現在 國際聯合 가이드라인에서는 經常移轉과 資本移轉의 區別이 精確論法이 되고 있어 明瞭하지 않다. 보다 具體的인 基準-例들들인 移轉의 規模 頻度, 豫測 可能性 等-을 檢討하겠다』고 하는 主眼의 說明을 하였다.

EC統計局의 代表는 所得支出計定에서는 該當 計定の 範圍에 있어서 一次所得(附加價值) 部門間의 再分配안이 經常移轉이고, 그 以外의 例들보면

租稅稅와 같이 過去로부터의 蓄積에서 支拂되는 것은 資本移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見解를 보였다.

參加者は 移轉支拂側과 受取側 兩方の 貸借對照表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資本移轉으로 한다는 점에 對해서는 異論은 없었지만 어느쪽이던 한편의 貸借對照表에만 影響을 미치는 “混合移轉”에 對해서는 意見이 나뉘어졌다. 즉, “混合移轉”은 전부 經營移轉으로 하자는 意見 受取側의 資本形成에 이바지 하는 경우(例, 投資援助)는 資本移轉으로 하자는 意見, 支拂側 또는 受取側 어느 쪽인가의 貸借對照表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는 資本移轉으로 하자는 意見等 이다.

課長으로부터 改訂 SNA의 草稿製作을 爲해 各國의 國民經濟計定에 있어서 資本移轉의 取置 現狀을 事務局에 알려달라고 하는 要請이 있었다.

3. 제르노빌 災害에 對한 政府補償支拂의 國民經濟計定上的 取扱

이 課題는 一見 特定地域의 被害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地震, 噴火 등의 災害에 對한 政府補償의 SNA上의 取扱를 論議하려고 하는 것이다.

事務局으로부터 우선 事務局이 加盟國에 보낸 質問狀의 回答結果에 對해 說明이 있었다. 그에 의하면 回答이 있었던 13個國 全部가 災害補償의 目的으로 經營移轉인가 資本移轉인가로 分類하고 있다. 즉, 固定資産의 損害에 對한 補償은 資本移轉, 所得내지 消費의 損害에 對한 補償은 經營移轉으로 하고 있다. 제르노빌 災害에 對해서는 回答이 있었던 4個國 모두 經營移轉으로 取扱하고 있다.

會議에서는 補償을 經營移轉中 「補助金」으로 하여야 할까 「其他의 經營移轉」으로 하여야 할까 것인가가 주요 討議되었다. 參加者의 多數는 生産

회에 회한 補償은 補助金으로 하고 家計에 회한 補償은 其他의 經常移轉으로 하자는 意思가 있었다.⁷⁾

4. 資本 스톡의 測定

事務局으로부터 1980년에 行한 資本스톡 統計의 現狀에 회한 서베이⁸⁾를 更新해서 하고 싶다는 說明이 있었다.

最近의 統計整備狀況에 회에 參加者로부터 分히하게 된 點은 아래와 같다.

① 스페인은 1985년에 行하여진 調査에 根據해서 1988년부터 資本스톡 推計를 開始한다. 推計는 PI(永久在庫)法을 利用한다.

② 西獨은 資本스톡의 經濟活動別 分類을 所有者主義로부터 使用者主義로 變更한다.

③ 캐나다는 耐用年數에 회한 새로운 推計를 하였다. 이에 따른 새로운 資本스톡 系列을 1988年後半에 公表測定이다.

5. 其 他

其他의 議題로서 다음 點에 회에 討論을 하였다.

(1) 四半期 統計의 信頼性

이 問題에 회에서는 事務局으로서 加盟國의 四半期 統計의 精度를 向上시키기 爲의 어떠한 貢獻이 可能인가하는 觀點에서 ① 各 國의 推計方法

註7) 이 方法은 現行 SNA의 國際聯合 規程에 회한 것이다. UN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Paragrap 7.34 參照.

8) D.Blažes, "Service Lives of Fixed Assets", OECD Working papers No.4, March 1983 參照.

과 基礎데이터의 比較 ② 一次速報値의 修正方向과 修正幅의 檢討 등이 提案되었다. 또한 四半期 統計를 現在 公表하고 있지않는 加盟國의 檢討狀況 報告가 있었다. 이에 對하면 덴마크는 1988年 後半에는 公表를 豫定, 스웨덴은 檢討中 이에 對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은 現時點에서 四半期 系列의 作成計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2) 長期 時系列 데이터베이스

事務局으로부터 OECD 加盟國의 長期 時系列(1900年 以後) 데이터를 蒐集하여 主要系列에 對해서는 最近의 時系列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可能性에 對해서도 檢討하겠다고 하는 說明이 있었다.

參加者中에는 이러한 長期 데이터의 연결이 좋지 困難하고 時間과 勞力을 들여도 利用者(主로 學者라고 여겨진다)를 滿足시키는데 充分한 것을 提供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意見도 나왔지만 大多數는 可能한 限 事務局에 對해 協力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겠다고 하는 意見이었다.

(3) PPP(購買力評價) 作業의 進捗狀況

事務局으로부터 1985年의 調査結果는 OECD National Accounts 1988 (Volume 1)에 掲載됨과 同時에 主要한 結果에 對해서는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에도 掲載되도록 되었다는 것이 報告되었다.

또한, 다음의 1990年 PPP推計에 있어서는 1988년부터 各國의 價格데이터를 集計하기 始作해서 一次試算結果는 1991年初에 發表 豫定인점, 또한 次郎는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參加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4) 今後の 議題

今後の 議題로서는 ① 四半期統計 ② 實質 政府生産額의 測定 ③ 資本 移轉의 加盟國에 있어서의 取扱 ④ SNA改訂의 進捗狀況 등을 받아들여졌다. 고 및 各國이 表明하였다.

結 語

1991년부터 SNA改訂作業이 본격화된 것과 더불어 맞추어 유럽의 專門家會議에서는 새로운 SNA의 具體적인 改訂點이 主要 議題가 되었다. 改訂 SNA는 現行 SNA를 大體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基本的 자세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提案의 內容을 보면 政府生産, 實質所得等 現論的으로도 統計技術으로도 커다란 變更를 包含하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 日本에서도 改訂 SNA作業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가는 것과 同時에 이에 對應하기 爲한 體制의 整備이 迅速히 進무할 必要가 있다.

(國民支出課長 中城 吉郎)

〈附表1〉 SNA的 主要 Frame work

海外家計	政府企業	國民經濟	去	供給		國民經濟	企業	政府	家計	海外
				供給	—					
	38.2	362.7	3,724.6							
447.6			447.6							
13.8			1,564.1							451.4

14.9	1,151.8	-14.6	50.6	1,187.8	澳門與 / 國民所得						
					所得的分配						
					澳門與 / 國民所得	1,187.8	50.6	-14.6	1,151.8	14.9	
37.0	511.8	302.0	90.6		經常轉移	141.4	73.8	641.7	330.3	9.3	
					間接稅-補助金	(169.1)		(169.1)			
-12.8	970.3	325.1	33.8	1,329.2	可處分所得						
					所得的使用						
					可處分所得	1,329.2	33.8	325.1	970.3	-12.8	
	879.2	317.8		1,197.0	最終消費						
-12.8	91.1	7.3	33.8	132.2	貯蓄						

一 支 持 一				資 本 (港 元 千)				一 受 取 一			
				貯 蓄 的 再 分 配							
				貯	總	132.2	30.8	7.3	91.1	-12.8	
2.6	-8.5	31.5	20.9	資	本 移 轉	-2.4	12.1	7.1	32.3	0.1	
-15.3	121.9	-17.1	25.0	實	質 資 產 的 變 動						
				有	形 資 產 的 變 動						

第 2 章 SNA 改訂事業의 進展

— 第 25 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事務總長提出報告 —

本稿는 1989年2月6일부터 2月15일까지 뉴욕에서 開催된 第25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의 議題4 (A) "National Accounts and Balances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關한 事務總長提出報告 —"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을 번역한 것이다.

國民經濟計定體系(SNA)의 評價에 對해서는 現在 國際聯合統計局을 中心으로 IMF, OECD等 國際機構의 協力도 얻고 1991年 第26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에서의 採擇을 目標로 繼續적으로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本報告는 이 評價作業의 進捗狀況 및 今後의 作業計劃에 關한 最新 또는 包括的인 情報을 提供하는 것으로 1987年의 第24回 國際聯合統計委員會에 提出된 同一報告의 (李)國民經濟計算 AG 74에 翻譯收錄) 被編에 收當한다.

특히 原文에는 第5章으로 統計委員會에서 論議되어야할 要點이 添附되어 있지만 이 部分은 省略하였다.

經濟社會理事會資料

E/CN3/1989/4

1989年10月3日

統計委員會第25回會合

1989年2月6日~15日

豫定議題 4(A)

國民經濟計定及 實物生產體系(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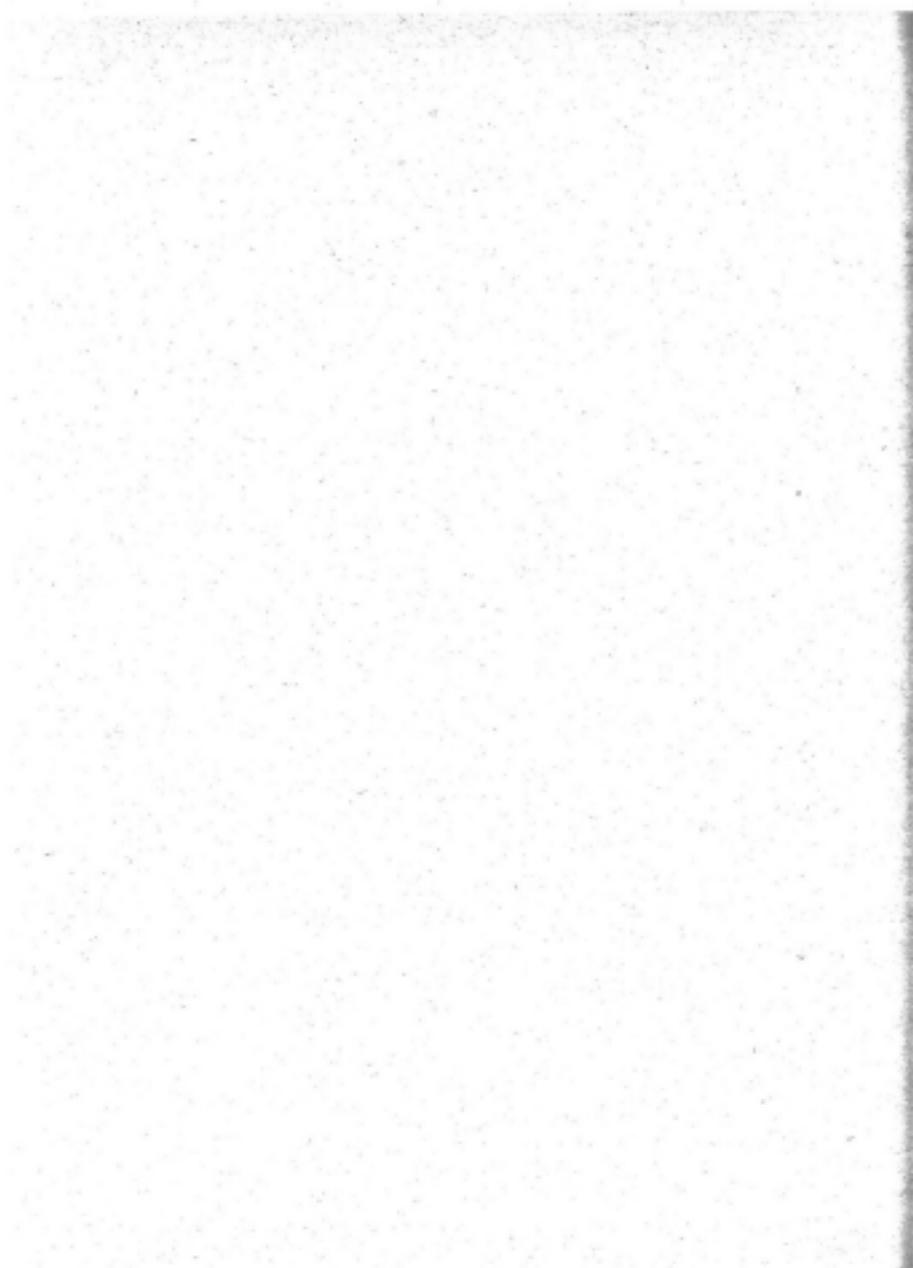
: 國民經濟計定體系(SNA)

SNA 改訂事業의 進展 事務總長提出報告

要 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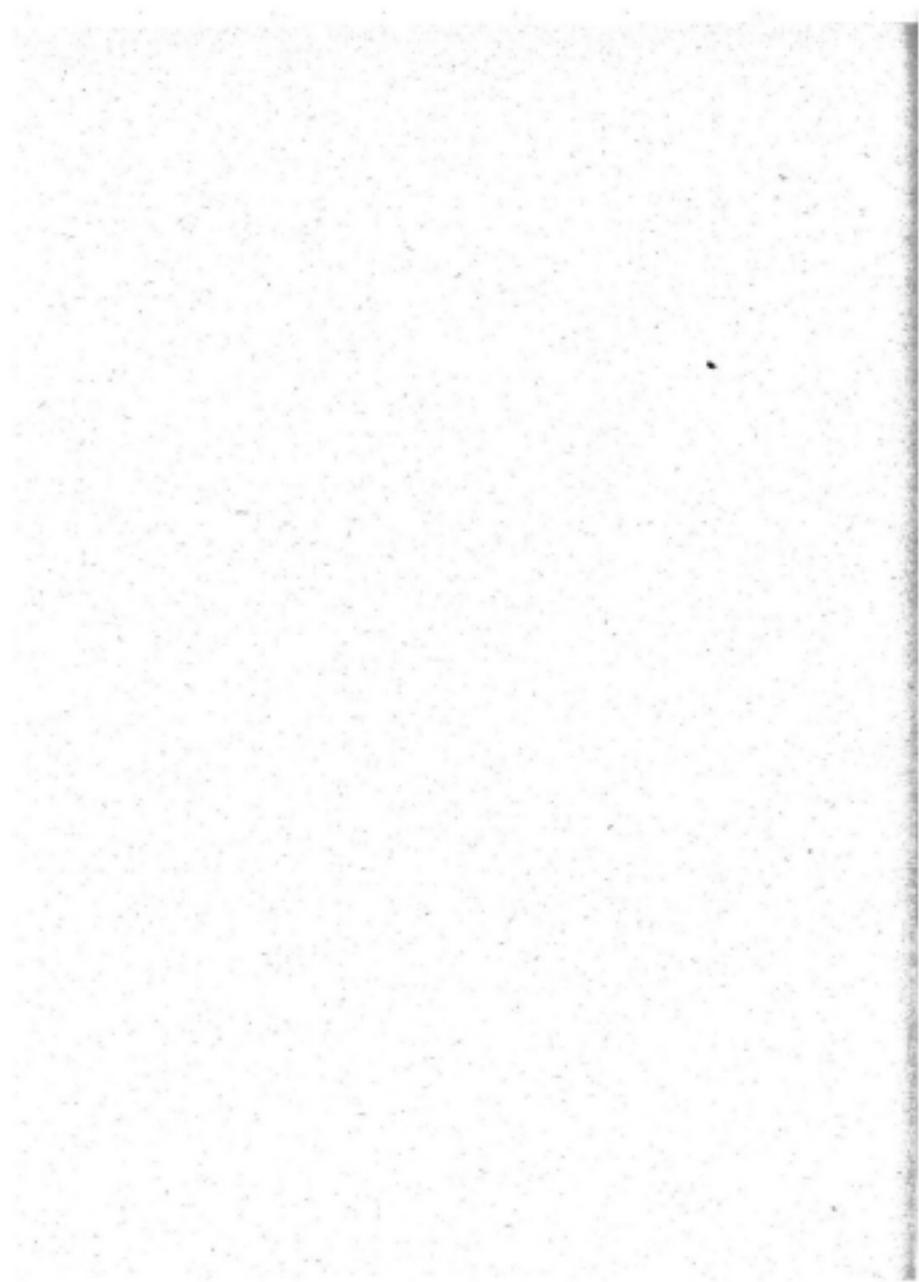
本報告는 1987年의 統計委員會 第24回會合에 提出되었던 前회의 進捗報告의 續編이다. 이는 1987年末부터 1988年을 網羅하고 있다. 第一節은 이미 閉塞되었던 會合이나 이제부터 일일 會合에 對한 詳細한이나 보다 많은 專門家 그룹에서의 SNA 評價資料를 普及시킬것을 包含한 SNA 評價에 關한 組織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SNA 評價過程을 適時에 또는 效果的으로 完了하는데 必要한 資料와 그러한 資料를 動員하기 爲에 講究하는 行動에 對해 쓰여져 있다(3~16項) 第2節은 全體的 및 地域적인 各種의 專門家그룹會合에서 到達한 結論의 要約이다(17~47項). 第3節은 國民經濟計定과 臨時日次를 包含하는 改訂 SNA와 윈드록의 執筆에 對한 進捗報告이다. 第4節은 現在 行하고 있는 概念的 構造의 效果과 平行해서 SNA 改訂의 實行에 있어서의 各國 特別 開發途上國을 援助하려고 하는 編集方法의 開發을 目標으로한 國際聯合事務局의 統計局 活動에 對해서 記述하고 있다(56~59項). 第5節은 統計委員會의 장래 計劃을 示唆하여 委員會의 今後會合에서 이야기 되어야할 論點을 包含하고 있다.



目 次

序 論	187
I. SNA 改訂組織과 資金	187
A. 地域會合 및 專門家그룹會合	188
B. SNA 改訂過程의 投入擴大	195
C. SNA 改訂活動資金	196
II. 專門家그룹會合의 結論概要	198
A. 海外部門去來에 關한 專門家 그룹	198
B. 家計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 그룹	199
C. 公的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 그룹	201
D. 生産計定과 産業聯誼에 關한 專門家 그룹會合	202
E.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라인아메리카 카리브經濟委員會 (ECLAC)의 地域 세이나	206
III. 改訂SNA와 그에 附隨한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添드북	207
A. 改訂 SNA	207
B.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添드북	209
IV. 데이터의 開發	215



1. 第 24 回會合에서 統計委員會는 第 23 回會合 以後의 SNA 改訂作業을 評價하여 包括的이라고 解説한 進捗報告(E/CN.3/1987/5)를 支持하였다. 國際聯合統計局과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實務作業 그룹의 主要한 役割에 注目하여 SNA 改訂組織의 調整과 活動 소개를 承認하였다. 委員會는 改訂을 爲해 作成된 豫定表의 遵守를 強調하고 事務局에 있어서 이 作業에 強力한 優先權을 附與하였다. 더구나 委員會는 開發途上國의 보다 많은 專門家の 參加와 地域會合을 통해 開發途上國의 要求에 充分한 注意를 기울여 도록 要請하였다. 특히 SNA와 關聯統計體系를 調和시키려는 努力을 歡迎함과 동시에 SNA 改訂의 進捗에 있어서 地域委員會로부터의 情報를 受容하여 繼續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의 準備에 適合한 基礎的統計情報의 改善과 質의 評價를 要請하였다. 攄으로 委員會는 SNA 改訂提案에 關한 各種 技術的인 問題에 對해 評價를 더하고 있다.

2. 本 報告는 E/CN.3/1987/5 文書의 續編으로 統計委員會가 SNA 改訂에 있어 더욱 發展을 시키기 爲해 準備된 것이다.¹⁾

I. SNA 改訂의 組織과 資金

3. 國民經濟計定의 事務局間 實務作業그룹은 國際聯合統計局, OECD 統計局, IMF 國際聯合地域委員會로 構成되어 統計委員會에 次해 附記된 委任事項의 範圍에서 SNA 改訂活動計劃의 調整, 全劃, 組織化를 繼續하여 왔다. 實務作業그룹 機構의 會員代表는 그룹이 代表하고 있는 다른 關聯會議과 合

註1) See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87, Supplement No. 6(E/1987/19), Chapter V.

同으로 1년에 數回會合하고 地域會合이나 專門委員會에 關聯한 活動이나 必要한 資金活動 其他 組織活動을 行하여 왔다.

A. 地域會合 및 專門家그룹 會合

1. 지금까지 열린 會合

4. 1987年2月の 統計委員會 第24回會合以來 SNA改訂에 關한 地域會合 및 專門家그룹 會合이 특히 數回 開催되었다.

(a) 4개의 專門家그룹會合이 改訂 SNA의 一般의 가이드라인 엔드북의 準備와 技術的인 問題에의 接近方法을 主題로 開催되었다.

(1) IMF가 後援하고 있는 海外部門 去來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은 1987年3月23日부터 4月2日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다.²⁾ 이 會合에는 12個國에서 國民經濟計定이나 國際收支 專門家が 參加하였다. 改訂의 連續性을 確保하기 爲하여 모든 專門家그룹會合에 參加하고 있는 6人的 核心專門家(칠레, 香港, 프랑스, 西獨, 印度, 美國)에 次하여 以下에 國家專門家도 參加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에콰도르, 프랑스, 네덜란드, 英國, 美國, 國際聯合統計局, OECD, EC統計局, IMF와 世界銀行의 代表 또한 參加하였다.

(2) 世界銀行이 後援하고 있는 家計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은 1987年8月31日부터 9月4日까지 開催되었다.³⁾

12個國의 國民經濟計定 專門家が 參加하였다. 6人的 核心專門家に 次하여 其他 國家의 專門家도 參加하였다. 캐나다, 헝가리, 모리셔스, 멕시코, 英國, 에리추엘라, 國際聯合統計局, OECD, EC 統計局, IMF, 世界銀行 ILO의 代表 또한 參加하였다.

註2)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External transactions held in Washington, D.C. 23 March-2 April 1987.

3)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Household Sector Accounts held in Florence. 31 August-4 September 1988.

(甲) IMF가後援하고 있는 公的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은 1988年1月25日부터 29日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다.⁴⁾ 12個國으로부터 國民經濟計定이나 政府財政의 專門家が 여기에 參加하였다. 6人的 核心 專門家와 아래 國家의 專門家が 參加하였다. 브라질, 淸고, 핀란드, 모리셔스, 과후아 뉴기니아, 스리랑카, 國際聯合統計局, OECD, EC統計局, 世銀의 代表도 參加하였다.

(甲) 國際聯合產業開發機構(UNIDO)와 協力하여 國際聯合統計局이 後援하고 있는 生産計定 및 産業聯繫表에 關한 專門家會合은 1988年3月21日부터 30日까지 빈에서 開催되었다.⁵⁾ 13個國에서 國民經濟計定과 産業聯繫表에 關한 專門家が 參加하였다. 5人的 核心 專門家에 次해 아래 國家들의 專門家도 參加하였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인도네시아, 멕시코, 美國, 짐바브웨, 國際聯合統計局, OECD, EC統計局, IMF, 世銀, UNIDO, 國際聯合아시아 太平洋經濟社會委員會(ESCAP)와 國際總人의 地位向上을 위한 調査研究所(INSTRAM) 또한 參加하였다.

(b) EC統計局(BUROSTAT)은 북경부르크에서 4回會合을 開催하였다. 1回에는 海外部門去來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1987年3月~4月)에, 2回에 家計圖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1987年9月)에, 3回에는 公的部門計定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1988年1月)에, 4回에는 生産計定과 産業聯繫表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1988年3月)에 開催하였다. 이러한 會合은 EC代表에 依り

註4)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public sector Accounts held in Washington, D.C., 25-29 January 1988.

5)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Production Accounts and input-output Tables held at Vienna, 21-30 March, 1988.

4개의 專門家그룹會合의 主題에 關한 議論을 促進하는 意義로 開催되었다. 他に 國際機關으로부터의 代表 또한 出席하였다.

(c) OECD는 1988年5월에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專門家會合을 開催하고 未解決問題에 意見을 提示하고 網羅되고 있지 않은 項目을 確認하기 위해 SNA 改訂事業의 進捗狀況을 다시 살피고있다.

(d) 유럽 經濟委員會 유럽 統計家會議의 國民經濟計定 및 實物生產體系(MPS)에 關한 作業그룹의 最近會合(1988年3月2日~5日, 제네바)에서는 SNA 改訂에 關한 各種 專門家그룹의 報告에 대해 討論하고 그 結果에 대해 意見을 綜合하였다.

(e) 라틴아메리카, 카리부經濟委員會(ECLAC)는 金融研究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연대-(CEMLA)와 함께 地域會合을 組織하여 1987年11月23일부터 27日까지 샌디아고에서 會合을 開催하였다.

2. 今後의 會合

5. 다음의 4개의 國際會合이 SNA 評價의 남은 期間內에 計劃되고 있다.

(a) IMF의 後援에 의한 金融의 淸로우와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會合은 1988年9月6일부터 14日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다.

(b) 國際聯合統計局이 유럽經濟委員會(ECB), 經濟相互援助會議(CMEA)과 協力해서 後援하는 SNA와 MPS(實物生產體系)의 國民經濟計定の 基準調整에 關한 專門家會合을 1989년의 後半에 소련에서 開催하기로 決定되어 있다.

(c) 國際聯合統計局的 後援에 의한 SNA 調整에 關한 專門家會合이 1989

年7月과 1990年4月 2回 뉴욕에서開催되었다.

1989年の SNA 調整에 關한 專門家會合에서는 廣範圍인 目標으로부터 成立한 信託의 專門家, 地域委員會 國際連盟(그러한 こと 一部는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의 會員이다)으로부터 얻은 改訂 SNA 第1次 草案에 對한 見解를 檢討할 것이다. 第1回 會合의 또 하나의 目的은 前回會合에서 밝혀지거던 다른 見解의 調整을 하는 것이다.

第1回會合의 結論에서는 改訂 SNA 第1次草案에 適用할 修正을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1990年の SNA 調整에 關한 第2回회의 專門家會合에서는 1991年 統計委員會에서 最終承認을 爲하 討論된 改訂 提議案 以前에 第2次 案의 評價를 하게 될 것이다.

6. ECLA 와 CEMCA 가 共同으로 後援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2回회의 地域會合은 1988年11月14日부터 18日까지 프예노스아아레스에서 開催될 것이다. 이 會合에서 인플레이션 計定, 金融증로우, 貸借對照表와 公的部門 計定에 關한 問題가 이야기 될 것이다.

7. 金融 증로우와 貸借對照表에 關한 專門家그룹 會合의 文書나 參加者 運營上의 調整은 終了하고 廣範圍 註釋을 위한 議事日程이 準備되고 있다. 이 會合은 주로 4個의 問題를 나눈다. 그것은

(a) SNA와 金融증로우와 貸借對照表에 關한 他 統計 시스템間의 概念과의 연결, (b) 金融去來主體, (c) 金融去來와 (d) 國民 및 部門別 貸借對照表의 調整計定이다.

8. SNA와 MPS國民經濟計定規範의 調整에 關한 專門家그룹 會合에 關한 準備를 또한 進行中이다. 이 會合은 두가지 目的이 있다. 하나는 中央

計劃經濟國內에 있어서의 SNA 概念과 分類의 利用 可能性을 檢討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檢討에 있어서 SNA 概念의 定義와 適用範圍는 中央計劃經濟國內에 特有한 社會經濟的 制度에 適用될 수 있도록 調整되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專門家그룹은 中央計劃經濟國內에 있어서普及하고 있는 다른 行政과의 調整을 계속해서 考慮하여 分類單位로서의 企業이나 家計의 定義, 財政制度部門이나 그 副部門의 定義와 適用範圍, 銀行과 保險사 株式의 賣上高의 近似와 利率의 取扱, 金融을 單位的 - 分類, 租稅의 適用範圍와 分類, 價格의 夜類과 各種 評價價格概念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學界이 大體적인 計劃經濟가 存在하는 몇몇 市場經濟國內에서 SNA를 適用할 때에 提起될 것이다. 두번째 目的은 特別 開發途上國內에 있어서 많은 MPS 依의 概念과 分類의 分析可能性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國際聯合이나 다른 國際的인 機關 및 開發 國家는 技術的인 協力 努力에 의해 各國의 國民經濟計定の 發展 番組으로서 SNA의 使用를 強調하여 왔다.

그러나 서비스 生産이 充分히 進行되지 않고 있는 國家의 計劃에서는 때로는 主要 財貨와 그 關聯 서비스에 國民經濟計定の 發展에 焦點 맞추는 데에 充分하다 하였다. 이 分野에서의 MPS의 過去發展에서 蓄積된 적지 않은 經驗을 考慮한다면 專門家그룹은 이와 같은 狀況下에 있는 어떠한 MPS의 概念定義의 利用可能性을 評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와 같은 利用이 받아들여 진다면 SNA의 生産과 生産境界內에서 널리 MPS의 範圍를 確認하는 것은 有用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나라들에서 各種 分析을 위해 SNA와 MPS의 共同利用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9. 專門家그룹이 上記의 檢討를 效果的으로 實行할 수 있도록 國際聯合統計局은 MPS를 使用하고 있는 많은 中央計劃經濟國에서의 國民經濟計定の 實情을 調査하고 그 比較를 爲어 現在 SNA를 使用하고 있는 많은 市場經濟國의 實情도 또한 研究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調査의 準備으로 統計局은 그러한 나라에서 보다도 詳細하게 調査되게할 必要가 있는 問題의 記錄을 作成하게 될 것이다.

10. SNA와 MPS의 集計值의 編集에 對해 選拔된 어느 開發途上國의 케이스 研究의 結果를 檢討하기 爲어 SNA와 MPS 國民經濟計定の 基準調整에 關한 專門家 會合에 앞서 中間討論을 위한 會合을 1989年 初半에 開催할 것이 提議되고 있다. 이러한 研究는 歐州의 市場經濟國과 其他 中央計劃經濟國間에 이미 實行된 調査를 補充하게 될 것이다. 이 中間討論을 위한 適當한 公開討論會는 SNA와 MPS의 綜合 分野에 있어서 相當 經驗을 갖고 있는 EC 統計家會議의 國民經濟計定 및 實物生產體系에 關한 作業그룹일 것이다. ECE는 1989年 5月 16日부터 19日까지 제네바에서 開催될 것이 決定되고 있는 國民經濟計定과 實物生產體系에 關한 作業그룹의 次回會合에서 SNA와 MPS의 連結 重點的으로 檢討할 것에 合意하였다. 그리고 이 中期的討論을 촉진케 수행하기 爲어 國民經濟計定과 實物生產體系에 關한 作業그룹의 1989年 會合에서는 準備을 위한 케이스 研究에 參加할 歐州以外 國家나 地域으로부터의 追加代表를 參加시키도록 示唆하고 있다.

11. EUROSTAT가 積極적으로 後援할 것에 同意한 追加 專門家그룹 會合은 1989年 1월에 行하여 질 것이다. 이 會合에서는 이미 行하여진 專門家그룹에 對해 남겨진 未로 있는 많은 問題와 SNA의 調整에 關한 專

門家그룹에 의해 改訂 SNA의 第一次案이 評價를 받기 前에 檢討되어야 할 많은 問題가 다루어질 것이다. 이 追加會合의 最終決定은 金融 - 常務부와 貨幣對照表에 關한 會合 直後인 1988年9월에 워싱턴에서 開催된 事務顧問 作業그룹에서 開催될 決定이었다. 改訂 SNA案을 準備할 使命을 받고있는 Peter Hill 博士와 核心을 이루고 있는 專門家를 또한 參加하게 될 것이다. 評價會合은 다음의 問題에 대해 考察하게 될 것이다.

(a) 以前の 會合에서 넘어 왔거나 委託된 問題 (b) 新視로 생겼거나 以前에 議論한 적이 없는 問題 (c) Hill 博士가 明確하게 하였거나 指導하도록 要求한 問題 (d) 이미 論議되었지만 會合에 이르지 못한 問題. 檢討하여야 할 問題의 리스트는 國際聯合統計局에 의해 調査되었던 180人的 國民經濟計定 專門家들의 見解나 意見과 함께 前回の 專門家그룹 會合에 參加하였던 核心 專門家나 其他 專門家들의 見解나 意見이 反映되게 될 것이다.

12. 改訂 SNA가 모든 地域의 要望이나 狀況을 充分히 考慮할 것을 確實히 하기 위해서는 各 地域委員會가 改訂 SNA의 第1次案을 다시 살펴 보기 위해 1回以上의 地域會合을 開催하는 것이 重要하다.時機을 얻은 그러한 會合의 開催는 以下 IC에서 더욱 充分히 論議되듯이 대체로 地域委員會에서 特別資金對에서의 問題를 안고 있다. 地域會合은 1989年7月 開催決定인 SNA의 調整에 關한 第1回 會合과 1990年4月 開催決定의 第2回 會合의 中間에 開催되어야 할 것이다. 第1回에 會合에서 改訂 SNA의 第一次案이 檢討되어 改訂을 爲한 準備案이 作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實際 改訂은 地域會合案을 다시 살펴본 機會를 얻고, 모든 改訂이 第二回 會合의 始作하기 前에 작어질 때까지 行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ESCAP 地域에서는 韓國政府가 改訂 SNA의 第1次案에 대해 論議하기 위

의 SNA의 調整에 關한 第1回會合後 各 國에서 開催될 會合에 기본 資金 提供 하는 일에 同意하고 있다.

B. SNA 改訂過程의 投入擴大

13. 論議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地域 會合이나 專門家그룹 會合을 위해 廣範圍인 文書가 作成 準備되어 있다. 各국의 會合에서 結論의 綜合이 作成되고 廣範圍하게 질문 最終 報告書가 계속해서 準備될 것이다. 入手可 能한 文書의 一覽表가 모든 統計 委員會委員에게 非公式으로 配布될 것이 다. 一覽表와 文書는 國際聯合統計局이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事務局間 作業그룹에 屬하는 其他 機關의 委員으로부터 入手할 수 있을 것이다.

14. 事務局間 作業그룹은 가능한 限 많은 專門家 그룹이 論議에 參加할 것을 保證하도록 한다고 하는 要望에 配慮하고 있다. 專門家 그룹의 構成 員을 多樣化하는 일에 依り 參加할 專門家 數를 增加시키려는 모든 努力이 行려지 왔다. 特別 論議 幅을 넓히기 爲의 專門家 그룹 會合에서의 SNA 評價 文書中에서 選拔된 것과 모든 最終報告書가 國際聯合 統計局에 의해 呈送. 180 人의 國民經濟計定에 關한 專門家들에게 配布되었다. IMF 또한 關聯統計을 다루고 있는 IMF 委員 國家의 職務上 關係者에게 配布 하였다. 地域會合, 專門家 그룹 會合에 參加하고 있는 專門家들의 意見도 바 람가지로 그들의 意見 또한 改訂SNA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SNA 的 改訂作業이 중심이 進行 되도록 國際聯合 統計局은 그 180 人의 專門家들에게 未解決인 問題나 전히 접근하지 못한 問題에 對한 見解를 表明하도록 最近 要望하고 改訂SNA의 最終案이 이루어지기 前에 適切한 論 議가 行하여지도록 하였다.

C. SNA의 改訂活動 資金

15. SNA 的 評價 作業은 國際聯合의 財政危機나 共同으로 이 作業에 參

되고 있는 다른 國際機關으로부터 얻어지는 資金引下 影響을 상당히 받고 있다.

國際聯合 統計局은 統計委員會의 SNA 評價를 國際聯合 統計局의 作業計劃中 가장 重要な 作業의 하나로 다루도록 하는 提案에 따라 그 結果 統計局이 얻고 있는 자문권이나 出張費 等 通常豫算의 大部分이 이 作業에 割當되어 왔다. 그러나 財源不足으로 인하여 評價 過程에서 重要的 缺陷이 發生하는 것은 明白하다. 이는 몇개인가의 원드록의 準備 지언이나 SNA 評價 論議에 限定되었던 地域委員會 밖에 參加할 수 없었거나 開發途上 地域의 地域委員會에 依한 SNA 評價會승의 機關에 있어서의 問題를 包含하고 있다. 出張費 不足보다 統計局 職員이 地域會승이나 他 專門의 會승에 參加할 수 있는지 어떨지 不確實하고 改訂SNA의 最終評價에 이바지할 適切한 資金을 찾아 專門적으로 다른 翻譯을 保證할 것이 確實하지 않은 狀態이다.

18. SNA 評價 作業에 關한 國際聯合 財政 危機에 對한 反響으로 會員인 機關이나 國家의 寬大한 協力과 支持에 依하 相當의 輕減되어 왔다. EUROSTAT는 國際聯合 統計局의 通常豫算으로 補充될 수 없었던 改訂 SNA 第一次案의 Text 準備資金의 일부를 分擔하여 왔다. IMF는 3個의 SNA 評價 專門家 그룹會승의 스폰서가 되었고 相關은 하나의 同會승의 스폰서가 되어 여러가지 SNA 專門家 그룹에 參加하고 있는 多數의 先進國은 그러한 會승에 出産하는 自國의 專門家들의 資金을 내왔다. 그와 같은 支持가 現在까지 計劃되었던 프로그램을 實行 可能하게 하여왔다. 이러한 SNA 評價 狀況 가운데에 現在까지 豫定되었던 專門家 그룹會승은 모두 豫定대로 開催되었다. 앞의 統計委員會와 地域會승은 特히 開發途上國에서 計劃이나 政策決定, 分析 必要한 實態의 데이터 編集과 效果的인 데

이다의 連絡이라고 하는 點에서 SNA 概念을 操作하는데 핸드북이 主要한 文獻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일에 留意하여 왔다. 그 때문에 핸드북을 豫定 대로 準備하기 위해 資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必須의인 일이다.

1989 年 後半에 있어서 SNA 改訂의 第一次案에서 廣範한 論議를 展開하여 開發途上國에서 改訂 SNA가 實際로 適應할 수 있는 일을 確實하게 하기 위해 開發途上地域의 地域委員會의 會合組織에 資金을 融資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重要하다.

17. 現在の SNA 改訂이 難易을 일지 않고 改訂過程에서 開發途上國을 包含해 가는데 따라 發生하는 몇 가지의 困難을 緩和하기 위해 事務局間 作業그룹에서 어떻게 必要한, 資金 不足분을 融通시킬 것인가 하는 論議가 行해져 왔다. 國際統計 프로그램과 調整에 關한 委員會의 作業그룹이 第24 回 會合에서 通知하였듯이 이 研究分野에서 國際적으로 얻을 수 있는 專門的 意見의 中心을 이루는 國際所得國富學會(IARIM)는 改訂作業에 參加하여 그 作業이 充分히 豫定대로 完成되도록 必要한 不足 財源 融通을 위해 努力할 것을 同意하였다.

18. IARIW의 參加는 이미 始作되었다. 國際聯合과 EUROSTAT는 Hill 博士에 改訂 SNA 案을 作成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IARIW를 통해 供給하고 있다. 兩方의 機關으로부터 資金은 이 任務을 爲해 認定되어 왔고, 必要한 管理調整이 行해져 어느 정도의 出資는 이미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1988 年3월에 Hill 博士는 改訂 SNA 案의 作成作業을 始作해 몇몇 章은 이미 案의 段階에 이끄러 있다. 不足 資金은 IARIW 에 依해 계속해서 探求되고 있으며 其他 方法 特別 專門家 그룹會合이나 地域會合機關 핸드북의 準備나 追加出資에의 開發途上國의 參加에 融資하는 것에 依해 도움을 받고 있다.

II. 專門家그룹會合의 結論概要

19. 以下에서는 1986年 兩國인 統計委員會 第24회 會合에서 다른 報告內容으로 SNA의 構造에 關한 專門가그룹의 價格과 數量 比較에 關한 專門가그룹會合 後의 地域 및 專門가그룹會合에 이어 開辦되었던 兩國途上 協議를 爲한 SNA改訂에 關한 地域제미니에서 얻은 結論과 勸告의 概要이다.

A. 海外部門去來에 關한 專門가그룹會合

20. 이 專門가그룹은 많은 問題를 提起하였으며 몇가지 項目에 對한 勸告를 하였다. SNA 海外計定과 國際收支表(BOP)에서의 去來概念과 取償에 對한 몇가지 妥協에 도달하였다. 예를 觀면, 現在 SNA에 규정되어 있 沒이 BOP도 要素서비스와 非要素서비스 經常移轉과 資本移轉사이의 明白한 區別를 詳述~것에 原則으로 同意하였다. 輸入은 SNA에서도 BOP의 現在 勸告에 따라 FOB가치으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金融서비스에 對한 輸出入의 重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專門가그룹은 生産計定에 關한 專門가그룹과 金融감독주에 關한 專門가그룹에서 海外計定에 있어서 銀行과 保險去來의 취급에 關한 改訂을 建議하도록 勸告하였다. 同時에 國際收支表 專門가는 SNA와 BOP間の 調和의 一環으로서 歸屬과 調整을 積極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表明하였다. 이제까지 外國企業支店의 再投資인 利益은 BOP에 있어서만 歸屬되었으나 SNA에 있어서도 歸屬計算으로서 導入해야 할 것이다.

21. 專門가그룹은 去來를 計上하는 경우, 居住概念과 所有權主義의 適用에 關하여 BOP와 SNA의 海外計定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柔軟한 原則을 詳하였다. 이는 居住의 基本的인 基準은 經濟的이어야 한다. 즉, 各 個人 혹은 各 單位의 經濟的인 利益의 中心이 屬한 적은 그 나라에

恒久的으로 定着되어 있는가, 어떤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合
意되었다. 法的基準과 1年限의 習慣에서 現在 SNA에도 BOP에도 포함
되고 있는 것은 單純의 記事으로서 취급할 뿐이다. 같은 형태로 所有權
移轉에 SNA와 BOP의 去來計上을 위한 指針의 基準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技術協力職員의 取扱은 未決定상태로 SNA調整에 관한 專門家그
들에 의해 後에 決定될 事情과 같이 남아 있다.

22. 또한 專門家그들은 現在 SNA에서 明確한 取扱이 되어 있지 않은
問題를 本정의 했다. 이에는 예를 들면, 金融서비스 國際機構의 적용범위
다수의 환율이 存在하고 그것이 급속히 變化하는 狀況下에서 海外去來에
있어서 外國通貨에 의한 價格을 國內通貨에 의한 價格으로 轉換하기 위한
환율의 使用이 포함된다. 이러한 問題中 몇가지는 完全히 解決되고, 한편
다수의 환율에 관한 論點과 같은 其他 몇가지 問題는 그 後 專門家會合
에 있어서 다시 論議되는 것이 報告되었다.

23. 家計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들會合

23. 專門家그들은 SNA 속에 包括的인 歸屬(imputation)과 再歸屬(Re-
routing)의 類型을 明確하여 포함해야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歸屬(im-
putation)은 公表되는 表에 있어서 確認되어야 하며 項次들은 그러한
指針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合意하였다.

24. 生産境界에 관한 論議에 있어서 모든 非市場서비스, 非市場財貨의 適
用範圍擴大, 一次商品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혹은 一部가 市場에서 交換된다
고 하는 制限의 變更은 除外하도록 報告되었다. 原則的으로 SNA에 모
든 非合法的인 去來는 포함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合意되었다.

25. 個人을 위한 政府의 民間非營利團體의 消費를 포함한 家計消費라고 하는 새로운 消費概念이 現在의 家計와 政府에 대하여 所得支出計定의 適用範圍를 變更하는 것이 아니고 SNA의 中心이 되는 체계속에 統合되었을 뿐이다. 한편 企業最終消費支出概念을 導入하는 提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現物賃金과 給料의 適用範圍를 넓혀야만 한다는 것이 提議되었다. 準法人의 概念은 維持되었지만 計定이 完全히 可能하도록 非法人企業을 포함하도록 修正되었다.

26. 非營利團體의 그들분할이 檢討되어 民間非營利團體의 企業部門과 家計部門으로의 할당은 어디에 率仕하는가라는 基準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合意되었다. 다음에 詳히여진 公의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會議에서는 非營利團體로부터 政府部門으로의 할당은 多額의 出資를 받고 있는가, 政府에 보다 폭넓게 管理되고 있는가, 어떤가라는 2가지의 합쳐진 基準이 維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結論지워졌다. 그러나 管理基準은 특히 宗敎團體와 政治團體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될 必要라는 것이 시사되었다. 家計部門計定에 관하여 專門家그룹 대부분이 出資者는 家計에 關係하는 民間非營利團體의 賃金을 獨立한 部門으로 해서는 안 되고 家計部門의 下部部門으로 하는 것에 合意하였다.

27. 특히 家計部門과 勞動投入에 대한 副分類의 社會經濟的細分화를 考慮한 社會會計명칭(SAMS)은 SNA의 主要한 체계에 統合되어야만 한다. 家計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은 家計部門은 從事上의 地位와 같은 世價主의 社會經濟的的特性에 따라 細分化되어야 한다고 提議하였다. 專門家그룹은 또한 특히 巨視와 微視데이터나 概念의 연결을 다음 家計部門計定에 관한 핸드북의 準備를 支持하고 있다. 最終적으로 ILO의 勞動統計基準과의 調

和가 SNA에 있어서 公式(formal)과 非公式(informal)活動 關係主와 自營業者의 區別를 分辨하는 것에 對해 達成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承認되었다.

C. 公的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會合

28. 專門家그룹會合에서 政府財政統計(GPS)와 SNA사이의 概念的인 對應表가 2가지 體系의 모든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必要하다고 合意되었다. 실무적인 對應表는 對표의 項에 對하여 那門計定이 아직 開發되지 않은 나라에 對하여 GPS 데이터를 基礎로 하여 SNA의 政府計定을 推計하는 重要한 手段이 된다.

29. 專門家그룹은 SNA에 있어서 去來를 記錄하기 위한 發生主義(accrual basis)와 GPS에 있어서 現金主義(cash basis)를 再確認하였다. 그러나 GPS의 統合을 促進하기 위하여 SNA 속에 現金記錄을 基礎로 하는 附表를 포함하는 것이 提案되었다.

30. 專門家그룹은 政府營業剩餘가 되는 政府所有 혹은 占有建物의 賃貸料(rent) 歸屬을 提案하였다. 또 道路, 교량과 其他 固定資本消耗의 計算도 提案되었다. 그것은 生産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에 對하여 政府資產의 資本費用을 反映하는 固定資本消耗과 營業剩餘에 對하여 政府固定資產의 歸屬이라는 提案을 再檢討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後 生産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는 最終的인 結論이 完結되기 前에 그 提案의 概念的인 실제적 問題와 賃貸料의 歸屬이라는 提案과의 關係와 相互作用에 對하여 說明한 文書가 必要하다고 하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31. 專門家그룹은 中央政府과 地方政府 사이에 中間의 種의 政府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中央과 地方의 中間에 政府를 SNA에 포함하는 것이
有益하다고 생각했다. 社會保障基金에 대해서도 손 代價의 政府데이터와 같
이 손 代價에 對應한 社會保障基金을 포함하고 分離된 데이터를 把握하고
있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하였다.

32. 專門家그룹은 政府가 그 資本의 大部分을 出資하고 있든가 資本의
50%以下 수준으로 出資하고 있어도 政府가 그 企業의 經濟活動을 管理하
고 있는 것을 公的法人企業으로 취급하는 것에 同意하였다. 部屬企業(De-
partmental enterprises)은 生産分析內에서는 政府非市場 서비스生産者
와 區別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部門別計定에서는 그럴 必要는 없
다. 그 後 生産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會議은 어느 政府單位가 만일 그
리한 出資價格이 費用을 보상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市場生産者와 동
일하다고 간주하는 편이 좋다. 또한 政府와 補助적으로 結合된 活動은 企
業事例의 경우 提案된 것과 동일한 方法으로 취급되어야만 하고 「部屬企
業(Departmental enterprises)」이라는 단어는 改訂SNA에서는 사용하
야 할 만한 것은 아니다.

33. 政府資本形成概念을 확대하여 軍事資産을 포함하도록 하는 提案에
대하여 論議되었으나 最終決定은 生産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에서 보다 길
게 再檢討할 때까지 延期되었다. 其他 重要한 提案은 改訂SNA에 있어
서 直稅稅와 間接稅라는 用語의 變更과 SNA와 GPS 間의 稅金의 適用範
圍에 대한 조정에 관련되어 있다. 專門家그룹은 去來單位가 政府機關分類
統計單位(COFOG)인 것을 再確認하고 統計單位도 또한 去來처 그룹으로 필
수 있다고 하는 見解를 받아들였다.

D. 生産計定과 産業聯屬表에 관한 專門家그룹會議

34. 專門家그룹은 統計單位와 稅金과 賦稅物과 其他에 關하여 그것들을 單純의 項과 項시에 명확하게 하고 또한 그것들에 손질을 더해 SNA 와 유럽統合經濟計定體系(ESA)의 共通用語를 일치 爲하여 여러가지의 概念을 再定義한 勸告를 發하였다. 이러한 定義는 改訂國際標準產業分類(IS-IC)에서도 使用되고 있는 定義와 밀접하게 調整되어야만 할 것이다.

35. 專門家그룹과 制度部門(Institutional units), 事業體(Establishments), 財貨서비스 單位에 關한 3種類의 區分을 改訂SNA에서도 남겨주어야 한다고 勸告하였다. 事業體單位는 生産計定과 상응한 活動分類에 의한 資本形式을 위한 統計單位로서 存續시켜야만 한다. 事業體는 原則적으로는 物理적으로 존재하는 한 業體에 있어서 한 種類의 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企業이나 어느 企業의 一部라고도 規定되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事業體는 1個所 以上에서 하나 以上の 活動에 종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36. 補助的인(ancillary) 活動과 統合된(integrated) 活動도 區別되었다. 補助的인 活動은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企業에서 使用하기 위한 서비스의 生産에 尙당되며 通常 同種類의 企業으로 간주된다. 만일 補助的인 活動의 賣上이 企業產出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單位는 별도로 事業體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統合된 活動은 重層的統合企業의 경우와 같이 다른 種類의 財貨와 혹은 서비스의 生産에 尙당된다. 만일 그러한 活動이 다른 場所에서 행하여진다면 그러한 것은 당시 몇개의 事業體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37. 法人企業部門을 細分類할 目的에 由來로 企業單位(enterprises units)의 명확한 定義가 勸告되었다. 그것은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를 포함하

어 완전한 經理를 행하고 있는 單位로서 定義되었다.

38. 또한 다음의 새로운 用語로 補充되었다. 「産業(industries)」대신 「市場生産者(market producers)」, 「其他生産者(other producers)」와 「政府서비스生産者(producers of government services)」 대신 「非市場生産者(non-market producers)」, 「商品(commodities)」 대신에 「財貨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 「生産物(products)」을 「財貨와 서비스」와 同義語로 하고 「商品稅(commodity taxes)」 대신에 「生産物에 부과되는 세금(taxes on products)」, 「其他 間接稅(other indirect taxes)」대신에 「生産에 관한 其他세금(other taxes linked to production)」, 「間接稅(direct taxes)」 대신에 「所得, 資本, 기타에 대한 稅金」으로 정의하였다.

39. 投入·產出성질은 SNA에 不可分한 것일 것이다. 행렬作成方法的 상 제한 내용은 연도부에 記載되어야만 한다.

40. 專門家그들은 銀行의 歸屬서비스料(imputed bank service charges)에 대하여 現在 SNA 評價方法的 維持는 支持하였지만, 銀行의 歸屬서비스料는 政府서비스生産者를 포함한 生産者의 中間消費로서 家計의 最終消費와 輸出入에 相當하도록 提案하였다.

41. 公式의으로 複數의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計定은 主要의인 調整項目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調整項目은 실제 複數의 환율을 사용하여 日兩通貨로 變換한 海外去來와 複數환율의 加重平均으로서 計算할 수 있는「第一」환율을 사용하여 換算한 동일 量으로서의 差로서 計算된다.

42. 專門家그들의 大多數는 續山發掘이나 어떤 종류의 研究開發은 資本

형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결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專門
 家그룹은 軍事耐久財에 대한 支出을 消費支出로 취급하는 현재의 취급을 維
 持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하여는 意見이 分분하다. 그러나 參加者의 대부
 분은 조금이라도 非軍事의인 目的을 위해서 使用될 수 있는 病院, 學校,
 道路와 飛行場 같은 不動產은 資本形式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論議하였
 다.

B.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ECLAC 地域세미나

43. ECLAC 에 의해 組織되고 CEMEA 에 의해 후원된 地域세미나는 廣義
 國간 -SNA 의 項目을 다루었다.

44. 參加者는 改訂 SNA 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國民經濟計定의 分析的인
 利用을 反映할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들은 또한 改訂 SNA 가 各國의 經
 濟시스템 機構의 特性과 統計시스템 制度上의 機構를 反映할 特徵을 가질 必
 要가 있는 것과 동시에 國民經濟計定の 教育에 基本的인 교재로서 사용되
 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45. 會合은 生産計定과 產業聯關表에 관한 專門家그룹會合을 위하여 協
 議事項에서 確認된 問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몇가지의 提案
 을 하였다. SNA 의 制度部門別分類는 시스템全體에 適用할 수 있는 주요
 한 分類로 하여야만 하고 同時에 活動別分類는 生産計定未來에서만 適用할
 수 있는 2次의인 分類로서 취급되어야만 한다. 企業單位와 같이 事業體
 單位의 명확한 定義도 必要하다. 會合에서는 現在 SNA 에서 가상의 銀行部
 門을 維持하기 보다도 銀行의 關聯서비스를 歸着하는 部門으로 分配되어야
 한다고 하는 意見이 지대적이었다. 轉錄된 間接稅의 補助金의 範圍는 注
 意있게 檢討되었다. 現在 유럽統合經濟計定體系(ESA)에서 適用되고 있듯

이 附加價値稅(VAT)의 純評價보다도 總評價가 선호되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계국에서는 其他 間接稅나 補助金은 VAT와 平行해서 存在하기 때문이다. 使用者別 資本形成과 資本스톡으로 분리되어 있는 表를 改訂SNA 내에서는 結合시킬 必要性이 表明되었다. 또한 資本形成의 範圍과 內容에 대하여 몇가지 修正도 提案되었다. 예를 들면, 軍로-軍事와 一般(非軍事)雙方의 目的에 사용되는 病院, 道路와 같은 公的建設支出은 一般利用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 總固定資本形成으로 取扱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46. 또 會社는 家計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討論을 예정하고 몇가지 提議를 하였다. 對家計民間非營利團體는 모든 營業剩餘가 單位안을 거머쥌는 것은 아니고 移轉을 通하여 家計에 再分配된 非營業剩餘를 갖는 單位도 포함해야만할 것이다. 家計와 政府의 部門別計定에 있어서 消費稅率의 通用範圍 變更에 대한 支持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個人 消費과 集合消費의 區別은 附屬表에 있어서 價別의으로 分析하는데 重要하다고 생각했다.

47. 또 會社에서는 1988年 1월에 韓國전 公的 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會社를 위하여 準備되었으며 주의 붙임에 대한 協議事項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대부분의 參加者는 各 國間의 比較可能性에 대하여 同意가 될 수 없더라도 公的部門은 改訂 SNA속에서 명확하게 定義되어야 한다는 것에 同意하였다. 또 公的部門에 있어서 무엇이 黑字인가, 赤字인가의 定義에 대해서도 改訂 SNA속에서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8. 會社에서 價格과 數量의 測定에 관한 問題는 1988年 11월에 무역노스 이아레스에서 開催된 豫定으로 되어 있는 다음 會社의 國民經濟計

안에 관한 ECLAC/CEMLA 세미나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그 세미나에서는 金融計劃과 貨幣對換表에 관한 論題도檢討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會社에서는 國民經濟計定の 概念과 分類에 整合的인 地域計定에 관한 國際的인 가이드라인을 開發할 必要性이 強調되었다. 그래서 分類別推計에 관한 핸드북을 準備할 必要性도 指摘되었다.

Ⅱ. 改訂 SNA 와 그에 附屬한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핸드북시리즈

49. 改訂作業의 最終結果는 作業이 끝나면 國際聯合事務局統計局에 의해 準備되어 出版될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핸드북시리즈와 함께 改訂 SNA 로써 발표될 것이다.

A. 改訂 SNA

5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改訂 SNA 第1次案의 準備에 관한 作業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가상의 초안은 준비되어 있다. 그 초안은 原稿를 보다 發展시키는 範圍에서 改訂된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章 序 論

第2章 草案, 즉 新體系의 概要

第3章 去來의 歸屬

第4章 經濟單位와 統計單位

第5章 體系部門과 副部門

第6章 生産計定

第7章 供給과 處分행위와 產業聯繫表

第8章 最終需要의 構成項目

第9章 所得支出計定

第10章 資本調達計定

第11章 貸借對照表와 調整計定

第12章 價格과 數量의 測定

第13章 標準計定과 標準表

主要用語集

51. 序論은 1949年, 1952年, 1954年, 1958年の 여러 가지 改訂에서 새
롭게 改訂된 것을 포함하여 SNA의 역사적인 發展, 國民經濟計定の 目的,
相異한 經濟發展段階에서의 國民經濟計定體系의 利用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
다. 그것은 그 體系의 여러 가지 部分에 適合한 規定을 支配하는 諸原則
을 淸楚 명확하게 할 것이다. 第2章의 統制는 體系를 概觀하는 形의
提示와 代替的인 T字計定の 形式에 對한 提示를 포함할 것이다. 淸쪽 모
두 選擇된 각 나라의 實例가 되는 表를 포함할 것이다. T字計定과
형질提示는 體系의 所得支出 및 資本計定과 生産計定の 統合을 強調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淸일 計定の 淸조 淸에서 代替的인 所得集計淸(國內總
生産(GDP), 國民總生産(GNP), 國民所得, 國民可處分所得)을 淸목히 하게
될 것이다. 淸來와 歸屬에 淸하여 다른 第3章은 改訂體系에 있어서 淸融
 淸來와 非金融 淸來의 適用範圍를 淸定하는 淸則을 淸송 淸일하게 한다. 第
4章과 第5章은 淸用되고 있는 淸計單位와 淸類의 淸度에 淸하여 淸른다.
第6章에서 第11章까지 淸종의 計定(生産, 所得支出, 資本計定, 貸借對照表
와 調整計定)과 淸他 淸析表(供給과 淸分の 淸形, 産業聯淸表)의 淸次를
 淸定하는 淸來와 淸來主體에 淸한 淸세한 淸容을 淸定하고 있다. 나머지
第12章과 第13章에서는 財貨와 淸비스의 淸품에 淸한 淸量評淸와
 淸年마다의 淸價變動을 淸제한 淸實所得의 淸量評淸를 하기 위한 디
플레이션의 淸題에 淸하여 淸론하고 있다. 그러한 淸에서는 淸在의 淸際比
較프로젝트(ICP)의 淸法論에 淸초를 淸어 淸 淸國의 淸國民淸계제淸 淸어

를 어떻게 比較할 것인가라고 하는 說明도 포함된다. 改訂 SNA를 더욱 簡便시켜 精度를 높인 핸드북과 함께 主要한 出版物로 발간하기 위하여 改訂 SNA는 이를 特別한 狀況, 예를 들면, 中央計劃經濟와 數學自然災害의 影響을 받은 畵에 適合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몇 개의 章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畵은 改訂 SNA와 關聯시스템(國際收支表(BOP), 財政統計(CFS), 實物生產體系(MPS), 유럽統合經濟計定體系(ESA)와 그 附屬計定(예를 들면, 환경분석을 위한 統計의 整理와, 社會保障移轉의 影響분석을 포함)을 收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畵의 상세한 內容은 아직 決定되지 않았다.

52. 몇 개의 畵에 대한 第1次案은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事務國際의 실무作業단이 1988年 9월에 金融總무부와 MPS에 관한 專門家會合에 잇달아 핵심적인 專門家와 學者를 함께 召集하여 計劃하고 있다. 2日間에 걸친 改訂會合에서 論議될 것이다. 더불어 몇 개의 畵에 대한 假說은 改訂 SNA의 출판물의 方針과 方法을 제시하기 위하여 統計委員會 第25回 會合에서 利用可能하도록 작성될 것이다.

B.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핸드북

53. 핸드북시리즈는 特定分析目的을 위한 概念, 計定, 畵에 관한 副部門의 概念的 構造와 이러한 特定統計를 얻기 위한 자료원 및 手法에 대한 論議를 담고 있다. 보다 特定化된 方向으로의 改訂 SNA에 대한 整理와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것이다. 또 그것은 구조의 特定畵에서 整理와와 따로 存在하는 關聯統計의 사이에 概念的 및 편집상의 연결을 포함한다.

54. 2권의 핸드북이 이미 출판되었다. 1986년에 첫 번째 책인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핸드북, 生産計定資料와 方法」⁵¹⁾이 發行되었다. 그리고 19

註 6)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8.X/월. 11.

88년에는 「國民經濟計定에 관한 핸드북·公的部門計定」¹⁾이라는 이름의 2
번째 책이 發行되었다. 이러한 2가지 책은 假版으로서 出版된 것이고 改
訂SRA가 統計委員會에서 승인된 後 改訂된 것이다. 또한 4권의 책이 準
備中에 있다. 다음은 出版된 책의 要約과 準備中에 있는 책의 概要이다.

(가) 生産計定: 資料와 方法

이 핸드북은 GDP를 編集하기 위한 여러 가지 資料와 方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4개의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第一部는 一般의인 序論이
며 基本的인 定義와 分類, 國民經濟計定에 대한 方法論의 概觀과 國民經濟
計定の 基準 또는 定期的인 推計에 사용되는 資料의 主要한 형태에 대한
評價를 담고 있다. 第二部는 推計方法 - 基礎資料를 어떻게 利用하는가 國
民經濟計定の 集計值을 推計하기 위하여 그러한 資料에서 얻어진 情報을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 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 中에 3가지 상이
한 方法 - 生産接近法, 費用接近法 및 支出接近法과 結合한 코모디티증오수
法(제피유증오수법) - 간의 차이가 기술되어 있다. 別添 I부터 III까지는
敎本中에서 關係된 상세한 分類를 提示하고 있다. 出版目錄은 國際的인 概
觀의 統計當局에 의해 準備된 國民經濟計定을 編集하기 위한 方法論과 基
準에 관한 出版物의 제목을 簡載하고 있다.

(나) 公共部門計定

이 핸드북은 어느 국가라도 編集하는 것이 有用한 公共部門 - 政府와
企業 둘다를 포함 - 에 관한 計定과 表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다. 이 책
의 主要한 目的은 各 國의 公的部門分析과 보다 광범위한 經濟全體의 代
략에서 政策作成을 위하여 各國內에서의 必要性을 만족하는 -一體의 公的部
門統計의 設計의 改善를 提助하는 것이다. 「分析의 體系」라는 이름의 第

註 1)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8.XVII. 5.

一部는 公的部門分析을 위해 提案된 分析體系의 構造를 提示하고 있다. 그 중 3개의 章은 公的部門의 範圍와 定義 및 그 속에 포함하는 實體에 대한 分類에 대하여 概說하고 있다. 또 그것은 分析體系에 必要한 情報을 提供하고 別添1에서 提案된 表와 計定の 構成에 대하여 說明하고 그것의 編集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考慮하고 있다. 「資料와 方法」이라고 하는 제목의 제2부 4개의 章은 基礎資料에 대한 概觀을 하고 보다 상세한 취급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는 時價데이터의 編集法에 대하여 다루어 生産物 價格 작업지(Mark sheet)를 提示하며 不變價格表示의 生産物과 그 處分問題에 대하여 論議하고 있다. 別添에서는 公的部門에 관한 表를 提示(別添1), 특히 公的部門統計에 대하여 重要한 政府機能分析(COP-OG)을 表示하고(別添2), 適切한 SNA에 있어서 거의 概念에 대한 상세한 定義(別添3)와 財政統計(CFS)의 範圍(別添4)를 나타내며 SNA와 CFS概念에 대한 상세한 調整을 提示하고 있다.(別添5)

(C) 産業聯繫表

이 편지록은 1973년에 국제연합에 의해 出版된 「産業聯繫表와 그 分析」⁸⁾을 更新하고 改善시킨 것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産業聯繫表의 理論的인 背景, 産業聯繫表의 國民經濟計定體系의 統合, 産業聯繫表의 編集과 分析時의 實際的 또는 概念的인 問題가 취급된 것이다. 實際的인 概念的인 問題가 다루어진 가운데 統計資料가 검토되고 基準과 每年更新方法이 記述되며, 基礎데이터의 調整에 관하여 예를 들면, 어떻게 個別로 作成된 Make Matrix (V表), Use Matrix (U表)를 投入產出表로 재구성할 것인가, 因素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輸入의 相當을 어떻게 할 것인가, 直接稅의 表示는 어떻게 할 것인가, 運費·商業마진은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國內生産物과

註8)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140. E. 73. X號. 11.

輸入品의 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흐름에 어떠한 價格評價를 사용할 것인가, 銀行業務, 保險이나 其他 金融仲介業의 產出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과 같은 상세한 記述이 提示되었다. 연드록은 產業聯關表의 地域的, 國際的 分析을 위한 編纂과 利用, 輸入, 資本, 雇傭의 수요 分析이나 生産技術, 生産性과 附加價値의 變化 效果分析과 같은 產業聯關表의 分析의 適用에 대하여 취급될 것이다. 概要는 이미 準備되어 있고 3개의 章도 이미 完成되어 있다. 및 개의 章에 있어서는 開發途上國의 技術協力프로젝트 원조에 關聯하여 더욱 補綴될 것이다.

Ⅳ 家計部門

이 연드록의 상세한 概要는 1987년에 世界銀行資金의 助成으로 準備되어 1987年 9월에 家計部門計定에 관한 專門家그룹會合에서 論議되었다. 概要는 8개의 章과 用語集 및 分析指標로 이루어졌다. 第一章과 第二章은 연드록의 目的과 그 理論的, 實際的인 性質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第一章은 이미 起草되었다) 第三章에서 第四章에 걸쳐서는 計定 및 表의 表章이나 家計部門의 其他 測定과 家計表 및 調査의 使用과 같은 編纂을 위한 評價나 資料와 方法에 關聯한 提案에 대하여 記載하고 있다. 다만, 家計部門計定の 다른 使用例가 提示되고 있다. 家計調査를 國民經濟計定の 編纂에 추가할 分野에서 새로운 經驗이 必要하다. 남은 몇 章에서는 국제 연합사무국과 技術協力프로젝트의 對應스텝의 參加를 통하여 國民經濟計定作成에 家計調査를 使用함에 따라 얻어진 經驗을 基礎로 하여 더욱 정밀화 될 것이다.

Ⅴ 企業計定

이 연드록은 生産, 收入과 支出, 非金融企業의 資本蓄積·調査計定을 다

옥 정밀하게 할 것이다. 企業統計의 統合體系開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巨觀經濟數에서의 損益計算書의 貸借對照表의 統一이다. 企業部門計定の 利用은 財貨의 서비스의 生産과 分配, 所得과 富의 形成, 金融資産의 流通과 使用을 內含하는 開發問題에 適切한 豫상을 하였다. 生産, 所得의 發生, 純貯蓄과 借入의 統合的인 集計圖를 일기 위하여 데이터수집시스템은 經常 및 資本去來의 基礎統計를 수집하는 外에 企業單位의 增加率을 사용 하고 있다. 핸드북은 (a) 企業部門經濟計定の 一般概念에 대한 體系를 記述 하고, (b) 企業計定の 概念的 體系와 企業會計에 있어서 去來의 記錄과 統合에 對하여 說明하고, (c) 企業 및 現在集計인 企業計定에서 基礎統計의 編集에 있어서 各 國에 共通的인 經驗을 檢證한다. 全體體系는 이미 準備되어 있다. 그러나 1989년까지 作成豫定인 핸드북을 완성하기 위하여 開發途上國에 存在하는 狀況에 關하여 尙需 情報을 얻어야 하는 것. 技術協力 프로젝트에서 얻은 보다 깊은 經驗이 必要하다.

(d) 海外部門

이 핸드북의 案은 이미 咨文에 의해 準備되어 있다. 그러나 1987年 3월에 개최된 海外去來에 關한 專門家그룹會合의 結論과 提案에 의해 修正이 必要하다. IMF와 國際聯合統計局間에 IMF의 國際收支表 作成方法의 改訂과 結合을 考慮하여 咨文에 對하여 說明한 핸드북은 IMF에서 準備하도록 合意하였다. 國際聯合統計局은 各 國의 調査에 의해 얻어지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BOP/SNA 調整中介表의 作成分野에 공헌할 것이다.

55. 實質價格 SNA와 MPS 國民經濟計定基準의 關係, 金融證券우와 貸借貸 兩表, 그리고 環境計定에 關한 國民經濟計定の 핸드북案의 作成에 對해서는 아직 명확한 調整이 되어 있지 않다. ECLAC는 原則的으로 라틴아메리카

의 장래를 예견하면서 國民經濟計定 핸드북에서 實質價格에 대한 案을 準備하는 自由권이 되는 것을 約束하였다. 國際聯合統計局은 ECLAC가 알아야 할 忠告를 作成하고 ECLAC에 의해 作成된 最終案은 國際聯合統計局에 의해 수정되어 世界的으로 適用可能하도록 擴張될 것이다.

56. SNA와 MPS 國民經濟計定에 대한 關係에 관한 핸드북은 現在 國際聯合에 寄附된 「SNA 및 實物生產體系(MPS)의 比較, 파트 I: 概念的 關係」²⁾의 改訂版으로서 準備된다. 이 책은 上記 5~10項에 記載한 SNA와 MPS 國民經濟計定基準의 調整에 관한 專門家그룹會合에 關한 2가지의 目的을 達한다고 하는 結論을 反映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는 SNA를 自國의 特別한 狀況에 適用하려고 하는 中央計劃經濟 諸國의 會計이 된다. 이 目的을 爲하여 핸드북은 中央計劃經濟 諸國에 있어서 特定制度上의 調整見地에서 SNA의 未來와 未來主體의 範圍에 關한 상세한 記述를 包含할 것이다. 한편 SNA 속에 광범위하게 MPS 概念과 分類의 明確化를 達한다. 이 SNA의 特點은 中央計劃經濟 諸國뿐만 아니라, 상이한 형태의 分析을 爲하여 SNA와 MPS를 結合하여 使用하는 것에 關心을 갖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重要하다. 이 핸드북의 準備에 대한 CMEA의 協力과 貢獻可能性이 檢討되고 있다.

57. 위에서 言及한 9가지 주제에 더 붙여 6가지 주제가 SNA改訂에 關한 開發途上國 地域開發이나에서 시사되었는데 그것은 分類別計定, 地域計定, 開發途上國과 社會會計 매트릭스(SAMS), 資本스톡, ICP 및 소규모경제이다. 또한 前項의 統計委員會에서는 다음 2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提案되었다. 非公式部

註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77.XVII.6.

門活動의 測定·評價 및 經濟活動에 對한 女性의 貢獻이다. 이러한 것의 追加로 價目表를 만들기 위한 豫算外資金이 要求된다. 이러한 價目表를 미리 定立하게 하는 加納額 諮問官이 및 나라의 統計局에 의해 提供되는 것이 檢討되고 있다.

IV. 데이터의 開發

58. 改訂 SNA의 概念의 構想에 대한 注意에 더불어 國際聯合統計局은 各 國의 SNA의 實施에 對해서도 충분히 注意을 기울이고 있다. 1958年 SNA의 利用에 있어서 많은 開發地上國이 直面한 諸 困難, 즉 그 概念과 分類의 理解뿐만 아니라 그 概念과 分類의 適用을 通하여 體系의 구축 및 SNA를 各國에서 特定分析, 計劃이나 政策에 適合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直面한 諸 困難을 충분히 認識하고 있다.

59. 이러한 狀況에 있어서 國際聯合統計局은 國際的인 報告와 단순히 2 次的 圖表物인 시스템의 說明에 그치지 않고, 國民目的을 위한 데이터의 表章과 集計에 使用하여 기여할 수 있는 計定體系를 開發한다는 것이 SNA 改訂에 있어서의 貢獻으로 크게 評價하여 왔다. 우선 그 體系는 現在의 SNA에 포함되어 있는 變項의 代替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T字 計定形態로 設計되었다. 다음에 그 體系는 各國의 SNA에 추가하기 위한 例示 的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集計體系로서 擴張되었다. 그 體系를 使用하려고 하면, 各國에서의 特別한 統計, 政策形式, 計劃狀況에 간단히 適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集計體系는 包括的이고 많은 開發地上國에서 傳統的으로 焦點이 되고 있는 GDP와 단일된 生産 計定, 貯蓄과 서비스의 分類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그치지 않고,

生産데이터와 所得·支出 및 金融資産의 연제도 취급하고 있다. 後者の 擴張은 마침내 生産데이터가 必要한 唯一情報源은 아닌 많은 國家에서 권 重하게 되는 것이 判明되었다. 그것은 財政赤字, 對外赤字와 外國債務의 財政金融上の 問題를 안고 있는 政策作業者는 國民經濟計定 担当者에 生産 情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疑問에 回答하는 것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 이다.

80. 이제까지 集計體系는 2개의 分野에서 利用되고 있다. 하나는 國民 經濟計定分野에 있어서 선택된 몇몇 開發途上國에 供與된 技術協力에 있어 서이다. 그러한 國家에서는 상세하게 얻을 수 있는 特別한 데이터와 지 급까지 작성해 온 集計方法에 集計體系를 適合시켰다. 또 計劃과 政策樹立의 目的을 위하여 測定이 必要한 特別한 分類과 概念도 考慮되고 있다. 國民經濟計定の 實態集計에 있어서 集計體系의 利用은 데이터의 大量處理構 造形態를 考慮하였다. 典型 統合된 單位로의 그 구조는 國際聯合統計局이 國民 經濟計定과 國際統計資料源에서 얻을 수 있는 關聯데이터를 基礎하여 各 國 을 위하여 統合된 國民經濟計定데이터 파일을 作成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後者の 作業은 그 集計體系의 可能性을 테스트하는 試驗調査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 國際聯合統計局에 대하여 各國이 그들의 國民 經濟計定을 擴張하고 包括的 構造에 중대 데이터를 추가할 方法을 指導 하는 手段을 提供할 것이다. 더욱이 當쪽의 作業은 國民經濟計定을 分析· 計劃·政策策定에 있어서 더욱 有用한 것이 될 것이다.

81. 上記調査에 貢獻하고,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國民經 濟計定集計에 있어서 統計의 限界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國際聯 合統計局은 各 國에 國民經濟計定을 위한 利用可能한 基礎資料에 대하여 研

究을 계속하고 있다. 그 研究는 1986년에 시작하여 結果는 統計委員會 第 24 회 會合에서 文書(E/CN.3/1986/6)로 提示되었다. 그 때의 統計委員會의 要請에 반응하여 國際聯合統計局은 開發途上地域에 있는 국제연합의 地域委員會에 대하여 會員國의 國民經濟計定集計에 使用되고 있는 統計資料에 관한 追加情報을 入手하도록 要請하였다. 이 調査의 回答은 地域委員會에 따라 相異하다. 아프리카經濟委員會(ECA)는 그 個別各國의 國民經濟計定의 例를 說明하는 論評이 資料의 質을 評價하는 것에 보다 效果적인 것으로 指摘하였다. ESCAP는 이 問題는 세미나에 있어서 보다 잘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시아經濟社會委員會(ESCOM)는 이 調査는 計定과 表에 의한 SNA實施의 評價를 넘어 個別去來용모수의 信賴性評價에까지 擴張할 것이라고 提案하였다. ECLAC는 國民經濟計定을 위한 地域基礎資料의 事前調査를 更新하였다. 그 特別미디어調査는 國民經濟計定作成에 있어서 데이터의 制約을 충분히 理解하는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國際聯合統計局에 의해 계속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國際聯合統計局은 이 情報을 「國民經濟計定: 統計 및 主要한 集計 및 表」의 各章에서 資料와 方法에 대한 說明의 要約을 변경하는 경우 利用하게 될 것이다. 이는 上記 ECA에 의해 이루어진 提案에 따른 것이다. 또 國際聯合統計局은 SNA 改訂時 한 민의 全體會合에서는 國民經濟計定の 데이터 圖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SNA 改訂이 끝난 무렵 혹은 1991년의 統計委員會에 있어서 이루어지거나, 改訂 SNA案의 最終承認 直後에 이루어질 것이다.